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020.7

고용노동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0458-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020. 7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0458-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020. 7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목 차

Ⅰ.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 1

1.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3
가. 개 요 ····· 3
나. 민간훈련 ····· 4
다. 공공훈련 ····· 18
라. 기업지원 ····· 21

2. 국가기술자격제도 ····· 24
가. 개 요 ····· 24
나. 운영체계 ····· 26
다. 자격취득 관리체계 ····· 28
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34

3. 숙련기술장려시책 ····· 35
가. 기능경기대회 ····· 35
나. 대한민국명장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 36
다. 숙련기술전수자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 37

4.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법령 ····· 38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 39

1.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 41

가. 총 괄 ····· 41

나. 재직자훈련 ····· 42

다. 실업자훈련 ····· 47

라. 공공훈련 ····· 52

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 58

가.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13～'19) ····· 58

나. 재직자훈련 ····· 59

다. 실업자훈련 ····· 64

라. 공공훈련 ····· 68

마.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71

바. 국제협력사업 ····· 73

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 75

4. 자격제도 ····· 76

가. 우리나라 자격 현황 ····· 76

나. 주무부처별 자격종목 현황 ····· 77

다. 직무분야별 자격종목 현황 ····· 78

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 ····· 79

마. 민간자격 공인 현황 ····· 80

5. 국가직무능력표준 ····· 84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현황 ····· 84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현황 ····· 106

6. 숙련기술장려 사업현황 ····· 126
가. 연도별 전국기능경기대회 현황 ····· 126
나. 연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 현황 ····· 126
다. 연도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현황 ····· 127
라. 대한민국명장 ·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선정 ····· 128
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128

Ⅲ. 관련자료 ····· 129

1. 직업능력개발 연혁 ····· 131

2. 직업능력개발 조직 ····· 138
가. 고용노동부 ····· 138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 139
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40
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41

3.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 주요변천 현황 ····· 142

4.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178

5.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 186

6. 직업능력개발관련 조사 현황 ····· 187

I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1.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3

2. 국가기술자격제도 ····· 24

3. 숙련기술장려시책 ····· 35

4.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법령 ····· 38

1.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가. 개요

○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의 개념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직업능력개발사업

민간훈련

<사업주>
- 사업주직업훈련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 일학습병행

<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기업맞춤형 포함)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기타>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공공훈련
-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 전문기술(기능사) 양성훈련
- 하이테크. 신중년 특화 과정 등

기업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

나. 민간훈련

1) 사업주직업훈련지원

○ 지원대상

-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훈련방법

-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우편),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훈련 실시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집체훈련: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와 독립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비 지원
  - (자체훈련)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1,000인 이상 기업 40%)
  - (위탁훈련)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1,000인 이상 기업 40%)

  * 사업주가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

-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 지원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1일 3,300원 한도), 숙식비(1일 14,000원 한도) 지원

※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 한도로 지원

○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실시 전 현장훈련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집체 또는 원격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 훈련과정 분량이 8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

※ 스마트훈련은 9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5~100%, 1,000인 이상 기업은 60%)

- 우편원격훈련: 훈련기간이 2개월(32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100%, 1,000인 이상 기업은 40%)

〈원격훈련 지원금〉

(단위 : 원)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교수설계유형1)	기술기반유형2)	
A	6,160	12,100	18,150	3,960
B	4,180	8,140	12,210	3,080
C	2,970	5,940	8,910	2,170

○ 혼합훈련에 대한 지원

- 혼합훈련: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원격훈련과 현장훈련,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혼합된 개별 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산정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지원

※ 원격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격훈련분량은 전체 훈련시간(분량)의 100분의 20이상이고, 우편원격훈련을 포함할 경우 최소 2개월(3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비용지원절차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신청

※ 위탁훈련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과정 심사 일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

-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

1-1) 유급휴가훈련지원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 외에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의 일부도 지원
- 그 외 기업
  ·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수준

훈련비용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임금	훈련참여자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소정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50%
		그 외 기업	소정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대체인력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 지원절차

- 재직근로자훈련 비용지원 절차와 동일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개요

- 훈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훈련장을 제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설비 · 장비비 ·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과정

-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양성훈련

○ 지원내용

- 훈련시설 · 장비비 : 연간 15억 한도(소요비용의 80%)
- 운영비 :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프로그램 개발비 :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 100%)

○ 지원체계

사 업 공 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공동훈련센터 선정)	➡	보조금 교 부	➡	사업수행	➡	회계감사 및 정산
인력 공단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회계법인)

3)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 개요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 지역단위에 지역상의·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동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 Regional Skills Council)를 구성, 공동수급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인력양성체계 구축

※ '20년 현재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중

○ 지원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 **인건비, 수요조사비, 운영비 등 연간 6억원 한도**

□ **지역 공동훈련센터**
- ▶ **훈련시설·장비 구축비용: 연간 15억원 한도 (공동훈련센터 20% 대응투자)**
- ▶ **훈련비: 사업주훈련 환급방식(사업주훈련단가) 또는 실비지원 방식**
- ▶ **운영비(인건비 포함): 연간 최대 3억원 한도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 ▶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한도**

○ 지원체계

지역 인력·훈련 수급조사 및 분석	➡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승인	➡
지역인자위		지역인자위		인력공단(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	훈련실시	➡	채용지원	➡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4) 일학습병행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단독기업형 : 50인)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원칙)

*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 특화업종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유형

	대상 및 유형	명 칭	주요 내용
재직자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명장기업, 우수기술기업 등 개별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실시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대기업·대학·산업별단체 등이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실시·지원
재학생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Uni-Tech	고교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통합하여 기간단축 및 조기입직 유도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전문대 단계 일학습병행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大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 장기현장실습 +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	P-TECH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융합·신기술 중심의 고숙련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

○ 지원과정

- 채용자에 대한 양성훈련(1년~2년) ※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훈련인프라 구축 지원 및 훈련비, 전담인력 수당 지원

〈기업 지원 내용〉

인프라 구축 지원	▲ 훈련과정 개발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훈련 지원금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비용 ▲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비용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월 20만원 한도) * 외부평가 연계성과금(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 × 20만원') 지급	※ OJT 및 Off-JT 비용은 1,000인 이상 기업은 차등 지원 ※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은 1,000인 이상 기업 지원 제외
기업 전담인력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월33.3~133.3만원) ▲ HRD 담당자 수당(월25만원)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교육	※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체계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학습병행 홍보 및 참여기업 지도·감독 ◦ 일학습병행 현장협업체계 운영	◦ 학습기업 지정, 훈련과정 인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심사, 지원금 지원 및 정산

5) 국민내일배움카드

○ 개요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 실업자 • 재직자(중소기업 · 비정규직 중심)	→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 5년(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 200~300만원	→	• 300~500만원

○ 훈련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HRD-Net에 정보공개)

  * '20년 통합심사 주요일정(총 2회): <신청> 5월/10월, <선정·공고> 7월/12월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月 최대 11.6만원)

  * 취성패 Ⅱ유형은 훈련비의 50~85%, Ⅰ유형은 전액 또는 80%까지 지원

○ 지원절차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		고용센터

○ 기 타

- HRD-Net 인터넷주소 : http://www.hrd.go.kr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5-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개요

-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 훈련과정

- 인력수급 상황, 산업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고시된 직종에 대한 훈련(3개월 이상 & 350시간 이상)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위탁·실시(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 HRD-Net 공개)

  * 직종 수: ('09) 78개 → ('10) 103개 → ('11) 102개 → ('12) 109개 → ('13) 109개 → ('14) 109개 → ('15) 114개 → ('17) 112개 → ('18) 122개 → ('19) 122개→ ('20) 122개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月11.6만원 限)

○ 지원절차

신청 및 상담		계좌발급		훈련수강		비용지원
·구직신청 및 카드발급신청 ·훈련상담	➡	·훈련필요성, 시급성 등 검토 ·카드발급결정	➡	·훈련과정 등록 ·훈련과정 수강	➡	·단위기간(1월)별 훈련비 등 신청 ·출석확인 후 훈련비 등 지급
센터↔훈련희망자		센터→훈련희망자		훈련생↔훈련기관		센터→훈련기관·훈련생

5-2)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개요

- 역량 있는 훈련기관이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설계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인력 양성·공급

  * 관련규정: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 규정

○ 훈련과정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및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총 훈련시간의 2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을 편성한 훈련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위탁·실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 HRD-Net 공개)

  * 2020년 사업 선정기관 25개, 32과정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月11.6만원 限)

5-3)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개요

-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

○ 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 일반계고에 재학 중인 고3학생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5-4)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개요

-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 증가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고학력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 훈련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계좌 발급가능자 중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고 취업의지가 높은 구직자 중 훈련기관이 자율 선발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 스마트제조, IoT, 빅데이터, 정보보안,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과정 선정

※ '20년 1차 28개 기관 50개 훈련과정(1,438명 선정)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참여 가능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월 최대 11.6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동일

○ 훈련기간 및 수강 가능 횟수

- 훈련기간은 3～10개월(350시간 이상)

○ 훈련수준

- NCS Level 5 이상 고급수준

※ NCS 미 개발과정은 유사(명칭) 훈련과정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고급 훈련과정임을 제시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추기 위해 총 훈련 시간의 30% 이상 프로젝트 실습 편성

○ 신청방법

- 희망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생으로 선발된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발급신청

※ 지원절차 : 훈련생 선발(훈련기관) → 계좌발급 → 훈련수강 → 훈련장려금 지원

○ 기 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www.hrd.go.kr)에서 검색할 수 있음

6)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 개요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 훈련비 지원

- 사업주 단가(기준단가), 실비단가(기준단가의 200%이내), 실비(기준단가의 300% 이내) 훈련비 중 택하여 심사하여 지원

○ 지원체계

사 업 공 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의·운영기관 선정	➡	보조금 교 부	➡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	회계감사 및 정산
인력 공단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인력공단 (회계법인)

7)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 개요

-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졸인력 양성 필요

○ 사업 내용

- 특성화고 8개 학과를 선정, 신산업 분야로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편 및 특성화고-훈련기관 공동육성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모델 마련

※ 교육과정 개편 컨설팅, 훈련프로그램비, 교원연수, 인프라구축 등 지원

○ 특성화고 선정 현황

특성화 분야	선정 특성화고 및 학과
사물인터넷	삼일공업고 사물인터넷과
	서울문화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한봄고 빅데이터학과
스마트 제조	경기기계공업고 스마트설비과 미래산업과학고 컴퓨터특허과
	한봄고 스마트제어과
바이오화공	서울공업고 바이오화공과
3D프린터·드론·코딩	미래산업과학고 메이커창작과

8)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개요

- 취약계층(비정규직, 전직실업자)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대부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직실업자로서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제외)

(1)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가구별 연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인 사람

※ 대부 신청인원이 선발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의 소득수준, 훈련기간 등을 심사하여 일부만을 선정 가능

○ 지원한도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내) 한도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 상환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비정규직 여부(근로계약서) 및 훈련사실(수강증) 확인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전직 실업자>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실업자 여부(Work-net) 및 훈련사실 확인(HRD-Net)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다. 공공훈련

1)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훈련기간	2년 과정(주간 및 야간, 일부 대학은 주간만 운영) ※ 졸업 시 「산업학사」 학위 수여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전형방법	고등학교 내신(학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등
훈련생 특전	· 졸업 시 「산업학사」 학위 수여(전문대졸과 동등 학력)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부여 · 희망자 전원 기숙사 제공(일부 대학 제외) · 재학 중 군입영 연기

2) 전문기술(기능사) 양성훈련

훈련기간	10월~1년 과정(주간), 단기과정(주간)
입학자격	· 만 15세 이상 실업자 · 일반고 3학년 진급예정자로서 수료 후 취업을 원하는 비진학 예정자
전형방법	면접
훈련생 특전	· 기숙사 무료제공(일부 대학은 미운영) 및 훈련비, 식비 등 전액 국가지원 · 국가기술자격(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및 취업알선 · 훈련수당 6.6만원, 교통비 5만원(통학생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훈련수당은 20만원

3) 기능장

훈련기간	야간 1년 또는 2년 과정
입학자격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상(산업기사)~3년이상(기능사) 실무경력자. 단 기술자격이 없는자는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에서 8년(2년과정)~9년(1년과정)이상 실무경력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훈련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가지원 · 기능장 자격증 응시자격 부여(단, 입학전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에 한함)

4) 하이테크

훈련기간	주간 1년 또는 10개월 과정
입학자격	· 취업을 희망하는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전형방법	면접
훈련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교육훈련비, 실습비, 실습복 등) · 기숙사 무료제공(일부 캠퍼스 제외) · 훈련장려금지급(매월 출석률 80%이상자,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5) 신중년

훈련기간	6개월 과정
입학자격	만 50세 이상
전형방법	면접
훈련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전액) · 기숙사 무료제공(희망자에 한함) · 훈련장려금(6만6천원) 및 교통비(5만원) 지급 · 수료 후 취업기회 제공 및 사후지도 실시

6) 학위전공심화

훈련기간	야간 2년 과정
입학자격	· 동일 계열의 기능(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아래 가, 나중 하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 동일 계열의 기능(전문)대학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동일 계열의 기능(전문)대학 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형방법	출신대학 성적, 산업체 경력, 면접 등
훈련생 특전	· 졸업 후 공학사 학위 취득 · 성적우수자 및 모범생에게 교내외 장학금 지급 · 국비지원으로 저렴한 학비(학기당 130만원 내외) · 졸업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7) 베이비부머

훈련기간	3개월~6개월 과정
입학자격	만 40세~65세 이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전형방법	면접
훈련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교육훈련비, 실습비, 식비 등) · 훈련수당 지급(매월 출석률 80%이상자), 교통비 5만원(통학생 한함) · 추가장려금 최대 6만6천원/월 지급 (단,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20만원을 지급)

8) 여성재취업

훈련기간	3개월~6개월 과정
입학자격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전형방법	면접전형
훈련생 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훈련비, 실습비 등) · 훈련수당 지급(매월 출석률 80%이상자), 교통비 5만원(통학생 한함) · 추가장려금 최대 6만6천원/월 지급 (단,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20만원을 지급)

9) 소규모 사업장훈련

훈련기간	8시간 ~ 60시간
입학자격	300인 이하 사업장에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형방법	별도 전형 없음(협약에 따른 훈련 진행)
훈련생 특전	·훈련비, 재료비, 교재비 등 전액 국가 지원 ·대학집체, 현장집체 등 사업장의 요구에 맞춘 기술지원·지도 진행 ·사업장 근로자를 고려한 주/야간 맞춤형 훈련 진행

10) 재직자훈련

훈련기간	8시간~(사업체, 사업주와 협약에 따라 과정별 상이)
입학자격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전형방법	과정별 상이
훈련생 특전	·훈련비, 재료비, 교재비 등 소요비용 일체 국가 지원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일부 비용 부담)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라. 기업지원

1)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학습활동 및 이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②일학습병행,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으로 ③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학습조 4개조 이상 운영 가능한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별

○ 지원내용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학습조 활동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1년차 4개, 2,3년차 최대 6개 (우수 2,3년차 최대 8개)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8개월 (월 2회 이상 개최)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명 - 학습조장 :학습조당 1명 - 운영기간 : 8개월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 학습조 활동비** - 운영기간 동안 조당 200만원 한도* * 단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우수기업은 조당 280만원 한도* * 부가세는 기업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월 10만원 한도 (학습조장) - 월 20만원 한도 (학습리더)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 기업이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금년의 경우 신규, 계속기업에 모두 지원가능	**○ 외부전문가 지원**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업이 외부전문가* 지원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단 외부전문가는 HR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분

유 형	지원내용	지원금
우수사례 확산지원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단, 종료기업은 기업당 50만원 한도) ○ 우수 경진대회 지원금 - 1년차 100만원 한도 - 2,3년차 200만원 한도 * 최소 1회 이상 실시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부가세는 기업 부담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2,0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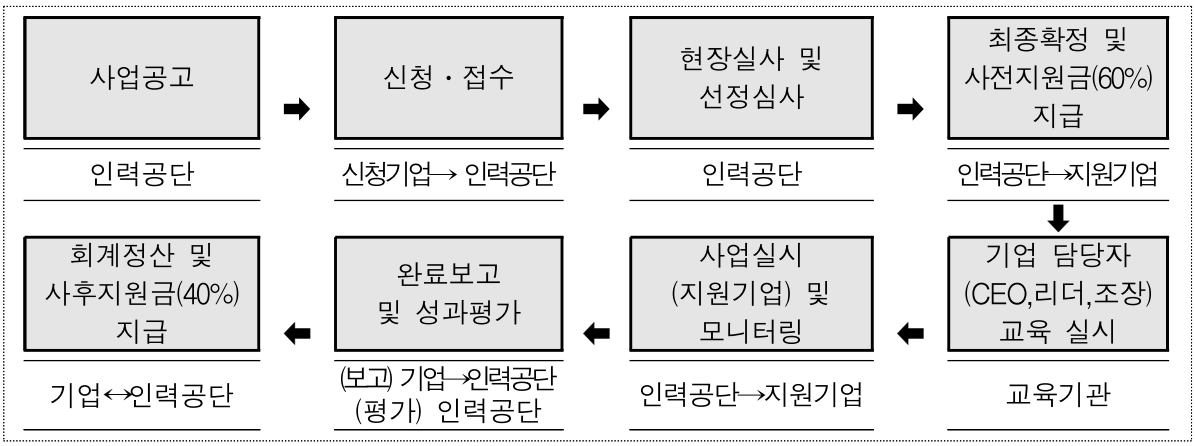

2)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

○ 지원대상

-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요건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심사를 받을 것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 · 승급 · 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되,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다.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 사업내자격검정사업신고서, 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년도 결산서류, 자격검정실시 계획서, 사업내자격검정실시규정

○ 지원내용

자격검정 개발비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2 범위내에서 1,200만원까지 지원(1회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0만원까지 지원 - 기존 검정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료된 기업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반영하여 자격개편 시 검정개발비의 1/2 추가 지급
검정운영비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1/2 범위내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간 지원 ※ 단, 검정운영비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존 참여기업에서 사업 내 자격 관련 내용 보완 시, 보완일로부터 1년 이내 보완한 비용에 한하여 검정 운영비의 1/2을 종목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급 가능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052) 714-8653

2. 국가기술자격제도

가. 개요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념**: 국가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skill)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하는 제도

○ 국가기술자격의 정의 :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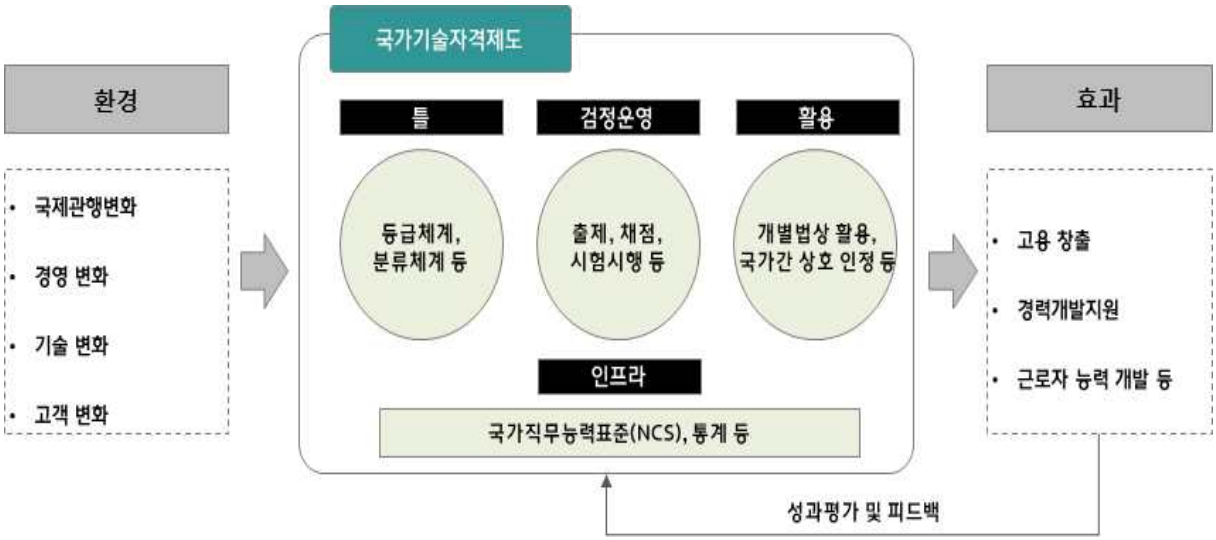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능 및 역할

□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 및 선별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의 수준(level)과 분야(type)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signal)로서 기능

- 신호기능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 발생하는 skill mismatch 문제 해소에 도움

* 구직자는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과대평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과소평가

○ 기업이 근로자의 인사관리(채용, 승진, 전보, 보수 등)시 국가기술자격을 선별장치(screening device)로 활용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경력개발 선도

○ 기업에서의 보상과 연결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토록 유인(guide)하는 기능

○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의 수직적 등급체계를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도

- 특히, 별도의 경력경로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소속 근로자의 경력경로개발에 활용 가능

□ 국가 인적자원의 확충

○ 국가기술자격의 신호·선별·선도 기능이 복합되어 국가적으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소기업 경우 근속년수나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관리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활용 가능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성

○ 자격의 틀(framework) :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어느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정하는 것

- 등급체계(skill level) : 직무수행능력의 수직적 위계

- 분류체계(skill type) : 직무분류

〈 국가기술자격의 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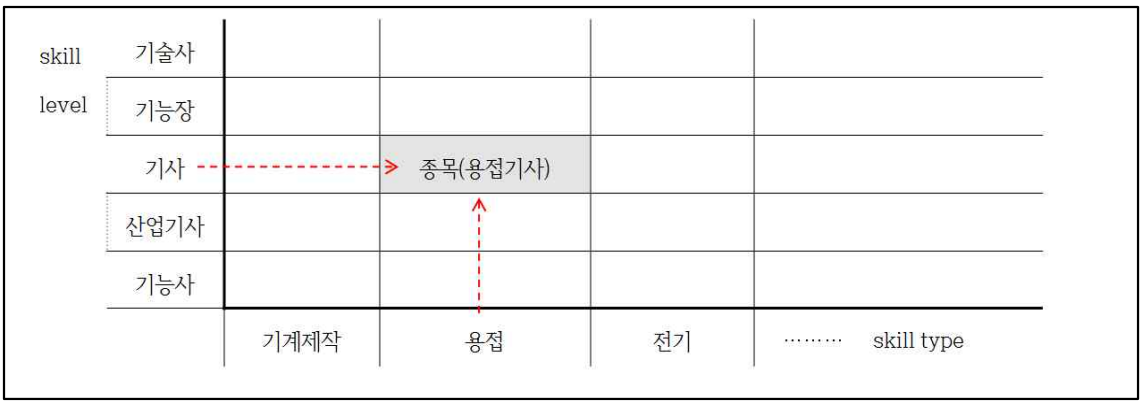

※ 2019.12.31.현재 26개 직무분야, 61개 중직무분야, 542종목 운영

○ 등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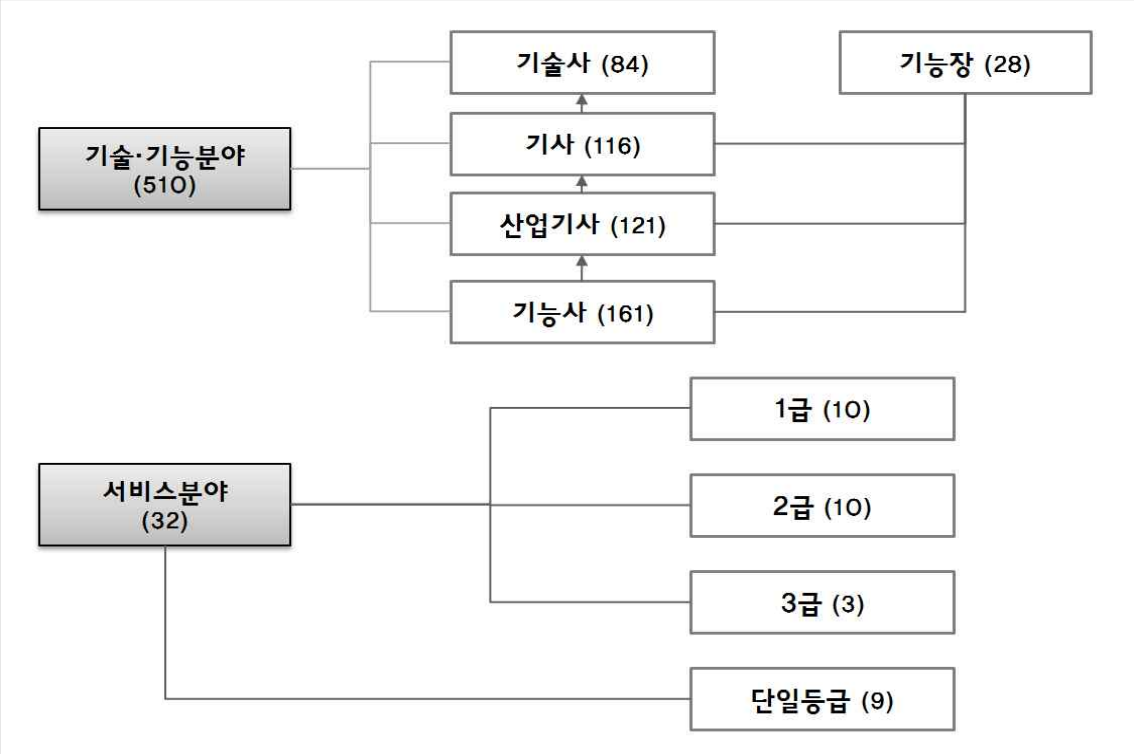

나. 운영체계

1) 제도 설계 및 운영 총괄

○ 「국가기술자격법」 및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담당

- 제도설계 : 등급체계・분류체계 조정, 종목신설・통합・폐지, 관할영역설정, 응시자격 조정, 과목면제 결정 등

- 운영 : 검정의 기본방향 제시, 검정제도 개선, 수탁기관 평가・선정・위탁 취소・권고 등

- 활용 : 국가 간 상호인정 조치, 불법대여 단속 총괄

- 인프라 구축 : 직업능력표준 개발 총괄, 자격의 성과(효용성) 평가 및 피드백 등

2) 소관종목 운영 :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서 담당

○ 소관종목의 신설, 통합, 폐지, 세분화(고용노동부 협의)

○ 소관종목 검정위탁요청,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위탁취소

○ 소관종목 출제기준조정 의견 제시

○ 소관종목의 직업능력표준 개발 등

3) 제도운영(검정) : 산업인력공단 등 검정수탁기관(8개)에서 담당

○ 문제출제, 시행, 채점, 자격증 교부 등

4) 자격의 활용 :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서 담당

○ 영업면허, 의무고용, 특별전형,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

○ 소관종목 불법대여 단속 및 행정처분(자격취소·정지 등)

<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 >

고용노동부(자격 총괄)	⇔	19개 자격 소관 부처(관리·활용)
▪ 법령 및 제도 운영 관리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운영 등		▪ 관련 사업법에 의거 활용 ▪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 ⇕

검정시행기관	
검정형(54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기관)	과정평가형(143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문제 개발, 출제관리 ▪ 시험시행, 자격취득자 관리	▪ 시험문제 개발, 출제관리 ▪ 내부평가(훈련기관)→외부평가(공단)

다. 자격취득 관리체계

1)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 검정형 정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에 따라 필기시험(지필) 및 실기시험(작업 및 면접)의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자격 부여

□ 검정방법 : 정기검정(연 1~4회 시행), 상시검정, 수시검정

○ 정기검정 : 연 1~4회 시행

○ 상시검정 : (인력공단) 12종목*, (대한상의) 6종목**

*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 제빵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 수시검정 :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

□ 합격기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직무분야	등급	필기시험	실기(면접) 시험
기술, 기능 분야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구술형 면접시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 객관식 4지 택일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산업기사	▪ 객관식 4지 택일형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 객관식 4지 택일형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서비스 분야	1,2,3급	▪ 객관식 4지 택일형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컴활, 전산회계운용사 70점이상)

□ 검정절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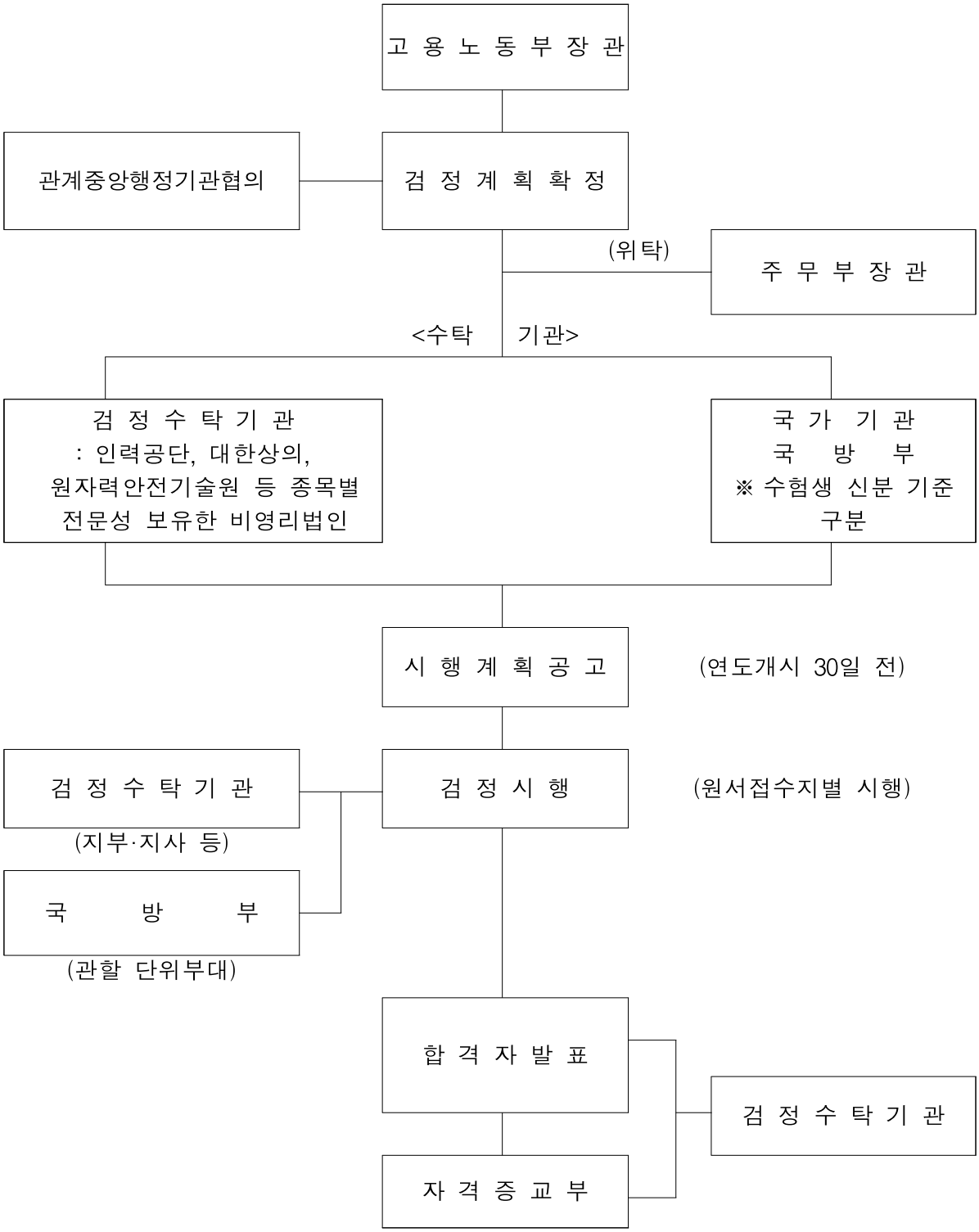

□ 응시요건(「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급	응 시 요 건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기술사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기술사 - 기사+4년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대졸+6년 ○3년제 전문대졸+7년 ○2년제 전문대졸+8년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6년(8년)	9년
기능장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기능장 - 산업기사+5년 - 기능사+7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9년
기사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기사 - 산업기사+1년 - 기능사+3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전문대졸+1년 ○2년제전문대졸+2년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2년	4년
산업기사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산업기사 - 기능사+1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2년
기능사	○제한 없음		
서비스	○대학졸업자,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을 가진자 등 종목에 따라 다름		

※ 이수예정자 : 훈련과정의 2분의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 졸업예정자 :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사람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6학점은 4년제, 81학점은 3년제 전문대학, 41학점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봄)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폐지(2013.1.1.부터)

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 정의

○ NCS 기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 ·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 출석률 75% 이상이면서 내부평가(교육 · 훈련기관) 및 외부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도입배경

○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 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직업교육 · 훈련과 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 · 운영하고, '일-교육 · 훈련-자격'을 연계하여 직업교육 · 훈련을 정상화

□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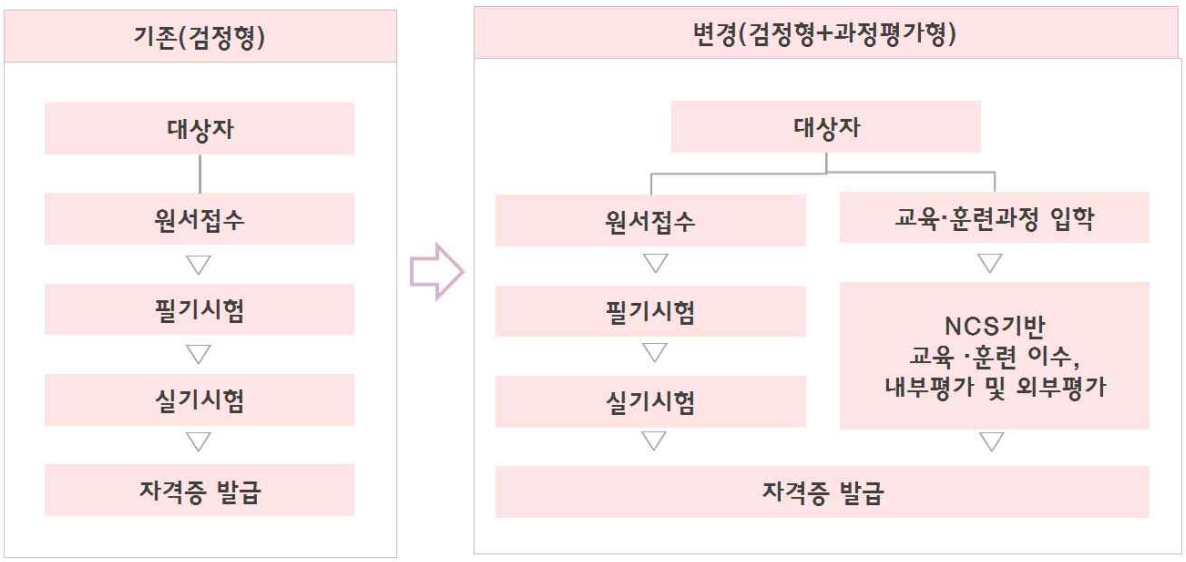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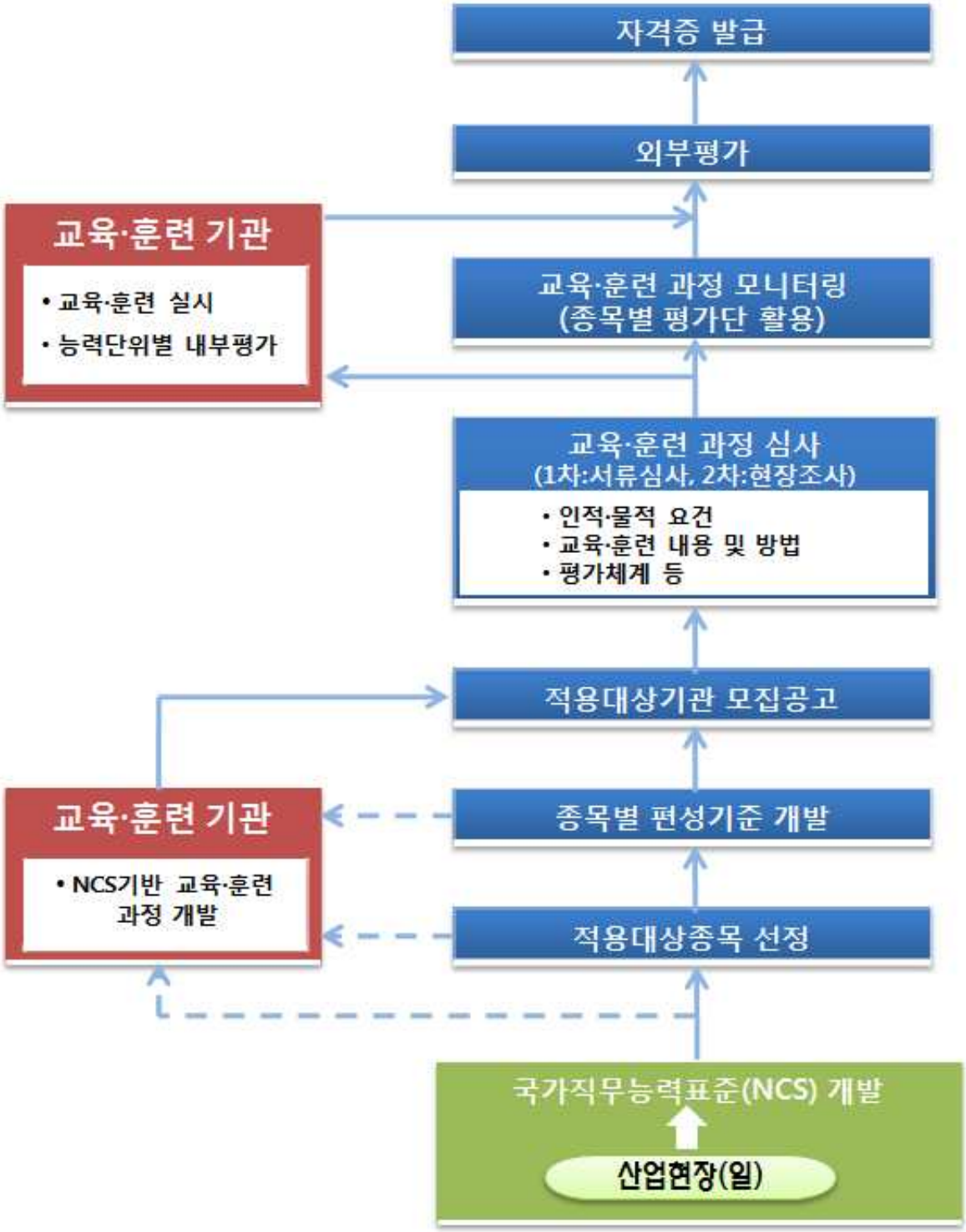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합격기준

내부평가	외부평가
○ 이수기준 충족자 - 출석율 75% 이상 + 교육참여 ○ NCS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	○ 외부평가는 전체 교육 훈련시간 종료 후 2회 평가 ○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내부 및 외부 평가 결과를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13년부터 고용노동부 총괄, 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 24대 분야 1,022개 NCS 개발·고시('20.6.12.)

< NCS 24대 분야(대분류) >

01.사업관리	02.경영·회계·사무	03.금융·보험	04.교육·자연·사회과학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보건·의료	07.사회복지·종교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
09.운전·운송	10.영업판매	11.경비·청소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음식서비스	14.건설	15.기계	16.재료
17.화학	18.섬유·의복	19.전기·전자	20.정보통신
21.식품가공	22.인쇄·목재·가구·공예	23.환경·에너지·안전	24.농림어업

○ 각 NCS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NCS의 내용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 행 준 거 ※ 일부 내용만 발췌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하드웨어 부품 선정	부품의 특성 분석하기	ㅇ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ㅇ 기초 회로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동작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식】** ㅇ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 지식 ㅇ 부품사양서 **【기 술】** ㅇ 계측장비 사용 능력 ㅇ 부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능력 **【태도】** ㅇ 부품의 소재 및 재질 관련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 ㅇ 정확한 부품 평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부품의 검사항목 결정하기	
		부품 선정하기 ⋮	
	하드웨어 회로 구현설계 ⋮		

⇒ (인력공급)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게 개편
(인력수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에 준거로 활용

3. 숙련기술장려시책

가. 기능경기대회

1) 참가절차

지방기능경기대회 (연령제한 없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대회 1,2위 입상자)

2) 우대사항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단위 : 천원)

구 분	표 창	상 금	계속종사장려금 (매년 1회)	특 전
금	동탑산업훈장	67,200	9,500～12,000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 편입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동일분야 종사시)
은	철탑산업훈장	56,000	7,160～9,000	
동	석탑산업훈장	39,200	5,050～6,300	
우수상	산업포장	10,000	-	-

○ 전국기능경기대회

(단위 : 천원)

구 분	상 금	특 전
금 은 동	12,000(300) 8,000(200) 4,000(100)	○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지방대회는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않은 자 중 최근 2년간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자(1위,2위)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기회 부여
우수상 4위 5위 6위	1,000 700 500	-

※ (　　)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나. 대한민국명장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1) 신청절차

○ 대한민국명장 신청 <추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우수숙련기술자 신청 <추천: 사업주, 사업주단체장>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선정

2) 선정대상 · 방법 · 우대사항

구 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선정대상	○ 산업현장의 선정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 -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산업현장의 선정대상 직종에서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써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선정방법	○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	○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 명패 제작 수여 ○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 매년 계속종사 장려금 지급 ○ 해외산업시찰 ○ 1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 우수숙련기술자증서 수여 ○ 2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다. 숙련기술전수자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1) 신청절차

○ 숙련기술전수자 신청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선정

2) 선정대상 · 방법 및 우대사항

구 분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대상	○ 다음 종목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 1. 제조업의 기반 분야(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2.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 ·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 재설계 -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촉진 등
선정방법	○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면접을 거쳐 선정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우대사항	○ 숙련기술전수지원금(2~5년) - 숙련기술전수자: 월 80만원 - 전수대상자: 월 20만원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 산업현장교수단 활용한 HRD종합 서비스 우선지원 ○ 언론홍보(기획보도)

4.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법령

구 분	제 정	최종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97. 12. 24.	’20. 10. 1. (’20. 3. 31. 공포)
○ 고용보험법	’93. 12. 27.	’20. 8. 28. (’20. 5. 26. 공포)
○ 국가기술자격법	’73. 12. 31.	’17. 3. 28. (’16. 12. 27. 공포)
○ 숙련기술장려법 (기능장려법에서 변경)	’89. 4. 1.	’20. 3. 31. (’20. 3. 31. 공포)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81. 12. 31.	’11. 6. 10. (’11. 3. 9. 공포)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 8. 27.	’20. 8. 28. (’19. 8. 27. 공포)
○ 자격기본법(교육부 공동)	’97. 3. 27.	’19. 10. 24. (’19. 4. 23. 공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교육부 공동)	’97. 3. 27.	’19. 6. 19. (’18. 12. 18. 공포)
○ 기능대학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통합)	’77. 7. 23.	’10. 9. 1. (’10. 5. 31. 공포)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1.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 41
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 58
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 75
4. 자격제도 ····· 76
5. 국가직무능력표준 ····· 84
6. 숙련기술기능장려 사업현황 ····· 126

1.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가. 총 괄

(단위 : 천명, 억원)

훈 련 명	2019	
	인 원	집행액
총 계	4,263	15,948
□ 재직자훈련	3,974	7,890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3,441	4,540
○ 유급휴가훈련	24	238
○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506	1,550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555
○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3	7
□ 실업자훈련	257	7,209
○ 전직실업자훈련	151	2,170
○ 신규실업자훈련	46	748
- 신규실업자훈련	32	711
-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14	36
○ 지역실업자훈련	0.3	2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60	4,289
□ 공공훈련	32	849
○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23	405
○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4	292
○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5	152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유급휴가훈련에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일학습병행 포함

※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장과정, 소규모사업장훈련, 전공심화과정('12), 베이비부머훈련('13), 여성재취업훈련('14), 하이테크과정('18), 신중년특화과정('19) 합계),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의 예산은 순수 훈련비임

※ 실업자훈련인원은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집행액은 일부 기타 운영비 예산 제외임

나. 재직자훈련

1) 고용보험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 규모별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총 계	50인 미만	50～150인 미만	150인～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2,359,526	2,316,817	30,843	6,939	2,377	1,599	951
(비 율)	(100.0)	(98.2)	(1.3)	(0.3)	(0.1)	(0.1)	(0.0)
피보험자	13,864,138	7,078,884	1,859,845	1,034,618	619,194	832,540	2,439,057
(비 율)	(100.0)	(51.1)	(13.4)	(7.5)	(4.5)	(6.0)	(17.6)

※ 사업장수/피보험자수는 건수개념이 아닌 순수사업장임

□ 업종별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농·임·어·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운수,창고·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예술, 여가관련·기타
사업장	2,359,526	19,272	341,182	10,118	504,731	820,729	52,872	105,028	180,001	6,003	319,590
(비 율)	(100.0)	(0.8)	(14.5)	(0.4)	(21.4)	(34.8)	(2.2)	(4.5)	(7.6)	(0.3)	(13.5)
피보험자	13,864,138	48,430	3,593,290	162,582	714,421	2,941,934	645,330	840,542	1,940,671	331,031	2,645,907
(비 율)	(100.0)	(0.3)	(25.9)	(1.2)	(5.2)	(21.2)	(4.7)	(6.1)	(14.0)	(2.4)	(19.1)

※ 사업장수/피보험자수는 건수개념이 아닌 순수사업장임
※ '17.7.1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차로 개정됨에 따라 10차 업종코드 적용

2) 고용보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구 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유급휴가제외)	유급휴가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전직 실업자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장	139,369	5,285	-	209	-	-
건 수	3,440,629	24,333	505,991	-	151,060	60,262
지원금	453,957	23,751	154,998	155,500	216,989	428,857

※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 규모세분류 적용, 건수는 기금결재일자 지급연인원수 기준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서 사업장은 운영기관 수임
※ '전직실업자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집행액은 기타 운영비 예산 제외임

3)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해당없음
사업장	139,369	118,024	14,188	3,911	1,374	1,056	810	6
(비 율)	(100.0)	(84.7)	(10.2)	(2.8)	(1.0)	(0.8)	(0.6)	(0.0)
건 수	3,440,629	972,718	624,680	382,572	278,465	268,295	913,887	12
(비 율)	(100.0)	(28.3)	(18.2)	(11.1)	(8.1)	(7.8)	(26.6)	(0.0)
지원금	453,957	158,904	102,661	49,927	28,965	28,026	85,243	231
(지원율)	(100.0)	(35.0)	(22.6)	(11.0)	(6.4)	(6.2)	(18.8)	(0.1)

※ 기금결재기준으로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건수는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비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규모별 비율임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규모별 지원 비율임

□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농·임·어·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운수,창고·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예술, 여가관련·기타	분류 불능
사업장	139,369	715	41,546	996	15,933	15,198	4,476	8,547	11,158	84	40,710	6
(비 율)	(100.0)	(0.5)	(29.8)	(0.7)	(11.4)	(10.9)	(3.2)	(6.1)	(8.0)	(0.1)	(29.2)	(0.0)
건 수	3,440,629	3,295	865,013	49,749	132,988	419,899	191,084	366,256	524,293	13,533	874,507	12
(비 율)	(100.0)	(0.1)	(25.1)	(1.4)	(3.9)	(12.2)	(5.6)	(10.6)	(15.2)	(0.4)	(25.4)	(0.0)
지원금	453,957	571	197,139	4,420	16,514	50,167	27,509	24,827	52,620	1,029	78,931	231
(지원율)	(100.0)	(0.1)	(43.4)	(1.0)	(3.6)	(11.1)	(6.1)	(5.5)	(11.6)	(0.2)	(17.4)	(0.1)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비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임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업종별(10차) 지원 비율임

4) 유급휴가훈련

□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해당없음
사업장	5,285	4,641	338	144	53	34	75	-
(비 율)	(100.0)	(87.8)	(6.4)	(2.7)	(1.0)	(0.6)	(1.4)	-
건 수	24,333	14,757	3,728	3,944	596	278	1,030	-
(비 율)	(100.0)	(60.6)	(15.3)	(16.2)	(2.4)	(1.1)	(4.2)	-
지원금	23,751	11,181	3,163	3,955	538	1,034	3,880	1
(지원율)	(100.0)	(47.1)	(13.3)	(16.7)	(2.3)	(4.4)	(16.3)	(0.0)

※ 기금결재기준으로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건수는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비율은 유급휴가훈련 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규모별 비율임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규모별 지원 비율임

□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농·임·어·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운수,창고·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예술, 여가관련·기타	분류 불능
사업장	5,285	-	527	30	2,506	543	137	1,242	259	2	39	-
(비 율)	(100.0)	-	(10.0)	(0.6)	(47.4)	(10.3)	(2.6)	(23.5)	(4.9)	(0.0)	(0.7)	-
건 수	24,333	-	8,168	97	5,408	1,028	413	8,156	929	6	128	-
(비 율)	100.0	-	(33.6)	(0.4)	(22.2)	(4.2)	(1.7)	(33.5)	(3.8)	(0.0)	(0.5)	-
지원금	23,751	-	11,248	19	6,058	779	102	5,081	438	6	20	1
(지원율)	100.0	-	(47.4)	(0.1)	(25.5)	(3.3)	(0.4)	(21.4)	(1.8)	(0.0)	(0.1)	(0.0)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 중복 계산된 지급연인원수임
※ 비율은 유급휴가훈련 활용사업장(건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임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업종별(10차) 지원 비율임

5)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 규모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50인	15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해당 없음
건 수	505,991	292,554	69,838	34,619	19,884	25,311	63,548	237
(비 율)	(100.0)	(57.8)	(13.8)	(6.8)	(3.9)	(5.0)	(12.6)	(0.0)
지원금	154,998	93,715	20,521	10,057	5,719	7,436	17,465	85
(지원율)	(100.0)	(60.5)	(13.2)	(6.5)	(3.7)	(4.8)	(11.3)	(0.1)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 중복계산된 건수개념임
※ 비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건수에 대한 규모별 비율임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규모별 지원비율임
※ 재직자 임의가입 자영업자(훈련장려금)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자영업자), 근로자향상(구 수강지원금) 포함

□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농·임·어·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운수,창고·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예술, 여가관련·기타	분류 불능
건 수	505,991	1,015	90,790	4,766	32,885	84,577	29,648	39,741	89,479	20,221	112,632	237
(비 율)	(100.0)	(0.2)	(17.9)	(0.9)	(6.5)	(16.7)	(5.9)	(7.9)	(17.7)	(4.0)	(22.3)	(0.0)
지원금	154,998	383	28,950	1,267	11,189	28,112	8,471	9,915	27,109	5,734	33,784	85
(지원율)	(100.0)	(0.2)	(18.7)	(0.8)	(7.2)	(18.1)	(5.5)	(6.4)	(17.5)	(3.7)	(21.8)	(0.1)

※ 건수는 기금결재기준으로 중복계산된 건수개념임
※ 비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건수에 대한 업종별 비율임
※ 지원율은 총지원금에 대한 업종별(10차) 지원비율임
※ 재직자 임의가입 자영업자(훈련장려금)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자영업자), 근로자향상(구 수강지원금) 포함

6) 2019년 재직자훈련 특성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훈련제외)	유급휴가훈련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성별	합계	3,970,953	3,440,629	24,333	505,991
	남	2,281,582	2,062,257	18,813	200,512
	여	1,689,371	1,378,372	5,520	305,479
연령별	합계	3,970,953	3,440,629	24,333	505,991
	19세이하	30,646	28,345	225	2,076
	20~29	1,029,179	878,641	5,177	145,361
	30~39	1,173,456	1,045,179	7,815	120,462
	40~49	953,632	819,687	7,000	126,945
	50~59	559,282	468,545	3,564	87,173
	60세이상	224,758	200,232	552	23,974
학력별	합계	3,970,953	3,440,629	24,333	505,991
	초졸	3,205	2,385	68	752
	중졸	12,173	9,585	28	2,560
	고졸	289,174	178,903	2,425	107,846
	전문대졸	113,135	41,498	298	71,339
	대졸	501,466	308,636	8,019	184,811
	대학원졸	27,178	19,072	10	8,096
	기타 (무학력, 학점은행제 포함)	17,250	6,053	743	10,454
	분류불능	3,007,372	2,874,497	12,742	120,133

다. 실업자훈련

1) 훈련직종별 훈련실시현황(2019년 12월말)

(단위 : 명)

훈 련 분 야	합 계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신 규 실업자훈련	전 직 실업자훈련	
합 계	242,845	31,523	151,060	60,262
경영·행정·사무직	49,048	6,547	39,459	3,042
금융·보험직	180	12	168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52	9	43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525	175	748	15,602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919	174	1,331	3,41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309	449	3,258	6,602
교육직	256	63	193	-
법률직	2,019	267	1,745	7
사회복지·종교직	2,919	350	2,569	-
보건·의료직	16,538	2,482	14,056	-
예술·디자인·방송직	17,526	1,000	5,767	10,759
미용·예식 서비스직	16,408	3,826	12,582	-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077	155	723	199
음식 서비스직	26,025	5,627	20,398	-
경호·경비직	111	10	101	-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1,071	6,082	24,989	-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03	20	183	-
영업·판매직	472	73	399	-
운전·운송직	3,068	250	2,758	60
건설·채굴직	6,774	557	4,745	1,472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6,854	125	1,036	5,693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643	32	429	2,18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729	449	3,100	5,180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4,215	-	1	4,214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87	1	18	168
섬유·의복 생산직	888	117	595	176
식품가공·생산직	9,143	2,177	6,966	-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3,776	478	2,551	747
농림어업직	910	16	149	745

※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19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는 '20.1월 실시간통계로 상이할 수 있음

2) 훈련생 특성별 훈련실시 현황(2019년 12월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신 규 실업자훈련	전 직 실업자훈련	
성별	합계	242,845	31,523	151,060	60,262
	남	88,736	7,679	39,255	41,802
	여	154,109	23,844	111,805	18,460
연령별	합계	242,845	31,523	151,060	60,262
	19세 이하	17,543	6,997	4,527	6,019
	20～29세	96,931	8,595	49,942	38,394
	30～39세	41,645	3,140	30,646	7,859
	40～49세	36,930	3,649	30,278	3,003
	50～59세	32,486	5,549	24,078	2,859
	60세이상	17,310	3,593	11,589	2,128
학력별	합계	242,845	31,523	151,060	60,262
	초졸	2,768	628	2,031	109
	중졸	14,159	3,944	6,016	4,199
	고졸	80,512	10,365	51,626	18,521
	전문대졸	34,149	2,670	23,157	8,322
	대졸	47,814	5,062	28,949	13,803
	대학원졸	2,095	256	1,300	539
	기타 (무학력, 학점은행제 포함)	781	93	520	168
	분류불능	60,567	8,505	37,461	14,601

※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19년 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는 '20.1월 실시간통계이므로 본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3) 훈련종류별 훈련실시현황(2019년 12월말)

가) 내일배움카드제

○ 신규실업자 훈련

(단위 : 명, %)

훈 련 분 야	실시 인원	성별		연령별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비율)	31,523 (100.0)	7,679 (24.4)	23,844 (75.6)	6,997 (22.2)	8,595 (27.3)	3,140 (10.0)	3,649 (11.6)	5,549 (17.6)	3,593 (11.4)
경영·행정·사무직	6,547	1,425	5,122	693	3,581	747	631	623	272
금융·보험직	12	7	5	-	9	1	2	-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9	1	8	-	-	-	5	1	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5	110	65	29	124	13	4	4	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74	95	79	30	103	14	13	9	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49	351	98	44	304	33	25	30	13
교육직	63	13	50	-	10	10	17	19	7
법률직	267	106	161	13	163	70	12	6	3
사회복지·종교직	350	60	290	5	89	64	81	81	30
보건·의료직	2,482	87	2,395	667	693	295	527	273	27
예술·디자인·방송직	1,000	334	666	180	596	114	56	37	17
미용·예식 서비스직	3,826	470	3,356	1,835	849	550	366	191	35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55	55	100	66	58	11	8	10	2
음식 서비스직	5,627	2,089	3,538	2,197	875	522	791	860	382
경호·경비직	10	9	1	-	1	-	1	5	3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082	389	5,693	4	27	146	624	2,804	2,477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0	10	10	-	2	2	-	13	3
영업·판매직	73	27	46	4	13	22	20	12	2
운전·운송직	250	249	1	35	78	31	26	46	34
건설·채굴직	557	510	47	78	115	47	96	136	85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25	119	6	21	51	19	9	13	1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32	32	-	5	12	6	-	2	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449	424	25	50	209	27	27	79	57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	1	-	-	1	-	-	-	-
섬유·의복 생산직	117	11	106	6	10	24	22	37	18
식품가공·생산직	2,177	632	1,545	995	525	265	185	159	4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78	52	426	40	96	107	99	95	41
농림어업직	16	11	5	-	1	-	2	4	9

※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 전직실업자 훈련

(단위 : 명, %)

훈 련 분 야	실시 인원	성별		연령별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비율)	151,060 (100.0)	39,255 (26.0)	111,805 (74.0)	4,527 (3.0)	49,942 (33.1)	30,646 (20.3)	30,278 (20.0)	24,078 (15.9)	11,589 (7.7)
경영·행정·사무직	39,459	7,343	32,116	673	19,280	8,758	7,097	2,811	840
금융·보험직	168	36	132	1	83	38	41	4	1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43	13	30	-	3	8	7	14	11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48	441	307	23	546	106	48	17	8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31	776	555	23	884	217	120	61	26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258	2,538	720	33	1,962	548	344	241	130
교육직	193	47	146	-	30	57	48	43	15
법률직	1,745	579	1,166	26	1,021	486	149	49	14
사회복지·종교직	2,569	582	1,987	5	573	735	796	360	100
보건·의료직	14,056	405	13,651	648	4,340	3,235	4,594	1,180	59
예술·디자인·방송직	5,767	2,206	3,561	140	3,670	1,222	488	185	62
미용·예식 서비스직	12,582	1,246	11,336	1,223	4,554	3,898	2,250	550	107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723	197	526	54	486	112	49	21	1
음식 서비스직	20,398	5,878	14,520	1,032	4,636	4,683	5,217	3,571	1,259
경호·경비직	101	101	-	-	16	6	15	36	28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4,989	2,736	22,253	7	147	905	4,707	11,730	7,493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83	131	52	-	15	23	43	64	38
영업·판매직	399	131	268	2	93	116	123	53	12
운전·운송직	2,758	2,735	23	31	918	579	527	492	211
건설·채굴직	4,745	4,465	280	96	1,061	1,001	1,169	1,005	41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036	999	37	35	464	237	129	109	6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429	427	2	17	150	77	58	89	3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100	2,939	161	34	1,451	498	386	436	295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	1	-	-	-	1	-	-	-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8	11	7	-	8	1	6	2	1
섬유·의복 생산직	595	64	531	6	91	179	136	138	45
식품가공·생산직	6,966	1,867	5,099	367	2,607	2,021	1,233	552	186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551	244	2,307	50	847	887	479	221	67
농림어업직	149	117	32	1	6	12	19	44	67

※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단위 : 명, %)

훈 련 분 야	실시 인원	성별		연령별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비율)	60,262 (100.0)	41,802 (69.4)	18,460 (30.6)	6,019 (10.0)	38,394 (63.7)	7,859 (13.0)	3,003 (5.0)	2,859 (4.7)	2,128 (3.5)
경영·행정·사무직	3,042	1,558	1,484	150	2,129	572	150	39	2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602	10,415	5,187	1,000	12,281	1,948	284	75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414	2,517	897	421	1,464	286	202	416	62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602	4,518	2,084	497	4,766	829	256	157	97
법률직	7	4	3	-	5	1	-	1	-
예술·디자인·방송직	10,759	4,457	6,302	1,659	7,196	1,304	349	179	7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99	40	159	80	113	6	-	-	-
운전·운송직	60	52	8	60	-	-	-	-	-
건설·채굴직	1,472	1,366	106	184	300	224	263	304	197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693	5,458	235	1,109	2,780	815	405	415	169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182	2,163	19	174	939	337	291	285	15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180	5,125	55	535	2,354	806	504	597	3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4,214	2,820	1,394	82	3,576	488	52	12	4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168	141	27	1	109	37	11	7	3
섬유·의복 생산직	176	31	145	5	38	41	39	37	16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747	465	282	60	309	133	125	68	52
농림어업직	745	672	73	2	35	32	72	267	337

※ 훈련분야 구분 KECO 중분류(2018 직종)로 적용, 실시훈련생수는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라. 공공훈련

1) 한국폴리텍대학

○ 훈련별 현황

구 분	총 계	양성훈련									향상훈련		
		소계	다기능 기술자	전문 기술	기능장	하이 테크	신중년 특화 과정	학위 전공 심화	베이비 부머	여성 재취업	소계	소규모(영세) 사업장훈련	재직자 훈련
계	82,139	21,926	13,757	4,029	246	609	396	344	1,027	1,518	60,213	4,453	55,760
서울정수	3,567	1,541	1,147	34	20	37	81	73	43	106	2,026	195	1,831
서울강서	1,521	841	470	124	-	83	51	-	21	92	680	125	555
성남	3,508	930	762	21	-	43	-	-	63	41	2,578	152	2,426
제주	990	275	35	181	-	-	-	-	43	16	715	36	679
융합기술	139	139	-	-	-	139	-	-	-	-	-	-	-
인천	9,027	2,139	1,712	-	72	36	-	163	46	110	6,888	213	6,675
안성	1,163	680	584	-	-	-	-	-	14	82	483	100	383
남인천	1,890	419	-	251	-	-	110	-	41	17	1,471	121	1,350
화성	2,682	285	-	205	-	15	-	-	47	18	2,397	140	2,257
춘천	2,804	498	257	183	-	-	-	-	23	35	2,306	777	1,529
원주	1,845	321	43	203	-	21	-	-	18	36	1,524	101	1,423
강릉	2,107	437	110	252	-	-	-	-	40	35	1,670	203	1,467
대전	2,330	1,084	797	83	-	62	-	-	80	62	1,246	145	1,101
청주	2,015	803	677	23	-	11	-	-	23	69	1,212	112	1,100
아산	1,621	568	466	-	-	19	-	-	41	42	1,053	111	942
홍성	776	282	205	38	-	-	-	-	-	39	494	58	436
충주	770	184	-	169	-	-	-	-	-	15	586	52	534
광주	2,771	1,032	725	200	-	22	-	-	14	71	1,739	110	1,629
김제	2,229	554	467	14	-	-	-	-	51	22	1,675	71	1,604
목포	1,369	321	204	62	-	-	-	-	-	55	1,048	66	982
익산	2,801	334	80	190	-	-	-	-	17	47	2,467	81	2,386
순천	3,227	317	-	280	-	-	-	-	37	-	2,910	75	2,835
대구	2,890	896	733	30	-	20	39	-	24	50	1,994	125	1,869
구미	1,728	626	431	116	-	-	-	-	39	40	1,102	96	1,006
달성	925	275	-	203	-	14	-	-	20	38	650	91	559
포항	1,614	267	-	210	-	-	-	-	41	16	1,347	108	1,239
영주	1,268	241	42	142	-	-	-	-	21	36	1,027	75	952
창원	8,962	1,853	1,219	276	91	30	-	108	63	66	7,109	144	6,965
부산	2,095	939	774	17	63	-	-	-	21	64	1,156	111	1,045
울산	3,806	922	770	57	-	-	31	-	35	29	2,884	100	2,784
동부산	680	263	-	179	-	-	41	-	-	43	417	60	357
진주	2,322	346	-	265	-	-	-	-	63	18	1,976	74	1,902
바이오	1,538	399	366	-	-	-	-	-	17	16	1,139	137	1,002
섬유패션	1,821	353	209	21	-	25	43	-	-	55	1,468	150	1,318
항공	1,306	530	472	-	-	-	-	-	21	37	776	138	638
신기술교육원	32	32	-	-	-	32	-	-	-	-	-	-	-

※ 다기능기술자 : 2020. 2월 기준(1학년 현원 + 2학년 졸업, 졸업유보인원)
전문기술 : 2020. 2월 기준(주,야 포함)
기능장 : 2020. 2월 기준(단, 창원 1년과정 수료 + 2년과정 현원+수료)
학위전공심화 : 2020. 2월 기준(1학년 현원 + 2학년 졸업, 졸업유보인원)

○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 학과별 현황

(2020. 2월 졸업자기준, 단위 : 명)

학과명 / 캠퍼스	3D프린팅융합디자인과	IT융합제어과	IT응용제어과	건축설계과	그린건축과	그린에너지설비과	금형디자인과	기계시스템과	기계시스템설계과	나노측정과	녹색산업설비과	데이터분석과	디지털방송과	디지털콘텐츠과	로봇자동화과	메카트로닉스과	모바일정보통신과	미디어콘텐츠과	바이오나노소재과
계	50	46	37	23	29	119	344	226	46	61	47	17	52	58	75	495	50	23	41
서울정수						91										63	50		
서울강서												17		58					
성남							43												
제주																			
인천				23			74	80					52			78			
안성									46	40									
춘천																		23	
강릉																			
원주																			
대전								65			47				75				
청주																71			
아산																33			
홍성																			
광주					29	28	54												
김제							22									25			
목포																			
익산										21									
대구							53									54			
구미			37																
영주																			
창원							49	81								105			
부산		46					49									66			
울산	50																		
바이오																			41
섬유패션																			
항공																			

학과명 / 캠퍼스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식품분석과	바이오품질관리과	반도체CAD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반도체시스템과	발전설비과	방송영상과	산업디자인과	산업설비과	산업설비자동화과	산업잠수과	생명의약분석과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스마트시스템제어과	스마트융합제어과	스마트자동화시스템과	스마트전기과
계	26	27	31	37	56	25	67	34	28	112	21	423	21	29	82	61	51	28	307
서울정수										61									
서울강서																			
성남																61			106
제주																			
인천										50		121							
안성					56										50				
춘천										1	21								
강릉								24					21						
원주																			
대전															32				
청주							67												
아산						25			28			30							
홍성												25						28	
광주																			
김제												65							52
목포								10				21							
익산																			
대구												54							93
구미																			
영주																			
창원												57							56
부산																			
울산												50					51		
바이오	26	27	31	37										29					
섬유패션																			
항공																			

학과명 / 캠퍼스	스마트전자과	스마트제품디자인과	스마트팩토리과	시각디자인과	신소재응용과	에너지환경과	영상그래픽과	영상디자인과	융합디자인과	의료정보과	자동차과	자동차기계과	자동화시스템과	전기과	전기에너지과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전기전자제어과	전자과	전자정보통신과
계	182	20	29	86	226	29	20	27	16	23	302	52	217	409	117	76	122	49	52
서울정수				58							88			54					
서울강서										23									
성남					43								52						52
제주									16										
인천					47						82					76			
안성							20							33					
춘천		20												39					
강릉																			
원주																			
대전								27									122		
청주															117				
아산				28								52							
홍성														30					
광주					25						31		58	50				49	
김제																			
목포														24					
익산																			
대구	51				52														
구미	35												48	53					
영주	19																		
창원	25		29		32	29					50								
부산	52										51			52					
울산					27								59	74					
바이오																			
섬유패션																			
항공																			

학과명 / 캠퍼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시스템과	주얼리디자인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컴퓨터정보과	텍스타일컬러디자인과	통신전자과	패션디자인과	패션마케팅과	패션메이킹과	패션산업과	패션소재과	항공기계과	항공메카트로닉스과	항공전자과	항공정비과	항공제어시스템과	헬스케어전자과
계	99	210	41	495	176	74	24	18	72	13	20	25	26	46	63	19	32	57	27
서울정수		25		47	60														
서울강서			41						42			25							
성남				44															
제주																			
인천	99					74													
안성								18											
춘천				11															27
강릉																			
원주				20															
대전		43																	
청주		58		52															
아산		56																	
홍성				24															
광주					27														
김제		28		59															
목포				28	17														
익산				13															
대구				52															
구미				39															
영주																			
창원					72														
부산				43															
울산				63															
바이오																			
섬유패션							24		30	13	20		26						
항공														46	63	19	32	57	

○ 전문기술 양성훈련 특성별 현황

(단위 : 명, %)

훈련 분야	실시 인원	성별		학력별			연령별					
		남	여	고졸 이하	2년 대졸	4년 대졸 이상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계	4,029	3,666	363	2,530	844	655	1,358	1,996	397	130	96	52
개별특성화	249	156	93	132	49	68	67	119	30	12	17	4
건축	22	17	5	15	4	3	8	11	3	-	-	-
금형	52	49	3	41	9	2	30	20	1	1	-	-
기계	636	609	27	416	137	83	215	337	61	13	5	5
기계설계	59	54	5	28	16	15	12	38	8	1	-	-
디자인	153	66	87	93	29	31	49	81	14	8	1	-
미디어	116	58	58	83	17	16	52	58	5	1	-	-
산업설비	96	96	-	70	17	9	32	50	6	3	2	3
설비	614	607	7	376	143	95	140	323	64	28	33	26
섬유패션	21	9	12	21	-	-	21	-	-	-	-	-
신소재	100	95	5	64	27	9	30	56	12	2	-	-
자동차	331	324	7	216	55	60	118	155	33	18	6	1
자동화	345	336	9	264	50	31	200	124	14	5	2	-
전기	826	812	14	432	223	171	187	462	112	31	25	9
전자	308	287	21	200	55	53	135	133	26	5	5	4
정보통신IT	101	91	10	79	13	9	62	29	8	2	-	-

※ 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실시인원 : '18년 3월～'20년 2월 수료생 기준

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가.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13~'19)

(단위 : 천명, 억원)

훈 련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인 원	집행액
총 계	4,101	11,817	3,774	11,526	3,205	13,117	3,537	15,974	4,042	16,383	5,224	17,873	4,263	15,948
□ 재직자훈련	3,616	6,385	3,453	6,426	2,895	6,681	3,228	8,693	3,720	9,035	4,916	9,262	3,974	7,890
ㅇ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유급휴가훈련제외)	3,284	3,213	3,102	3,498	2,496	3,242	2,867	4,940	3,439	5,623	4,583	5,660	3,441	4,540
ㅇ유급휴가훈련	10	95	10	98	10	93	9	100	19	149	20	193	24	238
ㅇ근로자 능력개발지원	-	-	287	818	330	880	292	795	262	820	311	951	506	1,550
ㅇ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212	542	209	577	25	70	-	-	-	-	-	-	-	-
ㅇ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51	180	34	124	3	11	-	-	-	-	-	-	-	-
ㅇ근로자 개인지원	-	-	44	117	302	799	-	-	-	-	-	-	-	-
ㅇ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43	206	54	244	59	233	60	227	-	-	-	-	-	-
ㅇ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1,462	-	1,656	-	2,111	-	2,520	-	2,312	-	2,365	-	1,555
ㅇ학자금대부	16	624	-	-	-	-	-	-	-	-	-	-	-	-
ㅇ능력개발시설・장비 비용대부	-	63	-	112	-	122	-	111	-	131	-	87	-	-
ㅇ고용보험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	-	-	-	-	-	-	-	-	-	2	6	3	7
□ 실업자훈련	451	4,710	284	4,302	272	5,579	272	6,399	291	6,541	277	7,756	257	7,209
ㅇ전직실업자훈련	313	2,351	191	1,899	158	1,694	177	1,992	182	1,796	174	2,372	151	2,170
ㅇ신규실업자훈련	99	806	51	509	40	546	36	628	38	643	37	726	46	748
- 신규실업자훈련	-	-	-	-	-	-	-	-	-	-	-	-	32	711
-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	-	-	-	-	-	-	-	-	-	-	-	14	36
ㅇ지역실업자훈련	1	11	1	11	0.4	2	0.4	3	0.4	2	0.3	2	0.3	2
ㅇ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8	1,542	41	1,883	74	3,337	59	3,776	71	4,100	66	4,656	60	4,289
□ 공공훈련	34	722	37	798	38	857	37	882	31	807	31	855	32	849
ㅇ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24	285	26	330	27	381	27	389	22	355	22	383	23	405
ㅇ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6	296	7	326	7	333	6	339	5	301	4	317	4	292
ㅇ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4	141	4	142	4	143	4	154	4	151	5	155	5	152

※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구,「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14.4.15)한 사업임. 따라서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은 기존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와 신규 근로자능력개발지원의 합임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 유급휴가훈련에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포함(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에 일학습병행 포함)

※ 실업자훈련인원은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집행액은 일부 기타 운영비 예산 제외임

※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장과정, 소규모사업장훈련, 전공심화과정('12), 베이비부머훈련('13), 여성재취업훈련('14), 하이테크과정('18), 신중년특화과정('19) 합계),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의 예산은 순수 훈련비임

※ 자료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나. 재직자훈련

1) 총 괄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주훈련(유급휴가훈련 제외)	유급휴가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 능력향상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시설·장비 대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능력 개발지원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13	사업장	299,275	4,517	-	-	-	168	-	11	-
	훈련건수	3,284,401	10,463	212,119	50,576	43,362	223,186	15,562	-	-
	지원금	321,304	9,472	54,188	17,959	20,556	146,183	62,375	6,262	-
'14	사업장	286,580	5,007	-		-	180	종료사업	12	-
	훈련건수	3,101,972	10,340	287,596		54,402	209,117		-	-
	지원금	349,786	9,768	81,821		24,445	165,633		11,196	-
'15	사업장	217,427	4,039	-		-	212	종료사업	29	-
	훈련건수	2,495,792	10,057	330,293		58,939	210,338		-	-
	지원금	324,156	9,345	87,976		23,276	211,085		12,201	-
'16	사업장	125,922	3,215	-		-	213	종료사업	14	-
	훈련건수	2,866,904	9,499	291,723		60,310	251,090		-	-
	지원금	494,026	9,998	79,457		22,688	252,038		11,062	-
'17	사업장	153,654	5,451	-		종료사업	214	종료사업	20	-
	훈련건수	3,439,373	18,861	261,934			261,730		-	-
	지원금	562,345	14,891	82,015			231,264		13,075	-
'18	사업장	157,161	5,285	-		종료사업	215	종료사업	17	-
	훈련건수	4,583,150	19,676	311,401			252,159		-	1,541
	지원금	566,038	19,272	95,137			236,402		8,670	629
'19	사업장	139,369	5,285	-		종료사업	209	종료사업	종료사업	-
	훈련건수	3,440,629	24,333	505,991			186,662			2,586
	지원금	453,957	23,751	154,998			155,500			655

※ 사업주훈련, 유급휴가훈련에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전략분야 제외), 지역산업맞춤형 포함 ('16년부터 일학습병행 포함)
※ '16년부터 사업주훈련, 유급휴가훈련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 기준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서 사업장은 운영기관, 훈련건수는 수료훈련생수를 의미
※ '근로학자금대부'에서 훈련건수는 대부확정인원, 지원금은 대부금액을 의미
※ '시설·장비대부'에서 사업장은 대부기관, 지원금은 대부금액을 의미
※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에서 훈련건수는 수료인원을 의미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 규모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

연 도	사업장	지원금액	훈 련 건 수				
			계	150인미만	150인 이상 1,000인미만	1,000인 이상	해당없음
'13	299,275	321,304	3,284,401 (100.0)	1,257,587 (38.3)	756,360 (23.0)	1,270,454 (38.7)	- -
'14	286,580	349,786	3,101,972 (100.0)	1,219,177 (39.3)	720,373 (23.2)	1,162,419 (37.5)	3 (0.0)
'15	217,427	324,156	2,495,792 (100.0)	855,882 (34.3)	722,609 (29.0)	917,108 (36.7)	193 (0.0)
'16	125,922	494,026	2,866,904 (100.0)	957,467 (33.4)	820,815 (28.6)	1,088,621 (38.0)	1 (0.0)
'17	153,654	562,345	3,439,373 (100.0)	1,342,260 (39.0)	1,042,525 (30.3)	1,054,578 (30.7)	10 (0.0)
'18	157,161	566,038	4,583,150 (100.0)	2,044,651 (44.6)	1,373,594 (30.0)	1,164,900 (25.4)	5 (0.0)
'19	139,369	453,957	3,440,629 (100.0)	1,597,398 (46.4)	929,332 (27.0)	913,887 (26.6)	12 (0.0)

※ '16년부터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16년부터 일학습병행 현황 포함
※ 주 : ( )안은 구성비(%)임

○ 업종별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

연도	사업장	지원금액	계	농·임·어·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운수,창고·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전문,과학 및 기술·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예술, 여가 관련·기타	분류 불능
'13	299,275	321,304	3,284,401 (100.0)	3,212 (0.1)	1,059,712 (32.3)	37,212 (1.1)	95,395 (2.9)	262,006 (8.0)	240,353 (7.3)	351,326 (10.7)	222,012 (6.8)	40,627 (1.2)	972,546 (29.6)	- -
'14	286,580	349,786	3,101,972 (100.0)	3,097 (0.1)	962,162 (31.0)	29,845 (1.0)	84,792 (2.7)	251,785 (8.1)	174,377 (5.6)	347,319 (11.2)	227,197 (7.3)	36,022 (1.2)	985,371 (31.8)	5 (0.0)
'15	217,427	324,156	2,495,792 (100.0)	3,174 (0.1)	820,771 (32.9)	48,931 (2.0)	85,041 (3.4)	248,463 (10.0)	148,816 (6.0)	342,536 (13.7)	241,073 (9.7)	9,091 (0.4)	547,703 (21.9)	193 (0.0)
'16	125,922	494,026	2,866,904 (100.0)	3,052 (0.1)	975,098 (34.0)	41,592 (1.5)	94,106 (3.3)	265,016 (9.2)	131,619 (4.6)	403,876 (14.1)	292,053 (10.2)	14,100 (0.5)	646,391 (22.5)	1 (0.0)
'17	153,654	562,345	3,439,373 (100.0)	3,076 (0.1)	974,965 (28.3)	54,562 (1.6)	141,890 (4.1)	331,525 (9.6)	194,691 (5.7)	524,777 (15.3)	452,144 (13.1)	10,775 (0.3)	750,958 (21.8)	10 (0.0)
'18	157,161	566,038	4,583,150 (100.0)	10,853 (0.2)	1,229,998 (26.8)	67,438 (1.5)	170,320 (3.7)	599,104 (13.1)	252,900 (5.5)	477,793 (10.4)	704,066 (15.4)	13,712 (0.3)	1,056,961 (23.1)	5 (0.0)
'19	139,369	453,957	3,440,629 (100.0)	3,295 (0.1)	865,013 (25.1)	49,749 (1.4)	132,988 (3.9)	419,899 (12.2)	191,084 (5.6)	366,256 (10.6)	524,293 (15.2)	13,533 (0.4)	874,507 (25.4)	12 (0.0)

※ '16년부터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16년부터 일학습병행 현황 포함
※ 주 : ( )안은 구성비(%)임, '17.7.1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차로 개정됨에 따라 10차 업종코드 적용

3) 유급휴가훈련지원

○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

연 도	사업장	지원금액	훈 련 건 수			
			계	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미만	1,000인 이상
'13	4,517	9,472	10,463 (100)	7,347 (70.2)	2,133 (20.4)	983 (9.4)
'14	5,007	9,768	10,340 (100.0)	6,550 (63.3)	2,860 (27.7)	930 (9.0)
'15	4,039	9,345	10,057 (100.0)	6,316 (62.8)	3,112 (30.9)	629 (6.3)
'16	3,215	9,998	9,499 (100.0)	6,569 (69.2)	1,970 (20.7)	960 (10.1)
'17	5,451	14,891	18,861 (100.0)	14,353 (76.1)	3,643 (19.3)	865 (4.6)
'18	5,285	19,272	19,676 (100.0)	16,116 (81.9)	2,538 (12.9)	1,022 (5.2)
'19	5,285	23,751	24,333 (100.0)	18,485 (76.0)	4,818 (19.8)	1,030 (4.2)

※ '16년부터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일부 데이터 변동 있음
※ 주 : ( )안은 구성비(%)임

○ 업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

연도	사업장	지원금액	계	농·임·어·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운수,창고·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전문,과학 및기술·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예술, 여가 관련·기타
'13	4,516	9,472	10,463 (100.0)	29 (0.3)	3,907 (37.3)	48 (0.5)	2,772 (26.5)	1,003 (9.6)	200 (1.9)	1,985 (19.0)	437 (4.2)	18 (0.2)	64 (0.6)
'14	5,007	9,768	10,340 (100.0)	1 (0.0)	4,495 (43.5)	37 (0.4)	2,204 (21.3)	835 (8.1)	225 (2.2)	1,951 (18.9)	501 (4.8)	3 (0.0)	88 (0.9)
'15	4,039	9,345	10,057 (100.0)	1 (0.0)	4,447 (44.2)	26 (0.3)	2,417 (24.0)	993 (9.9)	81 (0.8)	1,706 (17.0)	336 (3.3)	- -	50 (0.5)
'16	3,215	9,998	9,499 (100.0)	- -	3,108 (32.7)	71 (0.7)	2,714 (28.6)	764 (8.0)	162 (1.7)	1,828 (19.2)	762 (8.0)	24 (0.3)	66 (0.7)
'17	5,451	14,891	18,861 (100.0)	1 (0.0)	5,301 (28.1)	90 (0.5)	6,868 (36.4)	996 (5.3)	160 (0.8)	4,061 (21.5)	1,003 (5.3)	26 (0.1)	355 (1.9)
'18	5,285	19,272	19,676 (100.0)	1 (0.0)	6,315 (32.1)	111 (0.6)	5,973 (30.4)	1,065 (5.4)	175 (0.9)	4,858 (24.7)	1,042 (5.3)	23 (0.1)	113 (0.6)
'19	5,285	23,751	24,333 (100.0)	- -	8,168 (33.6)	97 (0.4)	5,408 (22.2)	1,028 (4.2)	413 (1.7)	8,156 (33.5)	929 (3.8)	6 (0.0)	128 (0.5)

※ '16년부터 사업장수는 비용사업장수임
※ EIS DW, 통계 모델 및 데이터가 정비됨에 따라 일부 데이터 변동 있음
※ 주 : ( )안은 구성비(%)임, '17.7.1일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0차로 개정됨에 따라 10차 업종코드 적용

4)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훈 련 건 수	162,992	164,963	212,119	209,361	24,806
지 원 액	28,635	30,486	54,188	57,746	7,034

※ '14.4.15에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으로 통합

5)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훈 련 건 수	129,451	64,535	50,576	34,111	3,069
지 원 액	31,144	18,785	17,959	12,373	1,080

※ '07년부터 사업시행, '14.4.15에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으로 통합

6)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훈 련 건 수	44,124	302,418	291,723	261,934	311,401	505,991
지 원 액	11,702	79,862	79,457	82,015	95,137	154,998

※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은 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사업임('14.4.15)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지 원 자 수	32,727	37,833	43,362	54,402	58,939	60,310
지 원 액	14,242	15,261	20,556	24,445	23,276	22,688

※ '06년부터 사업시행, '16년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사업으로 통합(사업폐지)

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공동훈련센터	168	180	212	213	214	215	209
훈련인원	223,186	209,117	210,338	251,090	261,730	252,159	186,662
참여중소기업	99,040	105,318	109,544	126,395	127,850	124,230	100,219
지원금액	146,183	165,633	211,085	252,038	231,264	236,402	155,500

※ 컨소시엄 사업주·근로자 만족도 : 91.2% ('04. 직능원)
※ 해외성공사례소개 ('04 Employment Outlook, '05.3 OECD 평생학습국제회의, 스웨덴)
※ 공동훈련센터(舊 운영기관)는 선정연도 기준('12년말 2차 신규 선정 13개 공동훈련센터 포함), 참여중소기업은 훈련과정별 누적기준임, 일학습병행은 제외

9) 근로자학자금 대부

(단위 : 개소, 건, 백만원)

연도	대부금액	확정인원	1인당 평균 대부비	확정인원유형별								
				개인별		기업별		성별		학교별		
				이공계	기타	중소기업	대규모기업	남	여	2년제	4년제	기타
'08	87,755	25,507	3,440	9,500 (37.2)	16,007 (62.8)	14,557 (57.1)	10,950 (42.9)	14,377 (56.4)	11,130 (43.6)	19,274 (75.6)	6,232 (34.4)	1 (0.0)
'09	99,076	29,424	3,367	11,198 (38.1)	18,226 (61.9)	18,797 (63.9)	10,627 (36.1)	16,714 (56.8)	12,710 (43.2)	22,118 (75.2)	7,305 (24.8)	1 (0.0)
'10	90,769	25,394	3,574	9,995 (39.4)	15,399 (60.6)	14,696 (57.9)	10,698 (42.1)	14,683 (57.8)	10,711 (42.2)	19,665 (77.4)	5,729 (22.6)	-
'11	79,786	21,507	3,710	9,104 (42.3)	12,403 (57.7)	7,899 (74.3)	2,729 (25.7)	12,365 (57.5)	9,142 (42.5)	16,843 (78.3)	4,664 (21.7)	-
'12	69,166	17,720	3,903	7,214 (40.7)	10,506 (59.3)	6,977 (39.4)	10,743 (60.6)	10,289 (58.1)	7,431 (41.9)	14,488 (81.8)	3,232 (18.2)	-
'13	62,375	15,562	4,008	6,141 (39.5)	9,421 (60.5)	11,549 (74.2)	4,013 (25.8)	8,883 (57.1)	6,679 (42.9)	13,197 (84.8)	2,365 (15.2)	-

※ '13년 종료사업

10)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계 획		실 적	
	기관수	대부금액	기관수	대부금액
'13	8	6,270	11	6,262
'14	10	11,643	12	11,196
'15	83	25,000	29	12,201
'16	81	23,750	14	11,062
'17	34	15,260	20	13,075
'18	27	11,697	17	8,670

※ '19년 사업폐지

다. 실업자훈련

1) 총 괄

(단위 : 명)

훈 련 종 류	'13	'14	'15	'16	'17	'18	'19
총 계	450,352	284,438	272,295	272,793	291,066	277,392	243,103
○ 신규실업자훈련	98,729	51,477	39,793	36,133	37,589	37,285	31,523
○ 전직실업자훈련	312,793	191,043	157,847	177,276	181,655	174,161	151,060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8,069	41,142	74,207	58,947	71,450	65,663	60,262
○ 지역실업자훈련	761	776	448	437	372	283	258

※ 각 해당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지역실업자훈련은 '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 자료산출기준: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2) 신규실업자훈련

(단위 : 명)

구 분	실 시 인 원	훈련중 인 원	수 료 인 원	순중도탈락 인 원 (조기취업인원)
’13	98,729	13,206	75,298	9,263 (962)
’14	51,477	8,059	38,344	4,463 (611)
’15	39,793	6,245	29,467	3,575 (506)
’16	36,133	5,449	27,122	3,059 (503)
’17	37,589	6,160	28,112	2,784 (533)
’18	37,285	4,658	29,983	2,193 (451)
’19	31,523	5,089	24,333	1,813 (288)

※ ( )의 조기취업인원은 훈련 중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인원임
※ 각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3) 전직실업자훈련

(단위 : 명)

구 분	실 시 인 원	훈련중 인 원	수 료 인 원	순중도탈락 인 원 (조기취업인원)
’13	312,793	43,396	238,606	24,754 (6,037)
’14	191,043	31,500	142,716	13,162 (3,665)
’15	157,847	26,389	116,983	10,977 (3,498)
’16	177,276	28,450	132,066	12,341 (4,419)
’17	181,655	31,549	134,208	11,334 (4,564)
’18	174,161	22,085	138,609	9,605 (3,862)
’19	151,060	28,052	113,013	7,350 (2,645)

※ ( )의 조기취업인원은 훈련 중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인원임
※ 각 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단위 : 명)

구 분	실 시 인 원	훈련중 인 원	수 료 인 원	순중도탈락 인 원 (조기취업인원)
'13	38,069	12,635	17,975	4,139 (3,320)
'14	41,142	13,283	20,018	4,191 (3,650)
'15	74,207	19,084	42,730	7,168 (5,225)
'16	58,947	19,487	31,141	4,851 (3,468)
'17	71,450	23,906	36,674	6,550 (4,320)
'18	65,663	18,430	37,962	5,315 (3,956)
'19	60,262	20,659	32,176	4,522 (2,905)

※ ( )의 조기취업인원은 훈련 중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인원임
※ 각 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5) 지역실업자훈련

(단위 : 명)

연도별	실시인원	수료인원
'13	761 (305)	493 (135)
'14	776 (307)	492 (136)
'15	448	345
'16	437	350
'17	372	284
'18	283	233
'19	258	211

※ 실시인원 및 수료인원의 ( )는 농특회계임
※ 연도별 실적은 해당 연도에 훈련이 시작되어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어 실시된 실적을 종합하고 있음
※ '14년까지는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농특+광특), '15년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지특)
※ 자료산출기준 : 훈련시작일자 연인원 기준

6)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및 훈련참여현황

('19.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카드(계좌)발급인원	훈련참여인원	훈련미참여인원
'13. 1. 1～'13.12.31	214,973	200,949 (93.5)	14,024 (6.5)
'14. 1. 1～'14.12.31	149,533	140,439 (93.9)	9,094 (6.1)
'15. 1. 1～'15.12.31	162,928	141,062 (86.6)	21,866 (13.4)
'16. 1. 1～'16.12.31	177,698	155,952 (87.8)	21,746 (12.2)
'17. 1. 1～'17.12.31	183,492	167,868 (91.5)	15,624 (8.5)
'18. 1. 1～'18.12.31	173,290	161,101 (93.0)	12,189 (7.0)
'19. 1. 1～'19.12.31	157,035	143,541 (91.4)	13,494 (8.6)

※ 발급인원 중 훈련참여인원 : 해당시기의 계좌발급자 중 훈련참여자(순인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대상자 중 카드발급신청시 관리되는 국기훈련여부가 'Y' 가 아닌 대상자에 한해 산정함
※ 신청인원산정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정보 입력된 경우에 한해 산정

라. 공공훈련

1) 한국폴리텍대학

○ 전문기술과정 양성실적

(단위 : 명)

연 도 / 훈련기관	'13		'14		'15		'16		'17		'18		'19	
	입학	수료	입학	수료	입학	수료	입학	수료	입학	수료	입학	수료	입학	수료
합 계	7,205	6,145	7,729	6,675	7,733	6,566	8,223	6,807	5,858	4,916	5,455	4,529	4,879	4,029
서울정수	92	74	217	153	210	145	230	166	169	106	199	147	49	34
서울강서	711	550	707	548	731	571	718	568	270	204	234	182	157	124
성남	28	23	81	55	135	93	152	110	59	51	23	16	27	21
제주	221	176	217	197	218	196	231	195	208	189	217	192	217	181
융합기술	-	-	-	-	-	-	86	67	120	47	-	-	-	-
인천	66	52	117	92	117	86	84	64	29	24	29	17	-	-
안성	-	-	-	-	-	-	18	4	-	-	-	-	-	-
남인천	594	524	690	616	634	552	622	516	475	406	485	392	307	251
화성	380	341	446	405	428	374	435	370	319	287	316	280	239	205
춘천	248	207	253	221	251	219	252	211	221	183	217	179	219	183
원주	403	350	436	389	410	356	404	361	297	249	284	228	237	203
강릉	441	382	406	355	414	372	419	368	281	243	282	243	287	252
대전	65	51	93	85	93	81	125	107	134	114	91	70	96	83
청주	21	16	24	19	27	25	51	50	28	27	27	27	25	23
홍성	33	29	60	49	85	65	125	84	49	40	55	42	46	38
충주	357	286	343	290	336	290	332	278	241	201	225	171	217	169
아산	-	-	19	7	25	20	37	21	-	-	16	10	-	-
광주	311	269	316	282	318	282	412	320	252	221	224	205	229	200
김제	32	32	20	20	54	41	78	60	43	40	46	45	15	14
목포	-	-	-	-	-	-	24	23	14	14	16	16	86	62
익산	360	308	340	295	332	295	341	290	223	193	220	184	241	190
순천	454	401	476	418	455	395	455	376	363	309	350	301	333	280
대구	83	72	93	78	92	72	110	96	79	65	79	67	33	30
구미	152	118	148	128	148	122	172	134	115	95	148	127	151	116
달성	310	266	285	253	288	244	286	252	280	252	270	230	238	203
포항	388	327	422	361	414	349	373	315	253	215	244	198	263	210
영주	250	217	185	163	229	187	189	164	171	147	145	124	176	142
동부산	332	293	368	331	369	318	336	296	302	257	263	207	211	179
진주	408	362	378	333	354	307	416	356	353	295	338	292	306	265
창원	423	384	545	493	499	454	471	400	332	287	307	265	308	276
부산	-	-	-	-	-	-	22	17	26	25	21	20	22	17
울산	-	-	-	-	27	22	60	47	25	23	68	38	114	57
바이오	-	-	-	-	-	-	48	46	58	54	-	-	-	-
섬유패션	-	-	-	-	-	-	47	27	42	29	16	14	30	21
신기술	42	35	44	39	40	33	62	48	27	24	-	-	-	-

(단위 : 명)

구 분	계 획 인 원	실 시 인 원	수 료 인 원	취 업 인 원	중도탈락 인 원
’13	6,770	7,205	6,145	4,061	1,060
’14	7,270	7,729	6,675	3,889	1,054
’15	7,280	7,733	6,566	3,418	1,167
’16	8,400	8,223	6,807	3,239	1,416
’17	6,205	5,858	4,916	2,457	942
’18	5,660	5,455	4,529	1,947	926
‘19	4,910	4,879	4,029	2,161	850

※ 연도별 실적은 해당 연도에 훈련이 시작되어 다음 연도 수료까지 실적을 종합하고 있음

○ 다기능기술자 양성실적

(단위 : 명)

연 도 캠퍼스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14,344	14,847	14,759	14,566	14,332	14,085	13,757
서울정수	1,127	1,210	1,216	1,152	1,119	1,121	1,147
서울강서	553	540	598	512	431	425	470
성남	834	914	925	921	795	839	762
제주	-	-	-	-	21	30	35
인천	1,756	1,763	1,765	1,796	1,854	1,740	1,712
안성	607	600	531	406	459	523	584
춘천	351	345	338	305	325	310	257
원주	-	-	-	22	44	43	43
강릉	46	68	61	82	109	111	110
대전	722	847	881	945	875	839	797
청주	680	697	687	794	730	717	677
아산	397	422	429	419	477	475	466
홍성	209	209	229	231	232	204	205
광주	633	735	710	690	714	749	725
김제	497	542	513	502	463	492	467
목포	243	232	246	229	213	196	204
익산	50	46	52	79	97	75	80
대구	976	1,003	956	916	929	873	733
구미	601	538	535	470	466	434	431
영주	-	24	41	33	48	44	42
창원	1,263	1241	1,220	1,250	1,216	1,170	1,219
부산	878	871	881	879	851	854	774
울산	813	843	811	796	763	787	770
바이오	299	333	331	349	348	359	366
섬유패션	332	340	356	317	283	222	209
항공	477	484	447	471	470	453	472

○ 기능장 양성실적

(단위 : 명)

학과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계	250	235	235	280	223	219	246
컴퓨터응용기계 (기계공작)	38	43	44	56	39	20	-
전기	45	44	41	43	37	30	43
전기에너지시스템	-	-	-	23	22	19	-
자동차	122	110	110	133	81	88	96
기계시스템	25	21	22	25	44	62	81
전기에너지시스템	20	17	18	-	-	-	26

※ 한국폴리텍대학 수료인원 기준임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위 : 명)

학과 \ 연도	'13	'14	'15	'16	'17	'18	'19
계	4,899	5,088	5,132	5,451	6,139	6,390	6,028
정규과정	4,322	4,537	4,560	4,390	4,432	4,401	4,432
훈련교사 교직과정	455	461	474	953	1,490	1,744	1,384
훈련교사 향상과정	122	90	98	108	217	245	212

마.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1) STEP 공공 콘텐츠 활용한 훈련 운영 실적

○ 콘텐츠(과정)별 운영 현황

(단위: 과정, 강의개설기준)

연도	계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설	인쇄	환경에너지안전	재료	화학	디자인	교육자연	경영회계사무	직업기초
'14	107	20	11	32	-	1	1	-	1	7	3	31	-
'15	295	84	53	86	2	4	2	-	2	16	7	34	5
'16	360	114	73	97	3	7	2	2	1	16	11	29	5
'17	405	116	77	115	11	9	3	8	4	13	11	33	5
'18	523	133	85	179	10	7	6	11	9	26	11	40	6
'19	731	180	125	264	14	11	7	7	12	34	16	26	35

○ 콘텐츠(과정)별 수료인원

(단위: 명)

연도	계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설	인쇄	환경에너지안전	재료	화학	디자인	교육자연	경영회계사무	직업기초
'14	768	207	73	181	-	6	1	-	3	57	12	228	-
'15	12,434	3,197	1,555	3,494	31	63	38	-	36	475	812	1,735	998
'16	26,099	6,639	3,415	7,515	47	178	86	39	14	1,073	2,348	3,142	1,603
'17	48,129	7,833	4,382	6,599	358	282	59	206	119	444	5,431	16,037	6,379
'18	52,962	14,575	7,692	11,630	291	52	392	621	316	1,476	2,666	7,670	5,581
'19	53,938	11,282	7,645	18,060	363	425	1,680	331	345	1,418	2,424	2,586	7,379

2) STEP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직업훈련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개, 과정, 명)

연도	STEP 마켓 내 콘텐츠 탑재		STEP 온라인 강의실 분양		
	등록기관(개소)	콘텐츠(개)	분양기관(개소)	개설과정(과정)	학습인원(명)
'19	11	1,191	40	787	3,459

※ STEP LMS(서버 독립형), ASP(서버 공유형) 방식의 합산 분양 실적

3) 교육협약 체결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과정, 명)

연도	교육협약 체결현황	중소기업 지원 현황			
		참여기업	운영과정	실시인원	수료인원
’15	179	121	180	4,698	3,543
’16	41	140	184	4,873	4,128
’17	11	162	228	3,695	2,971
’18	16	240	320	12,038	10,541
’19	10	288	364	12,248	10,325

바. 국제협력사업

1) 개 요

사업명	내 용	규 모	사업기간
공여사업	○ 한・수단직업훈련원 설립	3,840,000$	'92～'97
	○ 한・인니직업훈련원 설립	5,200,000$	'86～'94
	○ 인니 M.T.U. 수석자문관 지원사업	280,000$	'95～'97
	○ 한・가봉 기술지원	1,000,000$	'84～'90
	○ 한・이집트 직업훈련지원	600,000$	'93～'95
	○ 개도국 기술연수생 초청훈련	6,182,269$	'75～'99
	○ 중국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설립지원	10,000,000$	'97～'01
	○ 남아공 국립직업기능검정원 지원사업	3,000,000$	'99～'01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지원사업	2,427,000$	'02～'09
	○ 과테말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	717,000$	'04～'05
	○ 한-SICA(중남미통합체제) 협력사업	194,000$	'04～'05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190,000$	'04～'07
	○ 스리랑카 자프나기능대학 기능개선사업	2,330,000$	'04～'07
	○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2,240,000$	'07～'09
	○ 카자흐스탄 국가자격확인검정 시스템 구축사업	846,000$	'06～'08
	○ 캄보디아 국가기술자격시스템 구축사업	856,000$	'07～'09
	○ 콩고 중등학교 교육정보화 등 사업	301,000$	'07～'09
	○ 리비아 건설직업훈련원 지원 용역사업	408,000$	'07～'09
	○ 멕시코・사할린(연해주) 한인후손초청 연수사업	2,278,000$	'06～'09
	○ 한-인니 기술문화협력센터 지원사업	70,000$	'08～'09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594,000$	'08～'11
	○ 과테말라 청소년직훈 자동차정비 훈련원 건립사업	146,000$	'08～'09
	○ 이라크 안바르 직훈역량강화 사업	491,000$	'08～'09
	○ 니카라과 직업훈련원 건립 EDCF 용역사업	1,212,000$	'09～'11
	○ 아프간 바그람PRT 직업훈련건립 사업	14,996,426$	'09～'15
	○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PMC 용역	933,096$	'11～'18
	○ 베트남 국가기술자격검정 역량강화사업	1,232,054$	'11～'13
	○ 니카라과 직훈 EDCF 컨설팅 사업	1,267,039$	'12～'15
	○ 이집트 ITEC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915,755$	'14～'16
	○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센터 건립 컨설팅 사업	870,118$	'15～'20
	○ 베트남 2개직업대학 역량강화 유무상협업사업	943,586$	'16
	○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	1,232,394$	'16～'21
	○ 라오스 한라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423,874$	'17～'20
수원사업	○ 한・독기술협력	64,120,000DM	'70～'96
	- 한・독부산직업훈련원 설립	16,000,000DM	'70～'75
	- 직업훈련 자문	34,000,000DM	'76～'93
	- 창원기능대학	13,000,000DM	'79～'90
	- 신규 한・독협력사업	1,120,000DM	'94～'96
	○ UNDP중앙직업훈련원	2,620,000$	'68～'81
	○ UNDP서울국제직업훈련원	570,000$	'90～'97
	○ 정수직업훈련원(미국)	250,000$	'76
	○ 한・일대전직업훈련원 설립	2,000,000$	'76～'88
	○ 한・백창원직업훈련원 설립	5,460,706$	'76～'90

2) 개도국 기술연수생 초청훈련[1)]

(단위 : 명)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338	215	274	372	351	335	451	339	351	389	365	480	523	451	492	596	108	92	95
베트남	33	22	12	11	51	83	108	7	25	11	14	144	26	43	35	100	14	19	8
인도네시아	20	20	12	4	25	7	30	6	24	14	8	-	7	4	-	35	2	2	-
필리핀	13	26	11	34	8	9	11	6	10	-	3	-	5	2	-	-	2	3	-
말레이시아	3	5	7	5	7	5	2	4	16	9	6	34	2	3	15	-	7	2	-
태국	13	10	10	5	14	7	8	102	84	66	71	47	44	-	27	-	6	3	-
중국	12	13	5	5	12	17	20	4	4	12	4	-	2	2	-	-	-	-	-
파푸아뉴기니	7	2	1	5	-	-	-	-	-	-	3	-	-	1	-	-	-	-	-
기타[2)]	237	117	216	303	234	207	272	210	188	277	256	255	437	396	415	461	77	63	87

※ 1.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중심

2. 기타국(82개국) :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니제르, 도미니카, 라오스,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소토, 리비아,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탄, 브루나이, 빈센트, 멕시코,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레이트,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오만,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인디아, 일본, 자메이카,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차드,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케냐, 콩고, 키리바시, 탄자니아, 통가, 투발루, 트리니다 드 토바코, 파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피지, 헝가리

3.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소계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대학	한국장애인공단	관계부처 등	소계	지정직업훈련시설(훈련법인 포함)	사업주단체등시설	기타
’09	6,656	92	38	8	1	5	40	6,564	1,027	1,545	3,992
’10	6,977	81	35	-	1	5	40	6,896	959	1,610	4,327
’11	7,094	80	34	-	1	5	40	7,014	929	1,769	4,316
’12	6,471	81	34	-	1	5	41	6,390	851	1,888	3,651
’13	7,813	82	34	-	1	5	42	7,731	861	2,349	4,521
’14	8,304	82	34	-	1	5	42	8,222	852	2,830	4,540
’15	7,812	82	34	-	1	5	42	7,730	813	3,277	3,640
’16	6,885	85	37	-	1	5	42	6,800	789	3,123	2,888
’17	7,673	85	37	-	1	5	42	7,588	761	3,438	3,389
’18	7,313	85	37	-	1	5	42	7,228	748	3,450	3,030
’19	6,718	85	37	-	1	5	42	6,633	730	2,924	2,979

※ 대한상공회의소는 ’10. 9. 1일자로 민간훈련시설로 변경(고용노동부 지정시설에 포함)
※ ’18년 12월 기준 관계부처 현황: 법무부(35), 환경부(1), 서울특별시(4), 경기도(1), 부산광역시(1)
※ 사업주단체등시설에는 자체, 위탁, 자체+위탁 포함
※ 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4. 자격제도

가. 우리나라 자격 현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현황

(2019. 12월 시행기준)

구 분	종목수	직무분야	검 정 수 탁 기 관	비 고
현 황	54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현황

(2019. 12월 기준)

구 분	종목수	검 정 수 탁 기 관	비 고
현 황	178(직종)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부처·청·위원회에서 위탁)	-

○ 민간자격 현황

(2019. 12월 기준)

구 분	종목수	검 정 시 행 기 관	비 고
등록민간자격	36,859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외국어능력평가원 등 민간기관	
공인민간자격	97 (직종)	대한상공회의소, 삼성SDS, 한국생산성본부 등 58개 민간기관	

○ 사업내자격 현황(고용노동부인정)

(2019. 12월 기준)

구 분	기관수	자격수	비 고
현 황	LG디스플레이㈜ 등 85개 기업	Digital Consultant 등 185종목	

나. 주무부처별 자격종목 현황

(2019. 12월 시행종목 기준)

등 급 / 부 처	총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분야			
							1급	2급	3급	단일
총 계	542(13)	84(2)	28	116(3)	121(3)	161(3)	10	10	3	9(2)
1. 식품의약품안전처	21(2)	2	2	1(1)	6	10(1)	-	-	-	-
2. 통계청	2	-	-	-	-	-	1	1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	22	1	15	13	12	-	-	-	1
4. 국방부	3	-	-	1	1	1	-	-	-	-
5. 행정안전부	4	-	-	2	1	1	-	-	-	-
6. 경찰청	6	1	-	2	2	1	-	-	-	-
7. 소방청	10	1	1	3	4	1	-	-	-	-
8. 문화체육관광부	9(2)	-	-	-	1	2	1	1	-	4(2)
9. 농림축산식품부	15(1)	2	-	5(1)	4	4	-	-	-	-
10. 농촌진흥청	17	3	-	5	4	5	-	-	-	-
11. 산림청	10	1	-	3	2	4	-	-	-	-
12. 산업통상자원부	91(4)	11	5	27	23(3)	23(1)	1	1	-	-
13. 보건복지부	14	-	2	1	1	7	1	1	-	1
14. 환경부	23(2)	7(1)	-	9(1)	6	1	-	-	-	-
15. 기상청	3	1	-	2	-	-	-	-	-	-
16. 고용노동부	111	6	11	13	24	41	5	5	3	3
17. 국토교통부	116	23	5	20	24	44	-	-	-	-
18. 해양수산부	21(2)	4(1)	1	7	5	4(1)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2	-	-	-	-	-	1	1	-	-

* ( )는 공동소관 종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 **토양환경기술사·기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수산제조기술사·기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육처리기능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국토교통부(항만구역 외), 해양수산부(항만구역 내)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 운용기능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식육가공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직무분야별 자격종목 현황

(2019. 12월 시행종목 기준)

등급별 / 직무분야별	총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1급	2급	3급	단일
총 계	543	84	28	117	121	161	10	10	3	9
1. 사업관리	-	-	-	-	-	-	-	-	-	-
2. 경영・회계・사무	25	3	-	2	2	-	7	7	3	1
3. 금융・보험	-	-	-	-	-	-	-	-	-	-
4.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	-	-	-	-	-	-	-	-	-
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	-	-	-	-	-	-	-
6. 보건・의료	3	-	-	-	-	-	1	1	-	1
7. 사회복지·종교	2	-	-	-	-	-	1	1	-	-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3	1	-	4	4	4	-	-	-	-
9. 운전・운송	2	-	-	-	1	1	-	-	-	-
10. 영업・판매	4	-	-	-	-	-	1	1	-	2
11. 경비・청소	-	-	-	-	-	-	-	-	-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8	-	2	-	-	5	-	-	-	1
13. 음식서비스	12	-	1	-	5	6	-	-	-	-
14. 건 설	99	21	4	17	18	39	-	-	-	-
15. 광업자원	11	3	-	3	2	3	-	-	-	-
16. 기 계	79	10	5	16	19	29	-	-	-	-
17. 재 료	38	6	8	2	6	16	-	-	-	-
18. 화 학	12	1	1	5	3	2	-	-	-	-
19. 섬유・의복	17	2	-	2	6	7	-	-	-	-
20. 전기・전자	40	7	2	13	10	8	-	-	-	-
21. 정보통신	30	3	1	7	8	7	-	-	-	4
22. 식품가공	11	2	1	3	1	4	-	-	-	-
23. 인쇄・목재・가구・공예	19	-	1	1	6	11	-	-	-	-
24. 농림어업	39	7	-	11	10	11	-	-	-	-
25. 안전관리	42	9	1	16	11	5	-	-	-	-
26. 환경・에너지	37	9	1	15	9	3	-	-	-	-

※ **'26.환경·에너지'** 3종목(원자력안전기술원), **'8.문화·예술·디자인·방송'** 2종목(영화진흥위원회), **'2.경영·회계·사무**(12), **10.영업·판매**(3)**'** 15종목(상공회의소), **'21.정보통신'** 3종목(한국콘텐츠진흥원), **'21.정보통신'** 16종목(한국전파진흥원), 2종목(한국인터넷진흥원), **'15.광업자원'** 7종목(한국광해관리공단), 나머지 494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

○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소 계		3,376,556	624,184	3,378,603	647,641	3,421,545	653,028	3,486,747	665,900	3,904,434	751,734
기술·기능분야	기 술 사	18,986	1,079	20,051	1,350	21,271	1,624	22,500	1,919	25,103	2,227
	기 능 장	35,919	3,677	40,682	6,589	42,208	6,336	38,041	4,862	40,892	4,365
	기 사	471,530	73,627	514,235	82,070	541,670	83,274	555,833	89,380	649,393	114,955
	산업기사	311,477	47,800	311,730	47,488	315,696	47,739	312,763	49,993	349,711	56,105
	기능사	1,678,766	352,921	1,716,445	372,375	1,706,929	381,031	1,668,426	380,198	1,778,065	399,156
서비스 분야		859,878	145,080	775,460	137,769	793,771	133,024	889,184	139,548	1,061,270	174,926

※ 응시자는 필기응시자와 실기응시자를 합친 인원수임
서비스분야는 '10년이전 기초사무·전문사무로 분류, '11년이후 1·2·3급, 단일종목으로 분류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평가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내부평가	외부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자
소 계	3,624	2,412	1,640	6,165	4,789	3,238	7,553	6,245	4,280
기사	11	3	1	31	31	20	140	104	78
산업기사	1,380	797	478	2,385	1,778	1,076	3,535	2,906	1,730
기능사	2,194	1,583	1,135	3,335	2,592	1,875	3,378	2,718	2,140
서비스	39	29	26	414	388	267	500	517	332

마. 민간자격 공인 현황

(2019. 12월 기준)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식품의약품 안전처 (1)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9.01.01～23.12.31
금융 위원회 (11)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협회	18.02.15～23.02.14
	신용위험분석사(CRA)	-	(사)한국금융연수원	18.02.15～21.02.14
	신용분석사	-		20.01.20～24.12.31
	여신심사역	-		20.01.20～24.12.31
	자산관리사(FP)	-		16.01.05～21.01.04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인	20.04.01～23.03.31
	회계관리	1,2급		20.04.01～23.03.31
	AT(Accounting Technician)	TAT1급,TAT2급,FAT1급,FAT2급	한국공인회계사회	17.12.01～22.11.30
	개인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16.01.01～20.12.31
	기업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16.01.01～20.12.31
	신용상담사	-	신용회복위원회	17.01.01～21.12.31
기획 재정부 (8)	국제금융역	-	(사)한국금융연수원	18.01.20～21.01.19
	외환전문역	Ⅰ, Ⅱ종		15.12.01～20.11.30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급,1~3급	한국경제신문	18.11.10～21.11.09
	매경TEST	최우수, 우수	매일경제신문사	18.12.22～21.12.21
	세무회계	1 ~ 3급	한국세무사회	18.1.1.～ 22.12.31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 주니어TESAT(테샛) (J-TESAT)	S, 1, 2, 3	한국경제신문	18.12.13～21.12.12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TEST」	A+, A, B	매일경제신문사	18.12.13～21.12.12
	원가분석사	-	(사)한국원가관리협회	20.01.01～20.12.31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21)	e-Test Professionals	1,2,3,4급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19.02.17～23.02.16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A,B급	(주)피씨티	19.02.17～22.02.16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1・2급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02.17～22.02.16
	리눅스마스터	1,2급		19.01.15～23.01.14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초, 중, 고급		17.02.17～21.02.16
	네트워크관리사	2급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20.01.20～24.01.19
	PC정비사	1,2급		19.01.15.～22.01.14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B,C급	한국생산성본부	16.01.20～21.01.19
	PC Master(정비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20.02.23～23.02.22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재)한국데이터진흥원	20.01.01～23.12.31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SQL	전문가, 개발자	(재)한국데이터진흥원	18.01.01～22.12.31
	ERP물류정보관리사	1,2급	한국생산성본부	18.09.30～22.12.31.
	ERP생산정보관리사			
	ERP인사정보관리사			
	ERP회계정보관리사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 전문가(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	17.09.30～21.09.29
	RFID기술자격검정	RFID-GL, RFID-SL	(사)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19.01.01～22.12.31
	IEQ(인터넷윤리자격)	지도사	한국생산성본부	16.01.01～20.12.31
	상공회의소 IT +	레벨 1～5	대한상공회의소	19.01.01～21.12.31
	데이터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재)한국데이터진흥원	18.01.01～22.12.31
교육부 (20)	한자능력급수	특급,특급Ⅱ	(사)한국어문회	19.11.17～21.12.31
		1,2,3,3Ⅱ급		19.11.17～21.12.31
	TEPS(영어능력검정)	1+,1,2,2+급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20.02.10～22.12.31
	한자실력급수	사범,1급,2급,3급	(사)한자교육진흥회	20.01.01～21.12.31
	한자·한문지도사	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1급, 한자·한문2급, 한자·한문3급		20.01.01～21.12.31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지도사2급,1급.훈장2급,1급,특급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19.01.07～20.12.31
		아동지도사급		20.01.01～21.12.31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20.01.01～21.12.31
	한국영어검정	1,2,2A급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20.01.01～21.12.31
	한국한자검정	1,2,3,준3급		
	FLEX 중국어(듣기/읽기)	1(A~C)급, 2(A~C)급, 3(A~C)급(9개등급)	대한상공회의소	20.01.01～21.12.31
	FLEX 일본어(듣기/읽기)			
	FLEX 독일어(듣기/읽기)			20.01.01～21.12.31
	FLEX 스페인어(듣기/읽기)			20.01.01～22.12.31
	FLEX 프랑스어(듣기/읽기)			20.01.01～22.12.31
	FLEX 영어(듣기/읽기)			20.01.01～21.12.31
	FLEX러시아어(듣기/읽기)			20.01.01～21.12.31
	상공회의소 한자	1,2,3급		18.11.24～20.12.31
	YBM商務漢檢	1,2,3급	(주)와이비엠	18.09.21～20.12.31
	한자어능력	1,2,3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20.01.01～21.12.31
	브레인트레이너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20.01.01～21.12.31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한자급수인증	장원	한국교육문화회	18.11.24～19.12.31
		1,2,3 급		19.01.07～19.12.31
	영어회화평가시험 ESPT	general 1급, general 2급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19.02.10.～19.12.31
	실용수학	1,2,3급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19.01.01～20.12.31
법무부 (1)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사)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17.12.17～22.12.16
행정 안전부 (3)	옥외광고사	2급	한국옥외광고협회	20.02.06～22.02.05
	행정관리사	1,2,3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18.02.01～21.01.31
	정보시스템감리사	-	(사)한국정보화진흥원	16.02.17～21.02.16
문화체육 관광부 (5)	실천예절지도사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9.02.17～22.02.16
	종이접기	마스터	(사)한국종이접기협회	20.01.01～24.12.3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 2, 준2, 3, 준3급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20.01.01～21.12.31
	KBS한국어능력시험	1,2+,2-,3+,3-,4+급	KBS한국방송공사	19.01.23～21.01.22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1.13～23.01.12
	국어능력인증시험	1,2,3,4,5급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18.01.01～19.12.31
농림축산 식품부 (2)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한국농어촌공사	19.01.01～23.12.31
산업통상 자원부 (8)	무역영어	1,2,3급	대한상공회의소	19.01.01～22.12.31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20.01.01～22.12.31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16.09.30～21.09.29
	CS Leaders(관리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18.01.07～21.01.06
	GTQ(그래픽기술자격)	1,2급	한국생산성본부	20.01.01～24.12.31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15.11.29～20.11.28
	SMAT(서비스경영자격)	1급, 2급, 3급	한국생산성본부	19.01.01～21.12.31
	산업보안관리사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9.01.01～21.12.31
보건 복지부 (3)	점역 교정사	1,2,3급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7.04.01～22.03.31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17.02.01～22.01.31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16.02.20～21.02.19
고용 노동부 (1)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한국세무사회	17.03.16～21.12.31
국토 교통부 (3)	자동차진단평가사	1~2급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19.11.24～22.11.23
	주거복지사	-	(사)한국주거학회	19.01.01～21.12.31
	실내디자이너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20.01.01～22.12.31
관세청 (1)	원산지관리사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9.01.01～21.12.31

소관 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공인유효기간
경찰청 (3)	열쇠관리사	1급,2급	(사)한국열쇠협회	20.01.03～23.01.0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공단	18.04.06～21.04.05
	신변보호사	-	(사)한국경비협회	16.01.01～20.12.31
산림청 (3)	수목보호기술자격	기술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20.01.15～25.01.14
	분재관리사	전문관리사, 1급, 2급	(사)한국분재조합	19.02.01～24.01.31.
	조경수조성관리사	2~3급	(사)한국조경수협회	15.11.16～20.11.15
특허청 (1)	지식재산능력시험	1급, 2급, 3급, 4급	한국발명진흥회	18.01.01～22.12.31
17개 부처청	97개 종목		58개 기관	

5. 국가직무능력표준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현황

1) 국가직무능력표준

(2019. 12월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24개	80개	257개	1,022개	240	288	269	50	79	50	403	50	191	50	103	20	138
01. 사업관리	1	2	5	0	0	0	5	0	0	1	0	2	0	0	0	0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01.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3. 산학협력관리													
		02. 해외관리	01. 해외법인설립관리													
			02. 해외취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4	11	27	11	6	8	2	7	0	11	0	4	0	3	0	6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01. 경영기획													
			02. 경영평가													
		02. 홍보·광고	01. PR (구. 기업홍보)											★		
			02. 광고 (구. PR/광고)											★		
		03. 마케팅	01. 마케팅전략기획													
			02. 고객관리													
			03. 통계조사													
	02. 총무·인사	01. 총무	01. 총무													
			02. 자산관리													
			03. 비상기획													
		02. 인사·조직	01. 인사													
			02. 노무관리													
		03. 일반사무	01. 비서													
			02. 사무행정													
	03. 재무·회계	01. 재무	01. 예산													
			02. 자금													
		02. 회계	01. 회계·감사													
			02. 세무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01. 구매조달													
			02. 자재관리													
			03. 공정관리													
			04. SCM													
		02. 품질관리	01. QM/QC관리													
		03. 무역·유통관리	01. 물류관리													
			02. 수출입관리													
			03. 원산지관리													
			04. 유통관리													
03. 금융·보험	2	9	36	0	35	0	0	6	0	19	1	0	0	0	0	4
	01. 금융	01. 금융영업	01. 창구사무													
			02. 기업영업													
			03. PB영업													
			04. 카드영업													
			05. 여신전문금융영업													
		02. 금융상품개발	01. 여수신상품개발													
			02. 투자상품개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3. 연금상품개발													
			04. 카드상품개발													
		03. 신용분석	01. 개인신용분석													
			02. 기업신용분석													
			03. 여신심사													
		04. 자산운용	01. 펀드운용													
			02. 주식·채권운용													
			03. 파생상품운용													
			04. 대체투자													
			05. 신탁자산관리													
		05. 금융영업지원	01. 결제													
			02. 채권추심													
			03. 리스크관리													
		06. 증권・외환	01. 증권거래업무													
			02. 외환·파생업무													
			03. 인수업무													
			04. 증권상장업무													
			05.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06. 무역금융업무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01. 보험동향분석													
			02. 보험상품개발													
			03. 보험계리													
		02. 보험영업·계약	01. 보험모집													
			02. 보험계약심사													
			03. 보험계약·보전													
			04. 위험관리													
		03. 손해사정	01. 재물손해사정													
			02. 차량손해사정													
			03. 신체손해사정													
04. 교육·자연·사회과학	2	3	8	0	6	2	0	0	0	8	0	0	0	1	0	0
	02. 평생교육	02. 평생교육운영	01.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0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상담·교수													
	03. 직업교육	01. 직업교육	01. 경력지도													
			02. 기업교육													
			03. 직무분석													
		02. 이러닝	01. 이러닝시스템개발													
			02. 이러닝콘텐츠개발													
			03. 이러닝과정(process)운영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	4	16	7	5	0	0	0	1	7	3	2	0	0	0	0
	01. 법률	02. 지식재산관리	01.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거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4. 특허엔지니어링													
	02. 소방방재	01. 소방	01. 소방시설설계·감리													
			02. 소방시설공사													
			03. 구조구급													
			04. 소방안전관리													
			05. 위험물운송·운반관리													
			06. 위험물안전관리													
			07. 화재감식평가													
		02. 방재	01. 방재시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개발	'14년 보완개발	'15년 개발	'15년 개선	'16년 개발	'16년 개선	'17년 개발	'17년 개선	'18년 개발	'18년 개선	'19년 개발	'19년 개선
			02. 기업재난관리													
			03. 방재안전대책관리													
		03. 스마트재난관리	01. 스마트재난위험예측													
			02. 스마트재난관리설계													
06. 보건·의료	1	2	11	9	2	0	0	1	0	2	0	5	0	0	0	2
	01. 보건	01. 의료기술지원	01. 의료기관관리													
			08. 요양지원													
			09. 의지보조기 제작·관리 (구. 의지보조기)													★
			10. 청각관리													
			13. 임상심리													
			14. 의료정보관리													
		02. 보건지원	01. 병원행정													
			02. 병원안내													
			03. 보건교육													
			04. 의료시설위생관리													
			05. 지역사회위생관리													
07. 사회복지·종교	3	6	17	5	5	3	3	0	0	6	1	5	0	2	0	2
	01. 사회복지	01. 사회복지정책	01. 지역사회복지개발													
			02. 사회복지조직운영 (구. 사회복지기관운영)									★				
			03. 공공복지													
		02. 사회복지서비스	01.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02. 일상생활기능지원													
			03. 사회복지면담													
			04. 사회복지사례관리													
	02. 상담	01. 직업상담서비스	01. 직업상담													
			02. 취업알선													
			03. 전직지원													
		02. 청소년지도	01. 청소년활동													
			02. 청소년상담복지													
			03. 진로지원													
		03. 심리상담	01. 심리상담													
	03. 보육	01. 보육	01. 보육													
			02. 산후육아지원													
			03. 아이돌봄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	9	61	20	22	2	10	9	2	25	3	13	2	3	0	5
	01. 문화·예술	01. 문화예술경영	01. 문화·예술기획													
			02. 문화·예술행정													
			03. 문화·예술경영													
			04. 문헌정보관리													
		02. 실용예술	01. 실용음악													
			02. 실용사진													
		03. 공연예술	01. 무대연출													
			02. 무대조명													
			03. 무대기계													
			04. 무대음향													
			05. 무대미술													
			06. 무대감독													
			07. 무대기술감독													
			08. 무대장치 · 소품													
			09. 무대의상													
			10. 무대영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11. 하우스매니징													
		04. 문화재관리	01. 학예													
			02. 문화재보수													
			03. 문화재보존													
	02. 디자인	01. 디자인	01. 시각디자인													
			02. 제품디자인													
			03. 환경디자인													
			04. 디지털디자인													
			05. 텍스타일디자인													
			06. 서비스경험디자인													
			07. 실내디자인													
			08. 색채디자인													
			09. 전시디자인													
			10. 3D프린팅디자인													
			11. 패키지디자인													
			12. VR콘텐츠디자인													
	03. 문화콘텐츠	01. 문화콘텐츠기획	01. 문화콘텐츠기획													
		02. 문화콘텐츠제작	01. 방송콘텐츠제작													
			02. 영화콘텐츠제작													
			03. 음악콘텐츠제작													
			04. 광고콘텐츠제작													
			05. 게임콘텐츠제작													
			06.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07. 만화콘텐츠제작													
			08. 캐릭터콘텐츠제작 (구. 캐릭터제작)											★		
			09.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10. 영사													
			11. 완구콘텐츠제작													
			12. 드론콘텐츠제작													
		03.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01. 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													
			02. 영화콘텐츠유통·서비스													
			03. 음악콘텐츠유통·서비스													
			04. 광고콘텐츠유통·서비스													
			05. 게임콘텐츠유통·서비스													
			06. 애니메이션콘텐츠 유통·서비스													
			07. 만화콘텐츠유통·서비스													
			08. 캐릭터유통·서비스													
			09. 스마트문화앱콘텐츠 유통·서비스													
		04. 영상제작	01. 영상연출													
			02. 영상촬영													
			03. 영상조명													
			04. 영상음향제작													
			05. 영상그래픽													
			06. 영상편집													
			07. 영상미술													
	4	8	31	8	16	0	2	0	4	14	0	2	1	0	0	5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여객운송													
			02. 화물운송													
			03. 수송포장													
	02. 철도운전·운송	01. 철도운전운영	01. 철도관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2. 열차운용DIA													
			03. 철도운전													
			04. 기지내차량운전													
		02. 철도시설유지보수	01. 철도선로시설물유지보수													
			02. 정비기지시설물유지보수													
			03. 역시설물유지보수													
			04. 철도정보통신시설물 유지보수													
	03. 선박운전·운송	01. 선박운항	01. 항해													
			02. 선박기관운전													
			03. 선박통신													
			04. 수면비행선박조종													
			05. 수상레저기구조종													
			06. 해상관제													
			07. 선박갑판관리													
		02. 검수·검량	01. 검수·검정													
	04. 항공운전·운송	01. 항공기조종운송	01. 경량항공기조종													
			02. 자가용항공기조종													
			03. 사업용항공기조종													
			04. 운송용항공기조종													
			05. 소형무인기운용·조종													
		02. 항공운항	01. 항공교통관제													
			02. 운항관리													
			03. 항공안전													
			04. 항공보안													
			05. 항공여객운송서비스													
			06. 항공화물운송서비스													
		03. 항행안전시설	01. 항행안전무선시설운영관리													
10. 영업판매	3	8	18	1	16	0	0	0	1	9	0	2	0	0	0	0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01. 일반영업													
			02. 해외영업													
	02. 부동산	01. 부동산컨설팅	01. 부동산개발													
			02. 부동산분양													
			03. 부동산경·공매													
		02. 부동산관리	01. 주택관리													
			02. 상업용건물관리													
			03. 부동산자산관리													
		03. 부동산중개	01. 부동산중개													
			02. 부동산정보제공													
		04. 감정평가	01. 부동산·동산감정평가													
			02. 기업가치평가													
			03.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03. 판매	01. e-비지니스	01. 통신판매													
			02. 전자상거래													
		02. 일반판매	01. 매장판매													
			02. 방문판매													
		03. 상품중개·경매	01. 농축수산물경매													
11. 경비·청소	2	2	4	0	2	0	2	0	0	2	0	0	0	0	0	0
	01. 경비	01. 경비·경호	01. 보안													
			02. 경호													
	02. 청소 (구.청소·세탁)	01. 청소	01. 환경미화													
			02. 가사지원													
		02. 세탁·수선	01. 세탁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개발	'14년 보완개발	'15년 개발	'15년 개선	'16년 개발	'16년 개선	'17년 개발	'17년 개선	'18년 개발	'18년 개선	'19년 개발	'19년 개선
		(구.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02. 수선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4	12	46	17	21	4	0	3	0	32	0	8	4	7	0	8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01. 헤어미용													
			02. 피부미용													
			03. 메이크업													
			04. 네일미용													
			05. 이용													
	02. 결혼·장례	01. 결혼서비스	01. 결혼상담													
			02. 웨딩플래너													
			03. 결혼예식장관리													
			04. 웨딩이벤트													
		02. 장례서비스	01. 장례지원													
			02. 장례지도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01. 여행상품개발													
			02. 여행상품상담													
			03. 국내여행안내													
			04. 해외여행안내													
			05. 항공객실서비스													
		02. 숙박서비스	01. 숙박기획 · 개발													
			02. 객실관리													
			03. 부대시설관리													
			04. 연회관리													
			05. 접객서비스													
		03. 컨벤션	01. 회의기획													
			02. 전시기획													
			03. 이벤트기획													
		04. 관광레저 서비스	01. 카지노기획개발													
			02. 카지노운영관리													
			03. 크루즈운영관리													
			04. 유원시설운영관리													
			05. 리조트운영관리													
	04. 스포츠	01. 스포츠용품	01. 스포츠용품제작													
		02. 스포츠시설	01. 스포츠시설개발													
			02. 스포츠시설운영관리													
		03. 스포츠경기·지도	01. 선수스포츠지도													
			02. 일반인스포츠지도													
			03. 건강운동관리													
			04. 경기기록분석													
			05. 경기심판													
			06. 경기지원													
			07. 건강운동ICT융복합 콘텐츠개발													
			08. 경기력향상융복합 콘텐츠개발													
			09. 골프캐디													
		04. 스포츠마케팅	01. 스포츠이벤트													
			02. 스포츠라이선싱													
			03. 스포츠에이전트													
			04. 스포츠정보관리													
		05. 레크리에이션	01. 레크리에이션지도													
13. 음식서비스	1	3	10	3	0	5	1	3	1	8	0	2	0	1	0	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1. 식음료조리·서비스	01. 음식조리	01. 한식조리													
			02. 양식조리													
			03. 중식조리													
			04. 일식·복어조리													
		02. 식음료서비스	01. 식음료접객													
			02. 소믈리에													
			03. 커피관리(구.바리스타)											★		
			04. 바텐더													
			05. 식공간연출													
		03. 외식경영	01. 외식운영관리													
14. 건설	8	28	132	25	23	54	7	4	4	28	4	14	8	19	3	15
	01. 건설공사관리	01. 건설시공전관리	01. 설계기획관리													
		02. 건설시공관리	01. 건설공사공정관리													
			02. 건설공사품질관리													
			03. 건설공사환경관리													
			04. 건설공사공무관리													
		03. 건설시공후관리	01. 유지관리													
	02. 토목	01. 토목설계·감리	01. 도로설계													
			02. 공항설계													
			03. 터널설계													
			04. 교량설계													
			05. 항만(해양)설계													
			06. 상하수도설계													
			07. 하천(댐)설계													
			08. 지반설계													
			09. 단지설계													
			10. 철도설계													
			11. 토목건설사업관리													
			12. 토목시설물경관													
		02. 토목시공	01. 토공													
			02. 지반개량													
			03. 포장													
			04. 수중구조물시공													
			05. 삭도시공													
			06. 궤도시공													
			07. 상하수도시공													
			08. 보링그라우팅													
			09. 철강재시공													
			10. 준설													
			11. 석축													
		03. 측량·지리정보개발	01. 지적													
			02. 측량													
			03. 공간정보구축													
			04. 공간정보융합서비스													
	03. 건축	01. 건축설계·감리	01. 건축설계													
			02. 건축구조설계													
			03. 건축공사감리 (구. 건축감리)									★				
			04. 실내건축설계													
		02. 건축시공	01. 건축목공시공													
			02. 조적미장시공													
			03. 방수시공													
			04. 타일시공 (구. 타일석공시공)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5. 건축도장시공													
			06. 철근콘크리트시공													
			07. 창호시공													
			08. 가설시공													
			09. 수장시공													
			10. 단열시공													
			11. 지붕시공													
			12. 구조물해체													
			13. 강구조시공													
			14. 경량철골시공													
			15. 건설공사판넬시공													
			16. 한옥시공													
			17. 석재시공 (구. 타일석공시공 분할)													★
		03. 건축설비 설계·시공	01. 건축설비설계													
			02. 건축설비시공													
			03. 건축설비감리													
			04. 건축설비유지관리													
			05. 배관시공													
	04. 플랜트 (구. 산업환경설비)	01. 플랜트설계감리 (구. 산업·환경설비 설계·감리)	01. 발전설비설계													
			02. 석유·화학설비설계													
			03. 에너지설비설계													
			04. 제조공장설비설계													
			05. 환경설비설계													
			06. 플랜트설비감리 (구. 산업·환경설비감리)					★								
			07. 해수담수화플랜트설비설계													
		02. 플랜트시공 (구. 산업·환경 설비시공)	01. 플랜트기계설비시공 (구. 산업·환경기계설비시공)					★								
			02. 플랜트전기설비시공 (구. 산업·환경전기설비시공)					★								
			03. 플랜트계측설비시공 (구. 산업·환경전기설비시공)					★								
		03. 플랜트사업관리	01. 플랜트사업관리													
	05. 조경	01. 조경	01. 조경설계													
			02. 조경시공													
			03. 조경관리													
			04. 조경사업관리 (구. 조경감리)									★				
	06. 도시·교통	01. 국토·도시계획	01. 국토·지역계획													
			02. 도시계획													
			03. 도시설계													
			04. 도시재생													
			05. 도시개발													
			06. 도시경관													
		02. 교통계획·설계	01. 교통계획													
			02. 교통설계													
			03. 교통운영·감리													
		03. 주거서비스	01. 주거서비스지원													
		04. 지능형교통	01. 지능형교통체계(ITS) 기획 및 설계													
			02.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발 및 구축													
			03.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7. 건설기계 운전·정비	01. 토공기계운전	01. 모터그레이더운전													
			02. 아스팔트피니셔운전													
			03. 롤러운전													
			04. 불도저운전													
			05. 로더운전													
			06. 굴삭기운전													
			07. 준설선운전													
		02. 기초공 건설기계운전	01. 락드릴항타항발기운전													
			02. 지열시추기운전													
		03. 콘크리트공 기계운전	01. 콘크리트공기계운전													
		04. 적재기계운전	01. 지게차운전													
		05. 양중기계운전	01. 기중기운전 (이동식크레인조종)													
			02. 양화장치운전 (선박크레인조종)													
			03. 타워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조종)													
			04. 천장크레인운전 (천장크레인조종)													
			05.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조종)													
			06. 줄걸이작업													
			07. 타워크레인설치해체													
		06. 건설기계정비	01. 건설기계정비													
			02. 굴삭기정비 (건설기계정비 분할)											★		
			03. 지게차정비 (건설기계정비 분할)											★		
			04. 이동식크레인정비 (건설기계정비 분할)											★		
	08. 해양자원	01. 해양환경조사	01. 해양관측													
			02. 해양측량													
			03. 해양생태환경조사													
		02. 해양환경관리	01. 해양환경보전·복원													
			02. 해양환경영향평가													
			03. 해양오염관리·방제 (구. 해양오염관리·방재)											★		
		03. 해양플랜트 설치·운용	01. 원유시추설비설치·운용													
			02. 원유생산설비설치·운용													
			03. 해양터미널구조물설치													
			04. 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													
			05. 해양플랜트시운전설계													
			06. 해양플랜트안전설계													
			07. 해양플랜트종합설계													
			08. 해양플랜트구조설계													
			09. 해양플랜트기계설계													
			10. 해양플랜트계장설계													
			11. 해양플랜트배관설계													
			12. 해양플랜트전장설계													
		04. 해양자원 개발·관리	01. 해양자원탐사													
			02. 해양자원개발													
			03. 해양자원관리													
		05. 잠수	01. 일반잠수													
			02. 산업잠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11	34	135	17	29	67	2	16	10	38	3	29	6	16	1	17
15. 기계	01. 기계설계	01. 설계기획	01. 기계설계기획													
			02. 기계개발기획													
			03. 기계조달													
			04. 기계마케팅													
		02. 기계설계	01. 기계요소설계													
			02. 기계시스템설계													
			03. 구조해석설계													
			04. 기계제어설계													
	02. 기계가공	01. 절삭가공	01. 선반가공													
			02. 밀링가공													
			03. 연삭가공													
			04. CAM													
			05. 측정													
			06. 성형가공													
		02. 특수가공	01. 방전가공													
			02. 레이저가공													
			03. 워터젯가공													
			04. 플라즈마가공													
	03. 기계조립·관리	01. 기계조립	01. 기계수동조립													
			02. 기계소프트웨어개발													
			03. 기계하드웨어개발													
			04. 기계펌웨어개발													
		02. 기계생산관리	01. 기계생산관리계획													
			02. 기계자재관리													
			03. 기계공정관리													
			04. 기계생산성관리													
			05. 기계작업감독													
	04. 기계품질관리	01. 기계품질관리	01. 기계품질계획													
			02. 기계품질관리													
			03. 기계품질평가													
	05. 기계장치설치	01. 기계장비 설치·정비	01.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02.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03. 섬유기계설치 · 정비													
			04. 공작기계설치 · 정비													
			05. 고무프라스틱기계설치·정비													
			06. 농업용기계설치·정비													
			07. 승강기설치·정비													
		02. 냉동공조설비	01. 냉동공조설계													
			02. 냉동공조설치													
			03.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04. 보일러설치·정비													
			05. 보일러운영관리													
		03. 이륜차정비	01. 오토바이정비													
			02. 자전거정비													
	06. 자동차 (구.자동차제조)	01. 자동차설계	01. 자동차설계													
			02. 자동차시험·평가													
			03. 자동차공정설계													
		02. 자동차제작	01. 자동차조립													
			02. 자동차성능검사													
		03. 자동차정비	01.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02. 자동차엔진정비													
			03. 자동차섀시정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4. 자동차차체정비													
			05. 자동차도장													
			06. 자동차정비검사													
		04. 자동차정비관리	01. 자동차정비경영관리													
			02. 자동차정비현장관리													
		05. 자동차관리	01. 자동차영업													
			02. 자동차튜닝													
	07. 철도차량제작	01. 철도차량 설계·제작	01. 철도차량설계													
			02. 철도차량제작													
			03. 철도차량시운전													
		02. 철도차량 유지보수	01. 고속차량유지보수													
			02. 디젤차량유지보수													
			03. 전기차량유지보수													
			04. 객화차량유지보수													
			05. 특수차량유지보수													
	08. 조선	01. 선박설계	01. 선박기본설계													
			02. 선체설계													
			03. 선박배관설계													
			04. 철의장설계													
			05. 기장설계													
			06. 전장설계													
			07. 선실설계													
		02. 선체건조	01. 선체가공													
			02. 선체조립													
			03. 선박도장													
			04. 심출(철목)													
			05. 조선비계 (족장,발판,scaffolding)													
		03. 선박의장생산 (구. 선체의장생산)	01. 기장생산													
			02. 전장생산													
			03. 선장생산													
			04. 선실의장생산													
		04. 선박품질관리	01. 선체품질관리													
			02. 의장품질관리													
			03. 도장품질관리													
		05. 선박생산관리	01. 선박생산계획													
			02. 선체생산관리													
			03. 의장생산관리													
		06. 시운전	01. 기장시운전													
			02. 선장시운전													
			03. 전장시운전													
		07. 선박정비	01. 선체정비													
			02. 선박기관정비													
			03. 선박배관정비													
			04. 전장정비													
			05. 의장정비													
		08. 레저선박	01. 레저선박 몰드제작													
			02. 알루미늄 레저선박건조													
			03. 복합재료 레저선박건조													
			04. 레저선박 도장													
			05. 레저선박 기장 설치수리													
	09. 항공기제작	01. 항공기설계	01. 항공기기체설계													
			02. 항공기엔진·프로펠러설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3.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04. 항공기시스템설계													
			05.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02. 항공기제작	01. 항공기기체제작													
			02.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03.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03. 항공기정비	01. 항공기기체정비													
			02.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03. 항공기왕복엔진정비													
			04. 항공기프로펠러정비													
			05. 항공기계통정비 (구. 항공기기계부품·장비정비)							★						
			06.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07. 헬리콥터정비													
			08. 소형무인기정비													
		04. 항공장비관리	01. 항공기정비관리													
			02. 항공장비보급관리													
			03. 항공장구관리													
	10. 금형	00. 금형스마트시스템 운영관리	01. 공통능력단위													
		01. 사출금형	01. 사출금형설계													
			02. 사출금형제작													
			03. 사출금형품질관리													
			04. 사출금형조립													
		02. 프레스금형	01. 프레스금형설계													
			02. 프레스금형제작													
			03. 프레스금형품질관리													
			04. 프레스금형조립													
		03. 다이캐스팅금형	01. 다이캐스팅금형설계													
			02. 다이캐스팅금형제작													
			03. 다이캐스팅금형조립													
			04.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1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구. 스마트팩토리)	0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설계 (구. 스마트팩토리설계)	01. 스마트설비설계													
		02.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설치 (구. 스마트팩토리설치)	01.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시스템설치													
16. 재료	2	8	39	2	10	22	0	1	1	23	1	4	3	5	0	4
	01. 금속재료	01. 금속엔지니어링	01. 재료설계													
			02. 재료시험													
			03. 재료조직평가													
		02. 금속재료제조	01. 제선													
			02. 제강													
			03. 열간압연													
			04. 냉간압연													
			05. 비철금속건식제련													
			06. 비철금속습식제련													
			07.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03. 금속가공	01. 주조													
			02. 단조·압출·인발													
			03. 열처리													
			04. 선재가공													
			05. 판금제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6. 강관제조													
			07. 분말야금													
			08. 특수주조													
		04. 표면처리	01. 도금													
			02. 금속도장													
		05. 용접	01. 피복아크용접													
			02. CO_2용접													
			03. 가스텅스텐아크용접													
			04. 가스메탈아크용접													
			05. 서브머지드아크용접													
			06. 로봇용접													
		06. 비철금속재료제조	01. 마그네슘 제조													
	02. 요업재료	01. 파인세라믹제조	02. 타이타늄 제조													
			01. 전기전자재료제조													
			02. 광학재료제조													
			03. 내열구조재료제조													
			04. 생체세라믹제료제조													
		02. 전통세라믹제조	01. 유리・법랑제조													
			02. 내화물제조													
			03. 연삭재제조													
			04. 도자기제조													
			05. 시멘트제조													
			06. 탄소제품제조													
			07. 축로													
17. 화학	4	13	42	22	8	1	1	0	2	21	4	11	1	2	2	4
	01.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01. 화학물질관리	01. 화학물질분석													
			02. 화학물질검사·평가													
			03. 화학물질취급관리													
		02. 화학공정관리	01. 화학공정설계													
			02.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03. 화학공정유지운영													
		03. 화학제품 연구개발	01. 화학제품연구개발													
			02. 화학신소재개발													
			03. 화학제품기술사업화관리													
			04. 의약품비임상시험													
	02. 석유·기초 화학물제조	01. 석유·천연 가스제조	01. 석유제품제조													
		02. 기초유기 화학물제조	01. 석유화학제품제조													
			02. 합성수지제조													
			03. 합섬원료제조													
			04. 합성고무제조													
			05. 고분자복합재료제조													
			06. 기능성고분자제조													
		03. 기초무기 화학물제조	01. 무기질비료제조													
			02. 산·알카리제조													
	03. 정밀화학제품 제조	01. 생리활성화 제품제조	01. 의약품제조													
			02. 농약제조													
			03. 화장품제조													
		02. 기능성정밀화학 제품제조	01. 계면활성제제조													
			02. 첨가제제조													
			03. 색소(염·안료)제조													
			04. 도료제조													
			05. 접착제제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3. 바이오 의약품제조	01. 바이오의약품제조													
			02. 바이오의약품개발													
			03. 바이오진단제품개발·서비스													
			04. 유전자변형													
		04.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01.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02. 바이오플라스틱제조													
			03. 특수바이오화학제품제조													
		05. 수소연료 전지제조	01. 수소연료전지제조													
	04. 플라스틱·고무제품제조	01. 플라스틱제품제조	01. 압출성형 (구. 압사출성형)									★				
			02. 코팅 (구. 코팅성형)											★		
			03. 중공·진공성형													
			04. 컴파운딩													
			05. 사출성형 (구. 압사출성형 분할)									★				
		02. 고무제품제조	01. 고무배합													
			02. 고무제품제조													
	3	8	26	8	2	14	1	5	1	17	0	3	0	12	0	3
18 섬유·의복	01. 섬유제조	01. 섬유생산	01. 방사													
			02. 방적													
			03. 제직													
			04. 편직													
			05. 부직포													
			06. 사가공 (소분류: 섬유가공 →섬유생산 이동)											★		
		02. 섬유가공	01. 사가공 (소분류: 섬유가공 →섬유생산 이동)											★		
			02. 염색가공													
		03. 섬유생산관리	01. 구매생산관리													
			02. 생산현장관리													
	02. 패션	01. 패션제품기획	01. 패션기획													
			02. 패션디자인													
			03. 패턴													
			04. 비주얼머천다이징													
		02. 패션제품생산	01. 제직의류생산													
			02. 편직의류생산													
			03. 가죽·모피생산													
			04. 패션소품생산													
			05. 한복생산													
		03. 패션제품유통	01. 의류유통관리													
			02. 가죽·모피유통관리													
			03. 신발유통관리													
			04. 패션소품유통관리													
		04. 신발개발·생산	01. 신발생산													
			02. 신발개발													
	03. 의복관리	01. 세탁·수선 (구. 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01. 세탁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02. 수선 (중분류: 청소→의복관리)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3	33	108	14	25	24	9	17	12	34	9	23	10	9	5	4
19. 전기·전자	01. 전기	01. 발전설비설계	01. 수력발전설비설계													
			02. 화력발전설비설계													
			03. 원자력발전설비설계													
		02. 발전설비운영	01. 수력발전설비운영													
			02. 화력발전설비운영													
			03. 원자력발전설비운영													
			04. 원자력발전전기설비정비													
			05. 원자력발전기계설비정비													
			06. 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정비													
		03. 송배전 설비	01. 송변전배전설비설계													
			02. 송변전배전설비운영													
			03. 송변전배전설비공사감리													
			04. 직류송배전전력변환 설비제작													
			05. 직류송배전제어·보호 시스템설비제작													
			06. 직류송배전시험평가													
		04. 지능형전력망설비	01. 지능형전력망설비													
			02. 지능형전력망설비 소프트웨어													
		05. 전기기기제작	01. 전기기기설계													
			02. 전기기기제작													
			03. 전기기기유지보수													
			04. 전기전선제조													
		06. 전기설비 설계·감리	01. 전기설비설계													
			02. 전기설비감리													
			03. 전기설비운영													
		07. 전기공사	01. 내선공사													
			02. 외선공사													
			03. 변전설비공사													
		08. 전기자동제어	01. 자동제어시스템설계													
			02. 자동제어기기제작													
			03.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04. 자동제어시스템운영													
		09. 전기철도	01. 전기철도설계·감리													
			02. 전기철도시공													
			03.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10. 철도신호제어	01. 철도신호제어설계·감리													
			02. 철도신호제어시공													
			03. 철도신호제어시설물 유지보수													
		11. 초임계CO_2발전	01. 초임계CO_2발전열원 설계·제작													
			02. 초임계CO_2열교환기 설계·제작													
			03. 초임계CO_2 회전기기 설계·제작													
		12. 전기저장장치	01. 전기저장장치개발													
			02. 전기저장장치설치													
		13. 미래형 전기 시스템	01. 스마트유지보수운영													
	02. 전자기기일반	01. 전자제품 개발기획·생산	01. 전자제품기획													
			02. 전자제품생산													
		02. 전자부품	01. 전자부품기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기획·생산	02. 전자부품생산													
		03. 전자제품 고객지원	01. 전자제품설치·정비													
			02. 전자제품영업													
	03. 전자기기개발	01. 가전기기 개발	01. 가전기기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02. 가전기기응용소프트웨어개발													
			03.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04. 가전기기기구개발													
		02. 산업용 전자기기개발	01. 산업용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02. 산업용전자기기기구개발													
			03. 산업용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													
		03. 정보통신기기 개발	01. 정보통신기기하드웨어개발													
			02.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03.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													
		04. 전자응용기기 개발	01.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02.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03.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05. 전자부품개발	01.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02. 전자부품기구개발													
			03.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06. 반도체개발	01. 반도체개발													
			02. 반도체제조													
			03. 반도체장비													
			04. 반도체재료													
		07. 디스플레이개발	01. 디스플레이개발													
			02. 디스플레이생산													
			03. 디스플레이장비부품개발													
		08. 로봇개발	01. 로봇하드웨어설계													
			02. 로봇기구개발													
			03. 로봇소프트웨어개발													
			04. 로봇지능개발													
			05. 로봇유지보수													
			06. 로봇안전인증													
		09. 의료장비제조	01. 의료기기품질관리													
			02. 의료기기인·허가													
			03. 의료기기생산													
			04. 의료기기연구개발													
		10. 광기술개발	01. 광부품개발													
			02. 레이저개발													
			03. LED기술개발													
			04. 광학시스템제조													
			05. 광학소프트웨어응용													
			06. 광센서기기개발													
			07. 광의료기기개발													
			08. 라이다(LiDAR)기기개발													
		11. 3D프린터개발	01. 3D프린터개발													
			02. 3D프린터용 제품제작													
			03. 3D프린팅 소재개발													
		12. 가상훈련 시스템개발	01.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2. 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													
			03. 가상훈련콘텐츠개발													
			04. 실감형콘텐츠하드웨어(디바이스)개발													
		13. 착용형 스마트기기	01. 착용형스마트기기설계													
			02. 착용형스마트기기서비스													
			03. .착용형스마트기기개발													
		14.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개발	01. 플렉시블디스플레이모듈개발													
			02. 플렉시블디스플레이검사													
			03. 플렉시블디스플레이 재료개발													
		15. 스마트팜개발	01. 스마트팜기술개발													
			02. 스마트팜계측													
		16. OLED개발	01. OLED조명개발													
		17. 커넥티드카개발	01. 커넥티트카소프트웨어 기술개발													
			02. 커넥티드카콘텐츠서비스													
		18. 자율주행차개발	01. 자율주행모듈개발													
			02. 상위제어S/W개발													
20. 정보통신	3	15	95	25	4	27	2	4	6	28	12	27	12	3	7	44
	01. 정보기술	01. 정보기술 전략·계획	01. 정보기술전략													
			02. 정보기술컨설팅													
			03. 정보기술기획													
			04. SW제품기획													
			05. 빅데이터 분석													
			06. IoT융합서비스기획													
			07. 빅데이터기획													
			08. 핀테크기술기획													
		02. 정보기술개발	01. SW아키텍처													
			02. 응용SW엔지니어링													
			03.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04. DB엔지니어링													
			05. NW엔지니어링													
			06. 보안엔지니어링													
			07. UI/UX엔지니어링													
			08. 시스템SW엔지니어링													
			09. 빅데이터플랫폼구축													
			10. 핀테크엔지니어링													
			11. 데이터아키텍처													
			12. IoT시스템연동													
			13.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구축													
		03. 정보기술운영	01. IT시스템관리													
			02. IT기술교육													
			03. IT기술지원													
			04. 빅데이터운영·관리													
		04. 정보기술관리	01. IT프로젝트관리													
			02. IT품질보증													
			03. IT테스트													
			04. IT감리													
		05. 정보기술영업	01. IT기술영업													
			02. IT마케팅													
		06. 정보보호	01. 정보보호관리·운영													
			02. 정보보호진단·분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3. 보안사고분석대응													
			04. 정보보호암호·인증													
			05. 지능형영상정보처리													
			06. 생체인식(바이오인식)													
			07. 개인정보보호													
			02. 디지털포렌식													
		07. 인공지능	01. 인공지능플랫폼구축													
			02. 인공지능서비스기획													
			03. 인공지능모델링													
			04. 인공지능서비스운영관리													
			05. 인공지능서비스구현													
		08. 블록체인	01. 블록체인분석·설계													
			02. 블록체인구축·운영													
			03.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09. 스마트물류	01. 스마트물류체계기획													
			02. 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													
			03. 스마트물류통합관리													
		10. 디지털트윈	01. 디지털트윈													
	02. 통신기술	01. 유선통신구축	01. 교환시스템구축													
			02. 구내통신구축													
			03. 네트워크구축													
			04. 구내통신설비공사													
			05. 실감형플랫폼구축													
			06. 철도정보통신설비공사													
			07. 도로·교통정보통신설비공사													
			08. 항해·항만정보통신설비공사													
			09. 항공·항행정보통신시설공사													
			10. 클라우드플랫폼구축													
		02. 무선통신구축	01. 무선통신시스템구축													
			02. 전송시스템구축													
			03. 무선통신망구축													
			04. 위성통신망구축													
			05. IoT통신망구축													
			06. 공공안전통신망구축													
		03. 통신서비스	01. 유선설비접속서비스													
			02. 전용회선서비스													
			03. 초고속망서비스													
			04. 부가네트워크서비스													
			05. 전보서비스 (구. 전신서비스)													★
			06. 이동통신서비스													
			07. 콘텐츠사용자서비스													
			08. 콘텐츠네트워크서비스													
			09.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10. 주파수공용통신													
			11. 무선호출메시징서비스													
			12. 위성통신서비스													
			13. 특수이동통신서비스													
			14. 인터넷지원서비스													
			15. 부가통신응용중계서비스													
			16. 특수부가통신서비스													
			17.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18. 디지털비즈니스지원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19. 실감형통신서비스													
		04. 실감형콘텐츠제작	01. 가상현실콘텐츠제작													
			02. 실감콘텐츠촬영													
			03. 증강현실(AR)콘텐츠제작													
	03. 방송기술	01. 방송제작기술	01. 중계방송 (구. 방송중계)					★								
			02. 방송품질관리													
		02. 방송플랫폼기술	01. 라디오방송													
			02. 지상파TV방송													
			03. 지상파DMB													
			04. 케이블방송													
			0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03. 방송서비스	01. 유무선통합서비스													
			02. 방송시스템운영													
			03. 정보시스템운영													
			04. 방송기술지원서비스													
			05.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06. 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21. 식품가공	2	4	21	14	4	2	0	0	0	11	1	6	0	3	0	3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수산식품가공													
			02. 두류식품가공													
			03. 축산식품가공													
			04. 유제품가공													
			05.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06. 김치·반찬가공													
			07. 면류식품가공													
			08. 곡류·서류·견과류가공													
			09. 음료주류가공													
			10. 식품가공연구개발													
			11. 식품품질관리													
		02. 식품저장	01. 수산식품저장													
			02. 농산식품저장													
			03. 축산식품저장													
		03. 식품유통	01. 수산식품유통													
			02. 농산식품유통													
			03. 축산식품유통													
	02. 제과·제빵·떡제조	01. 제과·제빵·떡제조	01. 제과													
			02. 제빵													
			03. 떡제조													
			04. 한과제조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23	0	3	19	0	1	1	18	0	1	0	4	0	2
	01. 인쇄·출판	01. 출판	01. 출판기획													
			02. 편집디자인													
			03. 편집													
			04. 제작·공정관리													
		02. 인쇄	01. 프리프레스													
			02. 평판인쇄													
			03. 특수인쇄													
			04. 후가공													
			05. 간판디자인·제작·설치													
	02. 공예	01. 공예	01. 칠공예													
			02. 도자공예													
			03. 석공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4. 목공예													
			05. 금속공예													
			06. 가구제작													
			07. 섬유공예													
			08. 나전칠기													
			09. 단위화훼장식 (구.화훼장식공예)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
			10. 공간화훼장식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02. 귀금속・보석	01. 귀금속가공													
			02. 귀금속품위감정													
			03. 보석가공													
			04. 보석감정													
			05. 보석디자인													
			06. 주얼리마케팅													
23. 환경·에너지·안전	6	18	57	10	33	5	1	2	3	20	2	14	1	10	2	4
	01. 산업환경	01. 수질관리	01. 수질오염분석													
			02. 수질공정관리													
			03. 수질환경관리													
			04. 정수시설운영관리													
			05.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													
			06.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													
		02. 대기관리	01. 대기환경관리													
			02. 온실가스관리													
			03. 기상기술관리													
			04. 기후변화적응													
		03. 폐기물관리	01.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													
			02. 폐기물관리													
		04. 소음진동관리	01. 소음진동관리													
			02.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05. 토양·지하수관리	01. 지하수관리													
			02. 토양관리													
	02. 환경보건	01. 환경보건관리	01. 산업환경보건													
			02. 실내공기질관리													
			03. 위해성관리													
	03. 자연환경	01. 생태복원·관리	01. 생태복원													
			02. 생태관리													
	04. 환경서비스	01. 환경경영	01. 환경컨설팅													
			02. 환경시설운영													
			03. 환경관리													
		02. 환경평가	01. 환경영향평가													
			02. 환경조사분석													
	05. 에너지·자원	01. 광산조사·탐사	01. 광산지질조사													
			02. 지구물리·화학탐사													
			03. 석유시추													
			04. 광물시추													
		02. 광물·석유자원 개발·생산	01. 광물자원개발·생산													
			02. 석유자원개발·생산													
			03. 자원관리													
		03. 광산환경관리	01. 광해조사													
			02. 광해복원													
		04. 광산보안	01. 광산보안관리													
			02. 화약류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개발	'14년 보완개발	'15년 개발	'15년 개선	'16년 개발	'16년 개선	'17년 개발	'17년 개선	'18년 개발	'18년 개선	'19년 개발	'19년 개선
		05. 신재생에너지생산	01. 태양광에너지생산													
			02. 태양열에너지생산													
			03. 연료전지에너지생산													
			04. 바이오에너지생산													
			05. 해양에너지생산													
			06. 풍력에너지생산													
			07. 폐자원에너지생산													
			08. 지열에너지생산·활용													
		06. 에너지관리	01. 에너지절약서비스													
			0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관리													
	06. 산업안전	01. 산업안전관리	01. 기계안전관리													
			02. 전기안전관리													
			03. 건설안전관리													
			04. 화공안전관리													
			05. 가스안전관리													
			06. 방사선측정평가													
			07. 원자력발전소해체 방사성폐기물관리													
		02. 산업보건관리	01. 산업보건관리													
			02. 근로자작업환경관리													
		03. 비파괴검사	01. 비파괴검사													
	4	13	54	22	11	10	2	0	1	20	6	14	2	3	0	6
24. 농림어업	01. 농업	01. 작물재배	01. 수도작재배													
			02. 전작재배 (구. 전특작재배)					★								
			03. 채소재배													
			04. 과수재배													
			05. 화훼재배													
			06. 버섯재배													
			07. 특용작물재배													
			08. 시설원예													
			09. 유기재배													
		02. 종자생산·유통	01. 종자계획													
			02. 육종													
			03. 종자생산													
			04. 종자유통보급													
		03. 농촌개발	01. 농촌체험상품개발													
			02. 농촌체험시설운영													
			03. 농업환경개선													
			04. 농산물품질관리													
		04. 화훼장식	01. 단위화훼장식 (구.화훼장식공예)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
			02. 공간화훼장식 (소분류: 공예→화훼장식)													★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01. 사료생산													
			02. 종축													
			03. 동물용의약품제조 (구. 동물약품제조)									★				
			04. 수의서비스													
			05. 수의보조													
			06. 애완동물미용													
			07. 말이용													
			08. 반려동물행동교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3년 개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개발	보완개발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개발	개선
		02. 사육관리	01. 젖소사육													
			02. 돼지사육													
			03. 가금사육													
			04. 한우사육													
			05. 말사육													
			07. 곤충사육													
	03. 임업	01. 산림자원조성	01. 임업종묘													
			02. 산림조성													
		02. 산림관리	01. 산림개발													
			02. 산림보호													
		03. 임산물생산·가공	01. 임산물생산													
			02. 목재가공													
			03. 펄프·종이제조													
	04. 수산	01. 어업	01. 원양어업													
			02. 근해어업													
			03. 연안어업													
			04. 내수면어업													
		02. 양식	01. 해면양식													
			02. 수산종묘생산													
			03. 내수면양식													
			04. 스마트양식													
		03. 수산자원관리	01. 수산자원조성 (구. 어업자원관리)									★				
			02. 수산질병관리													
			03. 염생산													
		04. 어촌개발	01. 어촌체험상품개발													
			02. 어촌체험시설운영													
			03. 어업환경개선													

2) 직업기초능력

개발영역	하위영역	
	34	명칭
의사소통능력	5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4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2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3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4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5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2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3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4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2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현황('20.1.1. 시행)

1) 훈련직종(총 1,001개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24개	79개	253개	1,001개	
사업관리	1	2	5	
	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공적개발원조사업관리	
			프로젝트관리	
			산학협력관리	
		해외관리	해외법인설립관리	
			해외취업관리	
경영·회계·사무	4	11	27	
	기획사무	경영기획	경영기획	
			경영평가	
		홍보·광고	기업홍보	
			PR/광고	
		마케팅	마케팅전략기획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인사	총무	총무	
			자산관리	
			비상기획	
		인사・조직	인사	
			노무관리	
		일반사무	비서	
			사무행정	
	재무・회계	재무	예산	
			자금	
		회계	회계・감사	
			세무	
	생산・품질관리	생산관리	구매조달	
			자재관리	정비
			공정관리	정비
			SCM	정비
		품질관리	QM/QC관리	
		무역・유통관리	물류관리	
			수출입관리	
			원산지관리	
			유통관리	
금융·보험	2	9	36	
	금융	금융영업	창구사무	
			기업영업	
			PB영업	
			카드영업	
			여신전문금융영업	
		금융상품개발	여수신상품개발	
			투자상품개발	
			연금상품개발	
			카드상품개발	
		신용분석	개인신용분석	
			기업신용분석	
			여신심사	
		자산운용	펀드운용	
			주식・채권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파생상품운용	
			대체투자	
			신탁자산관리	
		금융영업지원	결제	
			채권추심	
			리스크관리	
		증권・외환	증권거래업무	
			외환・파생업무	
			인수업무	
			증권상장업무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무역금융업무	
	보험	보험상품개발	보험동향분석	
			보험상품개발	
			보험계리	
		보험영업·계약	보험모집	
			보험계약심사	
			보험계약・보전	
			위험관리	
		손해사정	재물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교육·자연·사회과학	2	3	8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기획·개발·평가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상담·교수	
	직업교육	직업교육	경력지도	
			기업교육	
			직무분석	
		이러닝	이러닝시스템개발	
			이러닝콘텐츠개발	
			이러닝과정(process)운영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	4	16	
	법률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특허엔지니어링	
	소방방재	소방	소방시설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	
			구조구급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운송・운반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화재감식평가	
		방재	방재시설	
			기업재난관리	
			방재안전대책관리	
		스마트재난관리	스마트재난위험예측	
			스마트재난관리설계	
보건·의료	1	2	11	
	보건	의료기술지원	의료기관리	
			요양지원	
			의지보조기	
			청각관리	
			임상심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의료정보관리	
		보건지원	병원행정	
			병원안내	정비
			보건교육	
			의료시설위생관리	
			지역사회위생관리	
사회복지·종교	3	6	17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개발	
			사회복지조직운영	
			공공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일상생활기능지원	정비
			사회복지면담	
			사회복지사례관리	
	상담	직업상담서비스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직지원	
		청소년지도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복지	
			진로지원	
		심리상담	심리상담	
	보육	보육	보육	
			산후육아지원	
			아이돌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	9	61	
	문화·예술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문헌정보관리	
		실용예술	실용음악	
			실용사진	
		공연예술	무대연출	
			무대조명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미술	
			무대감독	
			무대기술감독	
			무대장치 · 소품	
			무대의상	
			무대영상	
			하우스매니징	
		문화재관리	학예	
			문화재보수	
			문화재보존	
	디자인	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정비
			환경디자인	정비
			디지털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실내디자인	
			색채디자인	
			전시디자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3D프린팅디자인	정비
			패키지디자인	
			VR콘텐츠디자인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콘텐츠제작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정비
			음악콘텐츠제작	
			광고콘텐츠제작	정비
			게임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만화콘텐츠제작	
			캐릭터제작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영사	
			완구콘텐츠제작	추가
			드론콘텐츠제작	추가
		문화콘텐츠 유통・서비스	방송콘텐츠유통・서비스	
			영화콘텐츠유통・서비스	
			음악콘텐츠유통・서비스	
			광고콘텐츠유통・서비스	
			게임콘텐츠유통・서비스	
			애니메이션콘텐츠유통・서비스	
			만화콘텐츠유통・서비스	
			캐릭터유통・서비스	
			스마트문화앱콘텐츠 유통・서비스	
		영상제작	영상연출	
			영상촬영	정비
			영상조명	
			영상음향제작	
			영상그래픽	
			영상편집	정비
			영상미술	
운전·운송	4	8	31	
	자동차운전·운송	자동차운전·운송	여객운송	
			화물운송	
			수송포장	
	철도 운전·운송	철도운전운영	철도관제	
			열차운용DIA	
			철도운전	
			기지내차량운전	
		철도시설유지보수	철도선로시설물유지보수	
			정비기지시설물유지보수	
			역시설물유지보수	
			철도정보통신시설물유지보수	
	선박운전·운송	선박운항	항해	
			선박기관운전	
			선박통신	
			수면비행선박조종	
			수상레저기구조종	
			해상관제	
			선박갑판관리	
		검수・검량	검수・검정	
	항공운전·운송	항공기조종운송	경량항공기조종	
			자가용항공기조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사업용항공기조종	
			운송용항공기조종	
			소형무인기운용·조종	정비
		항공운항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항공안전	
			항공보안	정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항공화물운송서비스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운영관리	추가
영업판매	3	8	18	
	영업	일반·해외영업	일반영업	
			해외영업	
	부동산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부동산분양	
			부동산경·공매	
		부동산관리	주택관리	
			상업용건물관리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	
			부동산정보제공	
		감정평가	부동산・동산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판매	e-비지니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일반판매	매장판매	
			방문판매	
		상품중개·경매	농축수산물경매	
경비·청소	2	3	6	
	경비	경비·경호	보안	
			경호	
	청소·세탁	청소	환경미화	
			가사지원	
		세탁	세탁	
			수선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	12	46	
	이·미용	이·미용서비스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이용	
	결혼·장례	결혼서비스	결혼상담	
			웨딩플래너	
			결혼예식장관리	
			웨딩이벤트	
		장례서비스	장례지원	
			장례지도	
	관광·레저	여행서비스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정비
		숙박서비스	숙박기획・개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컨벤션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관광레저서비스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리조트운영관리	추가
	스포츠	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제작	
		스포츠시설	스포츠시설개발	
			스포츠시설운영관리	
		스포츠경기・지도	선수스포츠지도	
			일반인스포츠지도	
			건강운동관리	
			경기기록분석	
			경기심판	
			경기지원	
			건강운동ICT융복합콘텐츠개발	추가
			경기력향상융복합콘텐츠개발	추가
			골프캐디	추가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라이선싱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정보관리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지도	정비
음식서비스	1	3	10	
	식음료조리・서비스	음식조리	한식조리	정비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복어조리	
		식음료서비스	식음료접객	
			소믈리에	
			커피관리	정비
			바텐더	
			식공간연출	
		외식경영	외식운영관리	
건설	8	27	128	
	건설공사관리	건설시공전관리	설계기획관리	
		건설시공관리	건설공사공정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환경관리	
			건설공사공무관리	
		건설시공후관리	유지관리	
	토목	토목설계·감리	도로설계	
			공항설계	
			터널설계	
			교량설계	
			항만(해양)설계	
			상하수도설계	
			하천(댐)설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지반설계	
			단지설계	
			철도설계	
			토목건설사업관리	
			토목시설물경관	추가
		토목시공	토공	
			지반개량	
			포장	
			수중구조물시공	
			삭도시공	
			궤도시공	
			상하수도시공	
			보링그라우팅	
			철강재시공	
			준설	
			석축	
		측량·지리정보개발	지적	
			측량	
			공간정보구축	
			공간정보융합서비스	
	건축	건축설계·감리	건축설계	정비
			건축구조설계	
			건축공사감리	정비
			실내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목공시공	
			조적미장시공	
			방수시공	
			타일석공시공	
			건축도장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창호시공	
			가설시공	정비
			수장시공	정비
			단열시공	
			지붕시공	
			구조물해체	
			강구조시공	
			경량철골시공	
			건설공사판넬시공	
			한옥시공	추가
		건축설비설계・시공	건축설비설계	
			건축설비시공	
			건축설비감리	
			건축설비유지관리	
			배관시공	
	플랜트	플랜트 설계감리	발전설비설계	
			석유·화학설비설계	
			에너지설비설계	
			제조공장설비설계	
			환경설비설계	
			플랜트설비감리	
			해수담수화플랜트설비설계	
		플랜트시공	플랜트기계설비시공	
			플랜트전기설비시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플랜트계측설비시공	
		플랜트사업관리	플랜트사업관리	
	조경	조경	조경설계	정비
			조경시공	정비
			조경관리	정비
			조경사업관리	
	도시·교통	국토 ・도시계획	국토·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경관	
		교통계획・설계	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운영・감리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지원	추가
	건설기계운전・정비	토공기계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정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정비
			롤러운전	정비
			불도저운전	정비
			로더운전	정비
			굴삭기운전	정비
			준설선운전	정비
		기초공건설기계운전	락드릴항타항발기운전	정비
			지열시추기운전	정비
		콘크리트공기계운전	콘크리트공기계운전	정비
		적재기계운전	지게차운전	정비
		양중기계운전	기중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비
			타워크레인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줄걸이작업	추가
			타워크레인설치해제	추가/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굴삭기정비	추가
			지게차정비	추가
			이동식크레인정비	추가
	해양자원	해양환경조사	해양관측	
			해양측량	
			해양생태환경조사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보전·복원	
			해양환경영향 평가	
			해양오염관리·방제	정비
		해양플랜트설치·운용	원유시추설비설치・운용	
			원유생산설비설치・운용	
			해양터미널구조물설치	
			해양플랜트프로세스설계	
			해양플랜트시운전설계	
			해양플랜트안전설계	
			해양플랜트종합설계	
			해양플랜트구조설계	
			해양플랜트기계설계	
			해양플랜트계장설계	추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해양플랜트배관설계	추가
			해양플랜트전장설계	추가
		해양자원개발・관리	해양자원탐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자원관리	
		잠수	일반잠수	
			산업잠수	
	11	33	134	
기계	기계설계	설계기획	기계설계기획	
			기계개발기획	
			기계조달	
			기계마케팅	
		기계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시스템설계	
			구조해석설계	
			기계제어설계	
	기계가공	절삭가공	선반가공	정비
			밀링가공	정비
			연삭가공	정비
			CAM	정비
			측정	정비
			성형가공	
		특수가공	방전가공	
			레이저가공	
			워터젯가공	
			플라즈마가공	
	기계조립·관리	기계조립	기계수동조립	
			기계소프트웨어개발	
			기계하드웨어개발	
			기계펌웨어개발	
		기계생산관리	기계생산관리계획	
			기계자재관리	정비
			기계공정관리	
			기계생산성관리	정비
			기계작업감독	정비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계획	
			기계품질관리	
			기계품질평가	
	기계장치설치	기계장비설치·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섬유기계설치・정비	
			공작기계설치・정비	
			고무프라스틱기계설치・정비	
			농업용기계설치・정비	
			승강기설치·정비	
		냉동공조설비	냉동공조설계	
			냉동공조설치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정비
			보일러설치·정비	
			보일러운영·관리	
		이륜차정비	오토바이정비	
			자전거정비	정비
	자동차	자동차설계	자동차설계	
			자동차시험·평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자동차공정설계	
		자동차제작	자동차조립	
			자동차성능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정비
			자동차도장	정비
			자동차정비검사	
		자동차정비관리	자동차정비경영관리	
			자동차정비현장관리	
		자동차관리	자동차영업	
			자동차튜닝	
	철도차량제작	철도차량설계 · 제작	철도차량설계	
			철도차량제작	
			철도차량시운전	
		철도차량유지보수	고속차량유지보수	
			디젤차량유지보수	
			전기차량유지보수	
			객화차량유지보수	
			특수차량유지보수	
	조선	선박설계	선박기본설계	
			선체설계	
			선박배관설계	
			철의장설계	
			기장설계	
			전장설계	
			선실설계	
		선체건조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도장	
			심출(철목)	
			조선비계(족장, 발판, scaffolding)	
		선박의장생산	기장생산	
			전장생산	
			선장생산	
			선실의장생산	
		선박품질관리	선체품질관리	
			의장품질관리	
			도장품질관리	
		선박생산관리	선박생산계획	
			선체생산관리	
			의장생산관리	
		시운전	기장시운전	
			선장시운전	
			전장시운전	
		선박정비	선체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배관정비	
			전장정비	
			의장정비	
		레저선박	레저선박몰드제작	추가
			알루미늄레저선박건조	추가
			복합재료레저선박건조	추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레저선박도장	추가
			레저선박기장설치수리	추가
	항공기제작	항공기설계	항공기기체설계	
			항공기엔진·프로펠러설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설계	
			항공기시스템설계	
			소형무인기비행체개발	
		항공기제작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제작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항복기왕복엔진정비	
			항공기프로펠러정비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전기·전자장비정비	
			헬리콥터정비	
			소형무인기정비	
		항공장비관리	항공기정비관리	
			항공장비보급관리	
			항공장구관리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제작	정비
			사출금형품질관리	
			사출금형조립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제작	정비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금형조립	정비
		다이캐스팅금형	다이캐스팅금형설계	
			다이캐스팅금형제작	정비
			다이캐스팅금형조립	
			다이캐스팅금형품질관리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설계	스마트설비설계	추가
재료	2	8	39	
	금속재료	금속엔지니어링	재료설계	
			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금속재료제조	제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비철금속건식제련	
			비철금속습식제련	
			금속재료제조설비정비	
		금속가공	주조	
			단조·압출·인발	
			열처리	
			선재가공	
			판금제관	
			강관제조	
			분말야금	
			특수주조	추가
		표면처리	도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금속도장	
		용접	피복아크용접	정비
			CO2용접	정비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정비
			가스메탈아크용접	정비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정비
			로봇용접	정비
		비철금속재료제조	마그네슘제조	추가
			타이타늄제조	추가
	요업재료	파인세라믹제조	전기전자재료제조	
			광학재료제조	
			내열구조재료제조	
			생체세라믹제료제조	
		전통세라믹제조	유리 · 법랑제조	
			내화물제조	
			연삭재제조	
			도자기제조	
			시멘트제조	
			탄소제품제조	
			축로	
화학	4	12	40	
	화학물질 · 화학공정 관리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분석	
			화학물질검사·평가	
			화학물질취급관리	
		화학공정관리	화학공정설계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화학공정유지운영	
		화학제품연구개발	화학제품연구개발	
			화학신소재개발	
			화학제품기술사업화관리	
			의약품비임상시험	추가
	석유 · 기초화학물 제조	석유 · 천연가스 제조	석유제품제조	
		기초유기화학물 제조	석유화학제품제조	
			합성수지제조	
			합섬원료제조	
			합성고무제조	
			고분자복합재료제조	
			기능성고분자제조	
		기초무기화학물 제조	무기질비료제조	
			산·알카리제조	
	정밀화학제품제조	생리활성화제품제조	의약품제조	정비
			농약제조	
			화장품제조	
		기능성정밀화학 제품제조	계면활성제제조	
			첨가제제조	
			색소(염·안료)제조	
			도료제조	
			접착제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의약품개발	
			바이오의진단제품개발·서비스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바이오플라스틱제조	
			특수바이오화학제품제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플라스틱제품제조	플라스틱제품제조	압출성형	
			코팅성형	
			중공·진공성형	
			컴파운딩	
			사출성형	
		고무제품제조	고무배합	
			고무제품제조	
섬유·의복	2	7	24	
	섬유제조	섬유생산	방사	
			방적	정비
			제직	
			편직	
			부직포	
		섬유가공	사가공	
			염색가공	
		섬유생산관리	구매생산관리	
			생산현장관리	
	패션	패션제품기획	패션기획	
			패션디자인	
			패턴	
			비주얼머천다이징	
		패션제품생산	제직의류생산	정비
			편직의류생산	
			가죽・모피생산	
			패션소품생산	정비
			한복생산	정비
		패션제품유통	의류유통관리	
			가죽・모피유통관리	
			신발유통관리	
			패션소품유통관리	
		신발개발・생산	신발생산	
			신발개발	
전기·전자	3	33	103	
	전기	발전설비설계	수력발전설비설계	
			화력발전설비설계	
			원자력발전설비설계	
		발전설비운영	수력발전설비운영	
			화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전기설비정비	
			원자력발전기계설비정비	
			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정비	
		송배전 설비	송변전배전설비설계	정비
			송변전배전설비운영	정비
			송변전배전설비공사감리	
			직류송배전전력변환설비제작	
			직류송배전제어·보호시스템설비제작	
			직류송배전시험평가	
		지능형전력망설비	지능형전력망설비	
			지능형전력망설비소프트웨어	
		전기기기제작	전기기기설계	
			전기기기제작	
			전기기기유지보수	
			전기전선제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전기설비설계 · 감리	전기설비설계	정비
			전기설비감리	정비
			전기설비운영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정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자동제어	자동제어시스템설계	
			자동제어기기제작	
			자동제어시스템유지정비	
			자동제어시스템운영	
		전기철도	전기철도설계·감리	
			전기철도시공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철도신호제어	철도신호제어설계·감리	
			철도신호제어시공	
			철도신호제어시설물유지보수	
		초임계CO_2발전	초임계CO_2발전열원설계·제작	
			초임계CO_2열교환기설계·제작	
			초임계CO_2회전기기설계·제작	
		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개발	
			전기저장장치설치	
		미래형 전기시스템	스마트유지보수운영	추가
	전자기기일반	전자제품개발기획 · 생산	전자제품기획	
			전자제품생산	
		전자부품기획 · 생산	전자부품기획	
			전자부품생산	
		전자제품고객지원	전자제품설치·정비	
			전자제품영업	
	전자기기개발	가전기기 개발	가전기기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가전기기응용소프트웨어개발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가전기기기구개발	
		산업용 전자기기개발	산업용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산업용전자기기기구개발	
			산업용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 개발	정보통신기기하드웨어개발	정비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개발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전자부품개발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전자부품기구개발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반도체개발	반도체개발	
			반도체제조	
			반도체장비	
			반도체재료	
		디스플레이개발	디스플레이개발	
			디스플레이생산	
			디스플레이장비부품개발	
		로봇개발	로봇하드웨어설계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로봇지능개발	
			로봇유지보수	
			로봇안전인증	추가
		의료장비제조	의료기기품질관리	
			의료기기인·허가	
			의료기기생산	
			의료기기연구개발	정비
		광기술개발	광부품개발	
			레이저개발	
			LED기술개발	
			광학시스템제조	
			광학소프트웨어응용	추가
			광센서기기개발	추가
			광의료기기개발	추가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용제품제작	정비
		가상훈련 시스템개발	가상훈련시스템설계·검증	
			가상훈련구동엔지니어링	
			가상훈련콘텐츠개발	
			실감형콘텐츠하드웨어개발	
		착용형스마트기기	착용형스마트기기설계	
			착용형스마트기기서비스	
			착용형스마트기기개발	
		플렉시블디스플레이개발	플렉시블디스플레이모듈개발	추가
			플렉시블디스플레이검사	추가
		스마트팜개발	스마트팜기술개발	추가
		OLED개발	OLED조명개발	추가
		커넥티드카개발	커넥티드카소프트웨어기술개발	추가
정보통신	3	15	88	
	정보기술	정보기술전략·계획	정보기술전략	
			정보기술컨설팅	
			정보기술기획	
			SW제품기획	
			빅데이터 분석	
			IoT융합서비스기획	
			빅데이터기획	
			핀테크기술기획	
		정보기술개발	SW아키텍처	
			응용SW엔지니어링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DB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링	
			보안엔지니어링	
			UI/UX엔지니어링	정비
			시스템SW엔지니어링	
			빅데이터플랫폼구축	
			핀테크엔지니어링	
			데이터아키텍처	추가
		정보기술운영	IT시스템관리	
			IT기술교육	
			IT기술지원	
			빅데이터운영·관리	
		정보기술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품질보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IT테스트	
			IT감리	
		정보기술영업	IT기술영업	
			IT마케팅	
		정보보호	정보보호관리·운영	
			정보보호진단·분석	
			보안사고분석대응	
			정보보호암호·인증	
			지능형영장정보처리	
			생체인식(바이오인식)	추가
		인공지능	인공지능플랫폼구축	추가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추가/정비
		블록체인	블록체인분석·설계	추가/정비
			블록체인구축·운영	추가/정비
	통신기술	유선통신구축	교환시스템구축	
			구내통신구축	
			네트워크구축	
			구내통신설비공사	
			실감형플랫폼구축	
			철도정보통신설비공사	추가/정비
			도로·교통정보통신설비공사	추가/정비
			항해·항만정보통신설비공사	추가/정비
			항공·항행정보통신설비공사	추가
		무선통신구축	무선통신시스템구축	
			전송시스템구축	
			무선통신망구축	정비
			위성통신망구축	
			IoT통신망구축	
			공공안전통신망구축	추가/정비
		통신서비스	유선설비접속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정비
			부가네트워크서비스	
			전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콘텐츠사용자서비스	
			콘텐츠네트워크서비스	
			무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호출메시징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특수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지원서비스	
			부가통신응용중계서비스	
			특수부가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디지털비지니스지원서비스	
			실감형통신서비스	
		실감형콘텐츠제작	가상현실콘텐츠제작	
			실감콘텐츠촬영	
			증강현실(AR)콘텐츠제작	추가/정비
	방송기술	방송제작기술	중계방송	
			방송품질관리	
		방송플랫폼기술	라디오방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지상파TV방송	
			지상파DMB	
			케이블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방송서비스	유무선통합서비스	
			방송시스템운영	
			정보시스템운영	
			방송기술지원서비스	
			방송장비설치유지보수	
식품가공	2	4	21	
	식품가공	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두류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유제품가공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김치·반찬가공	
			면류식품가공	
			곡류・서류・견과류가공	
			음료주류가공	
			식품가공연구개발	
			식품품질관리	
		식품저장	수산식품저장	
			농산식품저장	
			축산식품저장	
		식품유통	수산식품유통	
			농산식품유통	
			축산식품유통	
	제과·제빵・떡제조	제과·제빵・떡제조	제과	정비
			제빵	정비
			떡제조	
			한과제조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25	
	인쇄・출판	출판	출판기획	
			편집디자인	정비
			편집	정비
			제작・공정관리	
		인쇄	프리프레스	
			평판인쇄	
			특수인쇄	정비
			후가공	
			간판디자인·제작·설치	
	공예	공예	칠공예	정비
			도자공예	
			석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가구제작	정비
			섬유공예	정비
			나전칠기	
			단위화훼장식	
			공간화훼장식	
		귀금속・보석	귀금속가공	
			귀금속품위감정	
			보석가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보석감정	
			보석디자인	
			주얼리마케팅	
환경·에너지·안전	6	18	55	
	산업환경	수질관리	수질오염분석	
			수질공정관리	
			수질환경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관리	
			온실가스관리	
			기상기술관리	
			기후변화적응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계 · 시공	
			폐기물관리	
		소음진동관리	소음진동관리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토양·지하수관리	지하수관리	
			토양관리	
	환경보건	환경보건관리	산업환경보건	
			실내공기질관리	
			위해성관리	
	자연환경	생태복원 · 관리	생태복원	
			생태관리	
	환경서비스	환경경영	환경컨설팅	
			환경시설운영	
			환경관리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분석	
	에너지·자원	광산조사·탐사	광산지질조사	
			지구물리·화학탐사	
			석유시추	
			광물시추	
		광물 · 석유자원개발·생산	광물자원개발·생산	
			석유자원개발·생산	
			자원관리	
		광산환경관리	광해조사	
			광해복원	
		광산보안	광산보안관리	
			화약류관리	
		신재생에너지생산	태양광에너지생산	
			태양열에너지생산	
			연료전지에너지생산	
			바이오에너지생산	
			해양에너지생산	
			풍력에너지생산	
			폐자원에너지생산	
			지열에너지생산·활용	
		에너지관리	에너지절약서비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운영관리	추가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화공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방사선측정평가	
			원자력발전소 해체방사성폐기물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보건관리	
			근로자작업환경관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정비
농림어업	4	12	52	
	농업	작물재배	수도작재배	
			전작재배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버섯재배	
			특용작물재배	
			시설원예	
			유기재배	
		종자생산・유통	종자계획	
			육종	
			종자생산	
			종자유통보급	
		농촌개발	농촌체험상품개발	
			농촌체험시설운영	
			농업환경개선	
			농산물품질관리	
	축산	축산자원개발	사료생산	
			종축	
			동물용의약품제조	
			수의서비스	
			수의보조	
			애완동물미용	정비
			말 이용	
			반려동물행동교정	추가/정비
		사육관리	젖소사육	
			돼지사육	
			가금사육	
			한우사육	
			말사육	
			곤충사육	정비
	임업	산림자원조성	임업종묘	
			산림조성	정비
		산림관리	산림개발	
			산림보호	
		임산물생산・가공	임산물생산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수산	어업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양식	해면양식	
			수산종묘생산	
			내수면양식	
			스마트양식	추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조성	
			수산질병관리	
			염생산	
		어촌개발	어촌체험상품개발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업환경개선	

2) 훈련직종별 훈련기준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 ‘공지사항 – NCS 기반 훈련 기준 조정 공고’)에 게재

6. 숙련기술장려 사업현황

가. 연도별 전국기능경기대회 현황

연 도	대회별	실시직종	참가인원 (명)	입 상 자				개최장소
				계	1 위	2 위	3 위	
’08	43	50	1,833	265	51	87	127	경북
’09	44	55	2,097	295	57	98	140	광주
’10	45	56	2,151	312	59	104	149	인천
’11	46	48	1,896	272	51	89	132	충북
’12	47	48	1,876	271	51	90	130	대구
’13	48	48	1,884	275	51	91	133	강원
’14	49	48	1,884	276	51	92	133	경기
’15	50	49	1,928	285	53	97	135	울산
’16	51	49	1,916	282	53	93	136	서울
’17	52	50	1,901	282	54	94	134	제주
’18	53	50	1,845	284	53	97	134	전남
’19	54	50	1,847	288	53	95	140	부산

나. 연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 현황

연 도	실시직종	참가인원	입 상 자			
			계	1위	2위	3위
’08	50	7,877	1,930	649	651	630
’09	55	8,905	2,166	727	728	711
’10	56	9,878	2,225	747	750	728
’11	48	9,034	1,958	658	658	642
’12	48	8,825	1,929	647	651	631
’13	48	8,468	1,951	656	660	635
’14	48	8,352	1,967	662	658	647
’15	49	8,271	2,014	672	681	661
’16	49	7,593	2,004	671	670	663
’17	50	6,755	1,997	676	668	653
’18	50	6,172	1,953	660	656	637
’19	50	5,758	1,943	658	650	635

다. 연도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현황

(단위 : 개, 명)

연 도	대회횟수	파견선수	입 상 현 황				종합순위	개 최 국
			계	금	은	동		
계		997	580	311	154	115		
’67	16	9	5	2	1	2	6	스페인
’68	17	15	8	4	4	-	3	스위스
’69	18	17	8	2	5	1	3	벨기에
’70	19	29	13	4	4	5	2	일본
’71	20	26	11	3	8	-	4	스페인
’73	21	18	12	6	4	2	2	서독
’75	22	25	19	8	6	5	2	스페인
’77	23	28	21	12	4	5	1	네덜란드
’78	24	31	31	22	6	3	1	한국
’79	25	33	23	17	5	1	1	아일랜드
’81	26	31	24	15	6	3	1	미국
’83	27	32	20	15	2	3	1	오스트리아
’85	28	33	24	15	6	3	1	일본
’88	29	34	21	12	6	3	1	오스트레일리아
’89	30	32	16	11	2	3	1	영국
’91	31	32	18	13	2	3	1	네덜란드
’93	32	32	20	12	3	5	2	대만
’95	33	33	18	10	5	3	1	프랑스
’97	34	35	17	10	3	4	1	스위스
’99	35	36	16	7	7	2	1	캐나다
’01	36	39	32	20	5	7	1	한국
’03	37	39	25	11	6	8	1	스위스
’05	38	39	16	3	8	5	2	핀란드
’07	39	47	27	11	10	6	1	일본
’09	40	45	23	13	5	5	1	캐나다
’11	41	43	25	13	5	7	1	영국
’13	42	41	23	12	5	6	1	독일
’15	43	45	25	13	7	5	1	브라질
’17	44	46	24	8	8	8	2	아랍에미리트
’19	45	52	15	7	6	2	3	러시아

라. 대한민국명장 ·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선정

(단위 : 명, 개소)

구 분 / 연 도	우수숙련기술자 (구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우수지도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구 "기능 장 려 우수사업체")
	우수숙련기술자	우수산업기술인			
'05	99	30	5	23	3
'06	100	30	5	17	1
'07	100	-	7	12	1
'08	100	-	7	14	-
'09	100	-	4	12	-
'10	100	-	10	21	-
'11	22	-	-	24	-
'12	49	-	-	27	1
'13	50	-	-	23	1
'14	50	-	-	17	1
'15	50	-	-	17	1
'16	50	-	-	11	1
'17	47	-	-	11	4
'18	66	-	-	7	2
'19	59	–	–	6	1

※ 우수지도자는 '11년도 폐지

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단위 : 명, 천원)

구 분 / 연 도	지 급 인 원	지 급 액
'05	606	1,392,680
'06	645	1,632,400
'07	656	1,823,520
'08	676	2,077,400
'09	716	2,225,030
'10	732	2,307,770
'11	764	4,032,720
'12	761	4,072,384
'13	785	4,330,211
'14	850	5,531,697
'15	865	5,726,013
'16	889	5,863,829
'17	912	6,038,232
'18	903	6,054,461
'19	921	6,235,351

※ 지급대상 :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Ⅲ 관 련 자 료

1. 직업능력개발 연혁 ····· 131
2. 직업능력개발 조직 ····· 138
3.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 주요변천 현황 ···· 142
4.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 ····· 178
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 186
6. 직업능력개발관련 조사 현황 ····· 187

1. 직업능력개발 연혁

○ 1967. 1. 16 직업훈련법 제정(법률 제1880호)
○ 1968. 6. 25 중앙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3490호 UNDP 지원)
○ 1971. 12. 16 한독부산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5860호 독일정부지원)
○ 1973. 2. 9 정수직업훈련원 설립
○ 1973. 3. 13 직업훈련법 개정(법률 제2606호)
○ 1973. 10. 11 춘천·대구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6895호 ADB 차관)
○ 1973. 12. 31 국가기술자격법 제정(법률 제2672호)
○ 1974. 12. 26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법률 제2741호)
○ 1975. 4. 28 인천·광주직업훈련원 설립(대통령령 제7607호 ADB 차관)
○ 1976. 8. 13 창원직업훈련원 설립(조약 제581호, 벨지움정부 지원)
○ 1976. 10. 15 대전직업훈련원 설립(조약 제569호)
○ 1976. 12. 31 성남직업훈련원 설립
직업훈련기본법 제정(법률 제2973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정(법률 제2974호)
○ 1977. 4. 10 직업훈련법인 청주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7. 4. 12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령 제8535호)
○ 1977. 4. 21 직업훈련법인 전주·진주·구미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7. 4. 27 인천·광주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5. 4 한독부산·춘천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5. 10 성남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5. 20 직업훈련법인 순천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7. 5. 31 대전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6. 24 정수·창원직업훈련원을 직업훈련법인체로 개편
○ 1977. 7. 23 기능대학법 제정(법률 제3009호)
○ 1978. 3. 30 직업훈련법인 원주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8. 4. 3 직업훈련법인 부산·포항·울산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3. 5 직업훈련법인 이리·김천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3. 12 직업훈련법인 목포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3. 16 직업훈련법인 홍성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79. 12. 28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214호)
○ 1980. 3. 4 직업훈련법인 영주·충주직업훈련원 설립(IBRD 차관)
○ 1981. 4. 8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422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개정(법률 제3422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3422호)
○ 1981. 12. 3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제정(법률 제3506호)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507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개정(법률 제3508호)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3509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3510호)
○ 1982. 3. 18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설립
한국기술검정공단, 24개 공법인훈련원,
창원기능대학, 직업훈련연구소를 통합운영
○ 1982. 6. 19 중앙직업훈련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
○ 1982. 11. 17 24개 기능개발센터 발족
○ 1983. 12. 20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3664호)
○ 1983. 12. 3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3712호)
○ 1985. 1. 9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훈령 제166호)
○ 1986. 5. 9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3813호)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3814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개정(법률 제3815호)
○ 1987. 7. 10 7개 농민교육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
○ 1988. 1. 1 전남 농민교육원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통합
○ 1989. 4. 1 기능장려법 제정(법률 제4123호)
○ 1989. 7. 7 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 설립
○ 1991. 1. 14 기능장려법 개정(법률 제4329호)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4330호)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4331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4332호)
○ 1991. 3. 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일산직업훈련원 설립
○ 1991. 3. 1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안성직업훈련원 설립

○ 1991. 4. 15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 1991. 9.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릉직업훈련원 설립
○ 1991. 12. 31 일산직업훈련원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
○ 1992. 3. 1 인천기능대학 설립
한국기술교육대학 설립
○ 1993. 12. 27 직업훈련기본법 개정(법률 제4639호)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4638호)
○ 1994. 4.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상공회의소로 이관
○ 1994. 7.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6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
(기타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명칭 변경)
○ 1995. 3. 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개 직업전문학교(부산, 청주, 전주, 구미)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1995. 12. 1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개 직업전문학교(정수, 춘천, 홍성, 목포)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1995. 12. 29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5102호)
○ 1996. 12. 3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3개 직업전문학교(고창, 거창, 대구)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대구직업전문학교 → 섬유기능대학
○ 1997. 3. 27 자격기본법 제정(법률 제531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법률 제5315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법률 제5316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5318호)
○ 1997. 10.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
○ 1997. 12. 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법률 제5474호)으로 직업훈련기본법 폐지(99.1.1 시행), 기능대학법 개정(법률 제5475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법률 제5476호)
○ 1998. 1.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칭 변경
○ 1998. 2. 5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 설립
○ 1999. 1. 1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을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명칭 변경
○ 1999.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제천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5733호) 제정, 공포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99.3.18)

○ 1999. 2. 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법률 제5880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 법률 제정(법률 제5882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5890호)

○ 1999. 3. 1 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을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명칭 변경

○ 1999. 5. 1 서울시립기능대학을 서울시로부터 인수하여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하 서울정수기능대학 강서분교로 편입

○ 2000.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울산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 2000. 3. 7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를 정선직업전문학교로 개편 및 산하 4개 지방사무소 신설
(부산북부, 강릉, 포항, 목포)

○ 2000. 11. 30 항공기능대학 설립

○ 2001. 12. 6 아산정보기능대학 설립

○ 2002. 12. 10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설립

○ 2003. 5. 24 부산디지털정보기능대학 → 부산기능대학(교명변경)

○ 2005. 7. 15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안" 수립,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통합 등 추진

○ 2005. 11. 28 바이오기능대학 설립 인가

○ 2005. 12. 30 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 제7824호) 및 기능대학법 개정
인력공단의 훈련기능 폐지, 직업능력개발 시설을 기능대학으로 이관

○ 2006. 3. 1 기능대학(24개)과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를 통폐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출범(11개 대학 43개 캠퍼스), 2개(충남, 충북) 직업전문학교 폐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평생능력개발 전문기관으로 기능 개편

○ 2006. 3. 31 한국고용정보원(구, 중앙고용정보원) 별도 법인화

○ 2006. 9. 1 폴리텍대학 3개 캠퍼스(강원, 전남, 한백창원)를 인근 캠퍼스(춘천, 광주, 창원)와 통합 운영(11개 대학 40개 캠퍼스)

○ 2008. 1. 1 국가전문자격시험 통합관리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신설

○ 2008. 3. 6 학교법인 기능대학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 명칭 변경

○ 2008. 9.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운영(대구 · 광주지역)
○ 2008. 12.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등 개정
○ 2009. 3. 1 고용노동연수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통합
○ 2009. 3. 1 「지자체협약기관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2개 캠퍼스(정선, 남원) 폐지(11개 대학 38개 캠퍼스)
○ 2009. 3. 1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실시
○ 2009. 6. 1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 설치 · 운영
○ 2010. 3. 1 「지자체협약기관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3개 캠퍼스(제천, 김천, 거창) 폐지(11개 대학 35개 캠퍼스)
○ 2010. 3. 16 국가가격시험 출제발간 센터 준공
○ 2010. 4. 4 한국직업방송 개국
○ 2010. 5. 3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033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0338호)
○ 2010. 9. 6 직업능력지식포털 개통
○ 2010. 9. 2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별칭 공모(내일배움카드제)
○ 2011. 2. 28 「지자체협약기관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고창캠퍼스 폐지 (11개 대학 34개 캠퍼스)
○ 2011. 9. 15 개인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합
○ 2012. 2.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1272호)
○ 2012. 3. 2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개교
○ 2012. 9. 25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3. 5. 21 제1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운영위원회 개최
○ 2013. 9. 10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 2013. 10. 인천,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14개 지역에 지역인자위 설치
○ 2013. 10. 10 5개 사업주단체, 11개 대기업에서 일학습병행제로 양성된 인력의 스펙초월 채용, 승진·임금 등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약속(MOU)
○ 2014. 3.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 2014. 4. 1 노사정이 함께하는 지역 · 산업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협력 선언
○ 2014. 4 고용노동부 內 일학습병행팀 구성
○ 2014. 5. 20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2625호)
○ 2014. 7. 21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학습모듈 통합 포털사이트(www.ncs.go.kr) 구축

○ 2014. 9. 직업능력개발 혁신 실천 3개년 계획 수립
○ 2014.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출범
○ 2014. 12. 19 과정평가형 자격 적용 종목 선정
○ 2015.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혁신국, 일학습지원국, 지역·산업별지원단 신설
○ 2015. 1. 20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3046호)
○ 2015. 3. 12 취업준비생을 위한 능력중심채용 사이트(onspec.ncs.go.kr) 개설
○ 2015. 3. 24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MOU 체결
○ 2015. 4. 11개 산업별 인자위 출범(정보기술,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기계, 화학 등)
○ 2015. 4.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 2015. 5. 15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설립
○ 2015. 6. 2개 산업별 인자위 출범(조선·해양, 디자인·문화콘텐츠)
○ 2015. 7. 경북 지역인자위 출범(기존 경북 북부와 경북 동부가 통합), 서울 지역인자위 출범(총 16개 지역인자위 설치)
○ 2015. 8. 일학습병행정책과 신설
○ 2015. 8. 1 훈련기관 품질관리를 위한 훈련기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 2015. 10. 6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5. 11. 코리아텍 산학협력관 개관
○ 2016.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구미·군산 일학습지원센터 신설
○ 2016. 1. 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3902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3899호)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3907호)
○ 2016. 3. 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16. 5. 4 과정평가형 자격 기업운영 확산 MOU 체결(현대자동차 등 6개사)
○ 2016. 6. 2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2016. 8. 8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군 교육·훈련과정 연계 MOU 체결(육군본부)
○ 2016. 8. 18 산학일체형도제학교 확대·발전 방안 수립·발표
○ 2016. 9. 4개 산업별 인자위 출범(상담, 관광·레저, 음식서비스, 건설)
○ 2016. 12. 27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법률 제14497호)
○ 2017.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성·진주 일학습지원센터 신설

○ 2017. 2. 13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민간 훈련기관·훈련과정 선정
○ 2017. 2. 22 기술융합형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출범식
○ 2017. 3. 8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 2017. 3. 27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포털 HRD-Net 서비스 정식 개시
○ 2017. 3. 28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발표
○ 2017. 5. 3 대한민국명장 선정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발표
○ 2017. 7. 5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 2017. 12. 20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8. 3. 22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
○ 2018. 5. 9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 개소식
○ 2018. 7. 4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8. 7. 25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발표
○ 2018. 11. 23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2018. 12. 19 직업능력개발 혁신 TF 구성 · 운영
○ 2019. 3. 28 과정평가형 자격 혁신방안 발표
○ 2019. 4. 10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발표
○ 2019. 4. 2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 2019. 7. 1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19. 8. 2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6559호)
○ 2019. 10.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 개통
○ 2020. 1.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2020. 2. 세종 지역인자위 출범(기존 대전·세종 지역인자위에서 분리)
○ 2020. 3. 1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0. 3.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7186호)
숙련기술장려법 개정(법률 제17188호)
○ 2020. 4. 환경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총 18개 산업별 인자위 설치)
○ 2020. 6. 1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석유화학공정기술원 개원

2. 직업능력개발 조직

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인적자원개발과	일학습병행정책과
▲ 직업능력개발 정책 기획 및 수립 ▲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제·개정 ▲ 공공훈련기관 운영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 NCS 개발·보완 ▲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 개편 -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 숙련기술장려 - 명장, 기능한국인 등 선정·지원 - 국제기능올림픽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운영 ▲ 훈련 교·강사 양성 ▲ 영세자영업자, 특고 대상 훈련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일학습병행 총괄·운영 -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 신규 입직자 일학습병행 - P-TECH ▲ 사업주훈련 ▲ 현장기반훈련 지원

○ (본부)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평가과, 인적자원개발과, 일학습병행정책과

○ (지방) 86개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

○ 직업능력정책국 인원 현황(정원)

('20.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 분	일 반 직(별정직 포함)						기타
	합계	고위 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 이하	사무 운영직	
직업능력정책국	46	1	4	23	17	1	3*
직업능력정책과	13	1	1	5	5	1	1
직업능력평가과	11	-	1	7	3	-	1
인적자원개발과	12	-	1	6	5	-	-
일학습병행정책과	10	-	1	5	4	-	1

※ 기타: 조사・연구위원 3명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 직

- 본　　부 : 이사장, 1감사, 3이사, 1본부, 13실・국(56부)
- 부설기관 : 2원(8부)
- 소속기관 : 6지역본부, 21지사(107부), 16국외EPS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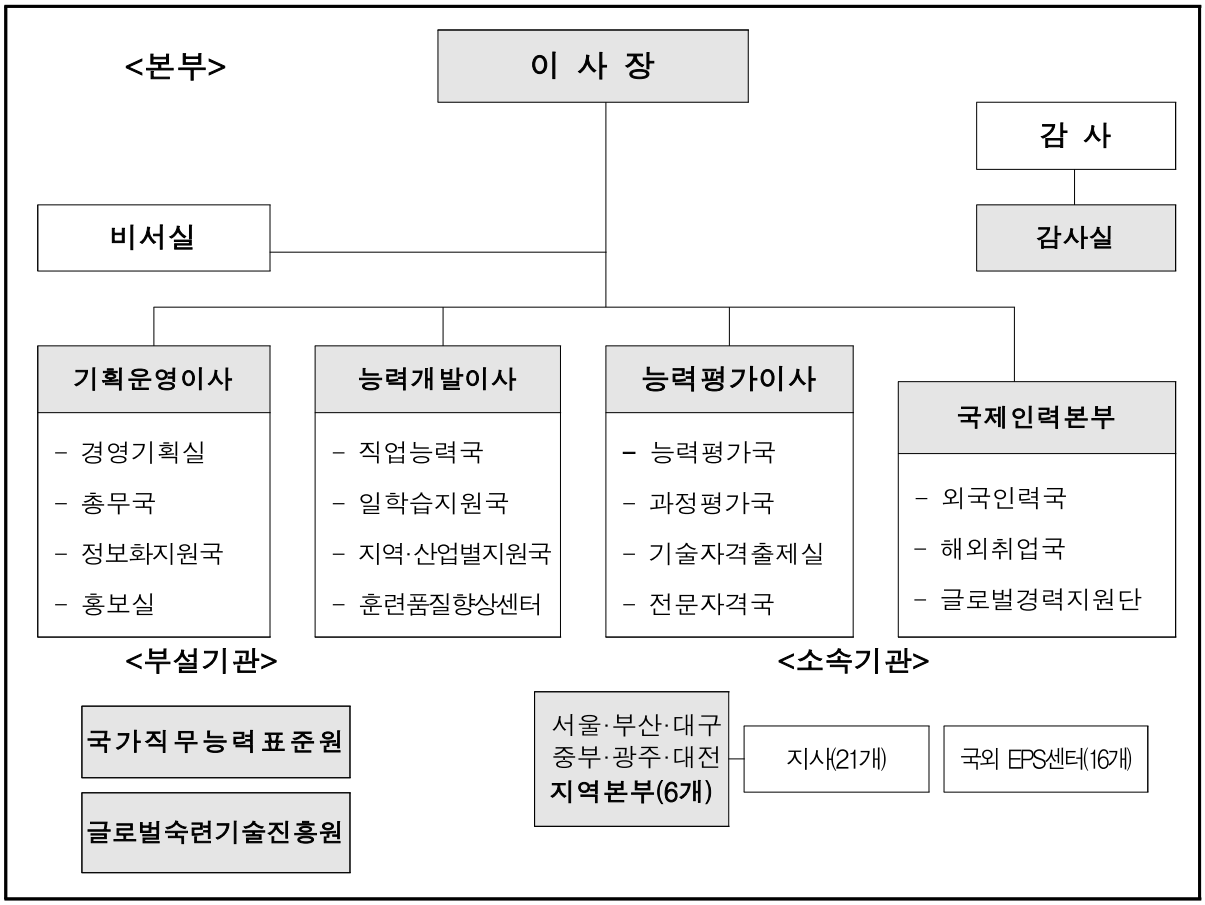

○ 정 원

('20.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별정직	일반직	출제 연구직	상시 검정직	공무직
정원	1,823.2	5	8	1,358	105	115	232.2

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법인(본부): 이사장, 2이사, 3국, 1단, 2실, 1연구소, 1인재원, 1신기술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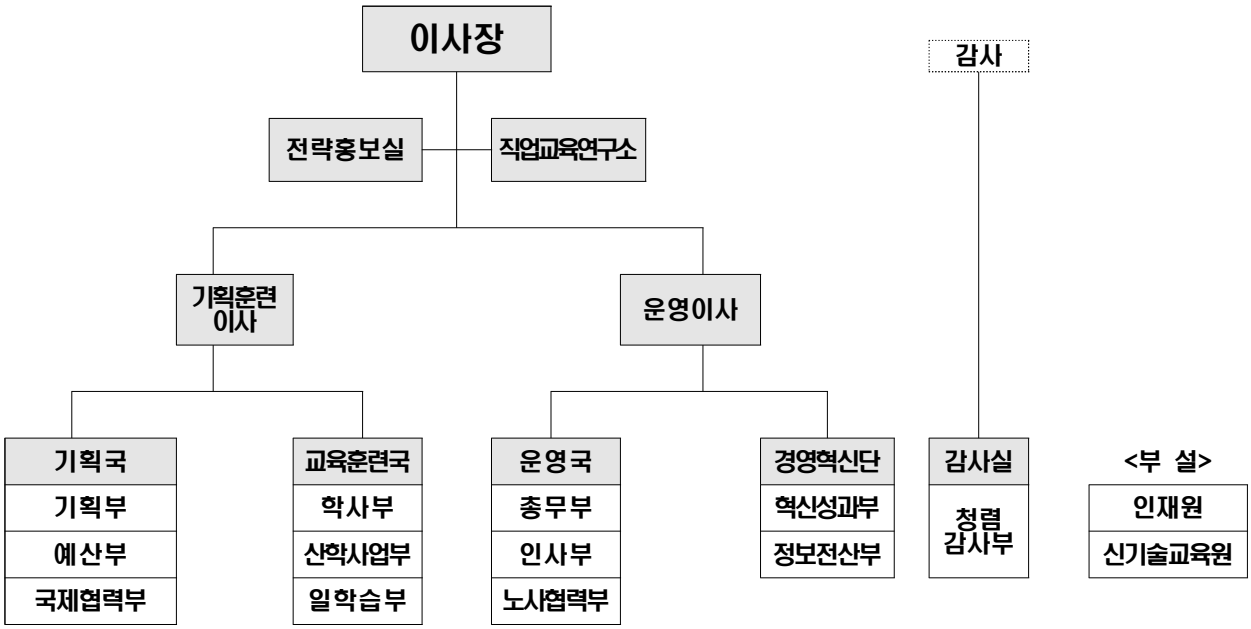

○ 소속학교: 8대학(35캠퍼스), 3기술교육원, 다솜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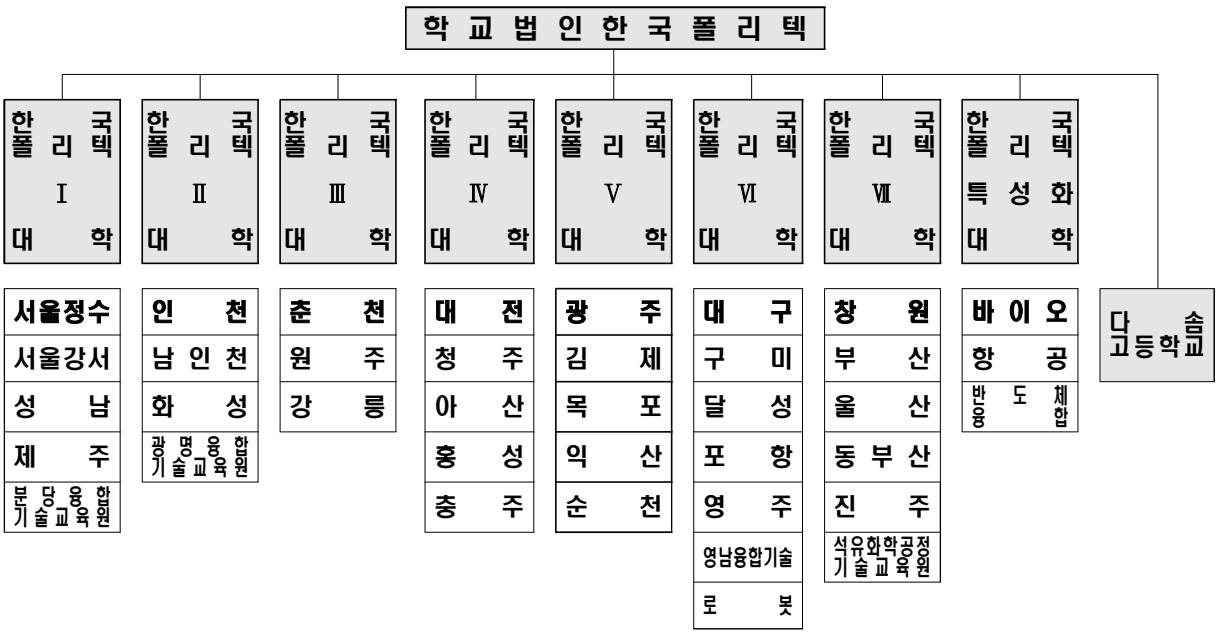

○ 정 원

('20.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학장	지역 대학장	교장	교감	대학 교원	중등 교사	일반직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	무기 계약직
정원	2,722	3	8	29	1	1	1,239	28	471	115	827

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대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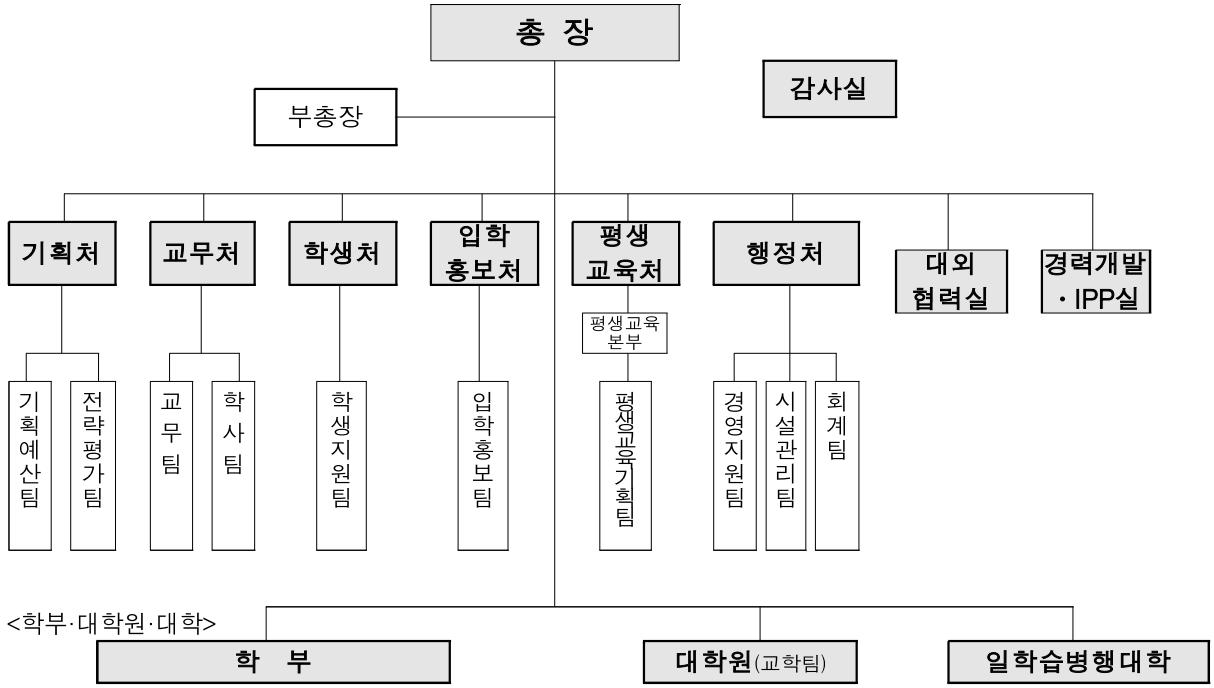

○ 부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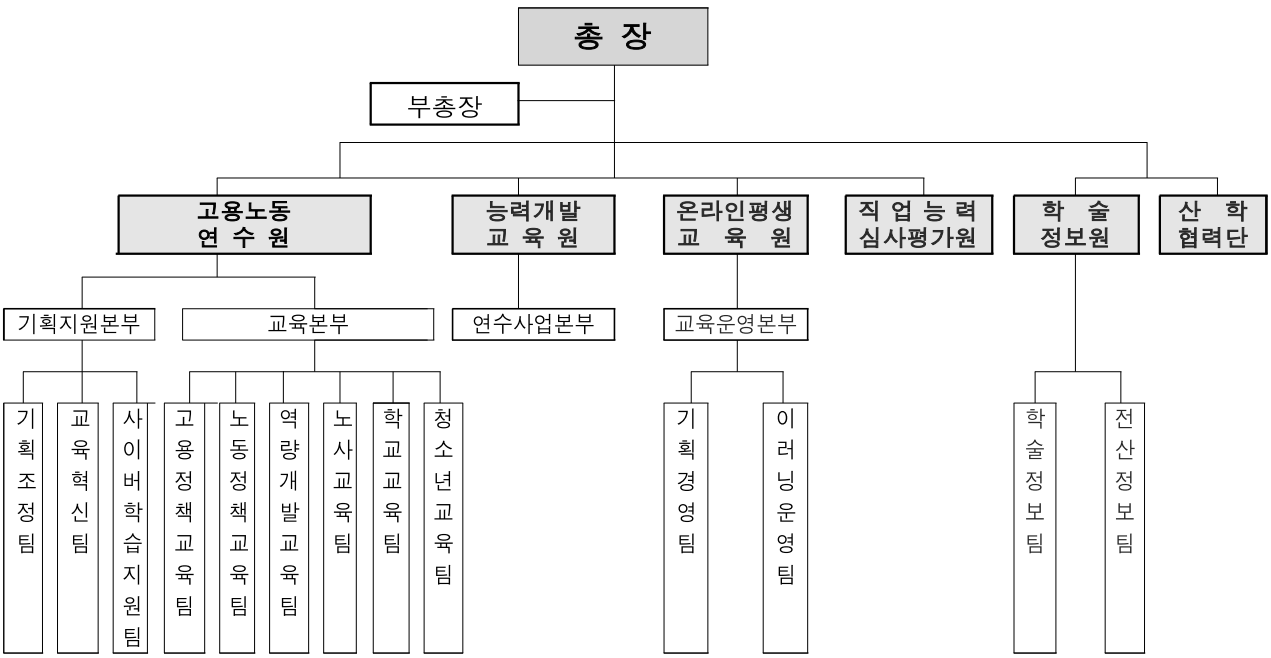

○ 인력 정원 ('20. 7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총장	교수	기술연구원	직원	공무직
정원	711.6	1	225	48	293	144.6

3.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 주요변천 현황

법 령 별		주 요 내 용
직 업 훈 련 법	'67. 1. 16 제정 법률 제1880호	○ 근로기준법 · 산업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시해오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하여 국가적인 정식제도로 제정
	'73. 3. 13 개정 법률 제2606호	○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교사훈련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제정법을 보완
직업훈련에관한 특 별 조 치 법	'74. 12. 26 제정 법률 제2741호	○ 일정규모이상 사업주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직업훈련 실시의무제 규정
직 업 훈 련 기 본 법	'76. 12. 31 제정 법률 제2973호	○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 · 폐합 ○ 직업훈련분담금제를 설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
	'79. 12. 28 개정 법률 제3214호	○ 직업안정촉진을 위해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 양성훈련 외에 전적훈련도 의무에 포함
	'81. 4. 8 개정 법률 제3422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률개정 (노동청 → 노동부)
	'81. 12. 31 개정 법률 제3507호	○ 직업훈련의 원칙에 여성 · 준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 포함 ○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직업교사외에 사무 · 서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까지 확대 ○ 전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재해위로금등의 지급근거 규정 ○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
	'86. 5. 9 개정 법률 제3814호	○ 훈련의무부과기준의 변경 ○ 훈련의무인정범위 확대 ○ 협동훈련제도의 법적근거 신설 ○ 분담금 자진신고 · 납부제도 도입
	'91. 1. 14 개정 법률 제4331호	○ 직업훈련과정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능력향상훈련체제로 개편 ○ 직업훈련방법은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체훈련, 현장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으로 개편 ○ 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산업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우선적 실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분담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설

법 령 별		주 요 내 용
	'93. 12. 27 개정 법률 제4639호	○ 향상·재훈련 또는 단기양성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이 자체특성에 맞는 교재를 검정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편찬·사용 ○ 신기술·신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가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 ○ 직업훈련법인의 보호 · 육성시책 강구 ○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등 직업훈련시설의 명칭 사용 체계화
	'97. 12. 24 개정 법률 제4639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으로 직업훈련기본법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97. 12. 24 제정 법률 제5474호	○ 직업훈련의무제등 각종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하여 민간훈련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영리법인의 훈련사업에의 참여, 훈련기관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으로 훈련시장에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민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 ○ 공공훈련을 수요자중심체제로 전환, 기업·근로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민간훈련에 대한 기술·정보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실직자, 중고령자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훈련의 역할을 강화 ○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향상·전직훈련등 다양한 과정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생산직 위주의 기능훈련을 서비스직 분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
	'01. 3. 28 개정 법률 제6455호	○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들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훈련비용 지원등에 반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04. 12. 31 개정 법률 제7298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개정 ○ 훈련의 취약계층(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구성되는 우선선정 직종의 선정기준 및 훈련대상등 근거 마련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교육훈련실시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06. 12. 21 개정 법률 제8073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현행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연장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7. 1. 26 개정 법률 제829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 ○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훈련시설 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완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해산절차 개선
	'07. 12. 27 개정 법률 제881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
	'08. 12. 31 개정 법률 제9316호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에 대한 서류 보존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10. 5. 31 개정 법률 제10337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확화하고, 기본계획수립 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함
	'12. 2. 1 개정 법률 제11272호	○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함 ○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12. 6. 1 개정 법률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작성·보존 근거 마련
	'13. 3. 23 개정 법률 제11690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수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4. 5. 20 개정 법률 제12627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실용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
	'15. 1. 20 개정 법률 제13042호	○ 사업주훈련 우대 대상 사업에 준고령자/고령자가 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추가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수정 (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16. 1. 27 개정 법률 제13902호	○ 능력중심사회 구축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 지역·산업계 주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역량체계 (훈련·자격·학력 연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 추진 근거 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리를 체계화하고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정훈련을 방지 -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도록 함 ○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 관련 훈련시설에 대한 승인을 삭제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으로 일원화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에서 「건축법」상 용도 적합요건을 폐지하고 「건축법」 등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취소하도록 함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금지 대상 축소 ○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 기능대학의 부설학교 운영 근거 마련 - 기능대학 학점인정 범위 및 초빙교원 임용대상 확대 - 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20. 3. 31 개정 법률 제17186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경제적이익등 제공 금지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관계자 연대책임 ○ 경제적이익 제공 금지 위반시 명단공표 ○ 직업능력계좌 발급시 신청인의 직무역량 진단 및 훈련과정 안내 등을 실시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시설·장비 및 경력 요건 변경 시 신고 ○ 훈련강사 등 직업훈련교사외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보수교육 참여 의무화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01. 7. 30 개정 대통령령 제17327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실업자훈련이나 재직자훈련 등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훈련인원이 총훈련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과 기준훈련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당해 기준훈련직종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에 대하여 훈련기준을 정함 - 훈련기준에 훈련목표, 교과목 및 그 내용, 시설 및 장비, 훈련기간 및 시간(3월 이상, 350시간 이상), 훈련방법, 훈련교사, 적용기간등을 포함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훈련기법 및 매체개발 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조사연구사업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중 출연재산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 사업주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함 ○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훈련기간이 3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우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방법 등에 따라 훈련과정의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비 추가지원, 실업자훈련의 우선 실시,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 비용의 우선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05. 6. 30 개정 대통령령 제18911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표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제5조) ○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시간 요건을 현행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 자비훈련생이 훈련비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별 반환금액을 정함 ○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 중 정부지원 훈련규모 비용을 삭제하고 시설, 인력, 장비 등 훈련실시 능력으로 개편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7. 4. 26 개정 대통령령 제20028호	○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부정수급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함 ○ 해산훈련법인의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규정
	'08. 11. 11 개정 대통령령 제21111호	○ 훈련을 받은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춘 사업주단체의 경우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실시경력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된 훈련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09. 3. 31 개정 대통령령 제21398호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하고,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에 노동부장관이 그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훈련수요를 맞출 수 있는 훈련과정을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훈련과정의 인정요건과 훈련절차에 대하여 직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10. 8. 25 개정 대통령령 제22356호	○ 대한상공회의소의 법적지위를 민간훈련기관으로 명확화 ○ 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선정·변경토록 하고, 훈련기준을 적용하되 훈련기준이 없거나 산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법 시행령 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고 법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 등 변경
	'11. 4. 6 개정 대통령령 제22890호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11.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3467호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추가

법 령 별		주 요 내 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으로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 등 산업계 요구, 채용예정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훈련기관의 훈련실시능력 및 훈련성과 등 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
	'12. 6. 5 개정 대통령령 제23839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에 필요한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 기준을 마련 ○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에게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
	'13. 3. 23 개정 대통령령 제24447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수정
	'14. 12. 9 개정 대통령령 제2584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도중 근로자가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 훈련비 반환 금액을 일할금액으로 변경 ○ 훈련비의 반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15.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6808호	○ 사업주나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이 실시하는 원격훈련이나 원격이 포함된 혼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간 요건을 달리 정하여 인정 ○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직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없앰
	'16. 7. 26 개정 대통령령 제27393호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 -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대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과 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 사업주,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 또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함 -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解囑) 사유를 정함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의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훈련실시 능력 및 훈련성과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함
	’17. 3. 27 개정 대통령령 제27968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기간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또는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학위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 국가기술자격증 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이 있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원활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간을 각각 1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의 형평을 도모
	’18. 12. 24 개정 대통령령 제29421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해제
	’19. 4. 23 개정 대통령령 제29708호	○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를 하거나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 기능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능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19. 7. 9 개정 대통령령 제29972호	○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
	’20. 3. 3 개정 대통령령 제30509호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20. 7. 14 개정 대통령령 제30850호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일부 지정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확인 업무를 위해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중 ‘대표자 성명’에 법인명칭 포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01. 11. 5 개정 노동부령 제178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 훈련시설의 건축물대장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훈련시설의 평면도 -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의 훈련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지정일로부터 1년마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실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 영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 훈련대상자(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구직등록)의 기준을 정함 ○ 법 제1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설정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임원의 요건을 정함 - 임원 중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50/100 미만이어야 하고, 감사는 임원과 친족관계가 없어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 시정명령 및 인정 또는 지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설정함 ○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변경신청기한을 훈련개시 14일전에서 7일 전까지로 완화함 ○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을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완화함
	'05. 7. 1 개정 노동부령 제225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기간의 완화(안 제8조) - 훈련과정의 인정신청기간은 훈련개시 14일 전에서 훈련개시 7일전으로, 변경인정 신청기간은 변경예정일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분기준 (안 제17조 및 별표 4)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 ○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23조 내지 제27조)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7. 5. 1 개정 노동부령 제273호	○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규정 ○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구성 규정
	'09. 3. 10 개정 노동부령 제315호	○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09. 4. 1 개정 노동부령 제320호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 등이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09. 5. 12 개정 노동부령 제32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시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처리를 활성화 및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자적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함
	'10. 8.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5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11. 3. 1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행한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 제한기간을 차등화하고,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정수급 금액과 규모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차등화 함
	'11. 12.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3호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기회 확대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의 훈련과정 인정 권한을 현재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2. 6. 8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57호	○ 실업계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16. 7. 26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62호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승인취소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회 위반 시부터 승인취소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7. 3. 27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8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사람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을 총 74일 이내에서 총 60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고 ○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해당 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정비
	'18. 12. 27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34호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일부개정(제30조제2항 삭제)
	'19. 4. 2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5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신청자의 입금계좌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19. 12. 27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75호	○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종전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하던 것을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으로 하여 지원 기간과 한도 상향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의 발급 횟수 제한삭제 ○ 법령을 위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 등에 대한 위탁·인정제한의 범위를 해당 과정에서 해당 직종으로 변경 ○ 지정직업훈련시설 폐업 시 지정서의 반납기간을 30일로 연장
	'20. 7. 14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정신청 시 대표자 성명 외에 법인의 명칭을 함께 적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등 정비
직업훈련촉진기금법	'76. 12. 31 제정 법률 제2974호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81. 12. 31 개정 법률 제3815호	○ 기금의 용도 확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
	'86. 5. 9 개정 법률 제3815호	○ 기금의 용도 확대(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법 령 별		주 요 내 용
직업훈련촉진기금법폐지법률	'99. 2. 8 제정 법률 제5882호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 ○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승계
고용보험법	'93. 12. 27 제정 법률 제4644호	○ 피보험자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96. 12. 30 개정 법률 제5226호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 신설 ○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기능·기술장려사업 등을 실시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98. 2. 20 개정 법률 제5514호	○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하거나 또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05. 12. 7 개정 법률 제7705호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 ○ 사업목적에서 경기불활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08. 3. 21 개정 법률 제8959호	○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
	'08. 12. 31 개정 법률 제9315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 실시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
	’11. 7. 21 개정 법률 제10895호	○ 50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적용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을 신설 ○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근로소득(보수)으로 변경 ○ 고용안정사업 또는 다른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수급 방지 등 근거 마련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특례규정 신설
	’13. 6. 4 개정 법률 제11864호	○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16. 12. 27 개정 법률 제14496호	○ 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 8. 27 개정 법률 제16557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고 용 보 험 법 시 행 령	’95. 4. 6 제정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96. 3. 9 개정 대통령령 제14935호	○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까지 확대 ○ 사업내직업훈련 승인·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
	’97. 5. 8 개정 대통령령 제15367호	○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장려금 지급 ○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 장비구입 비용 대부

법 령 별		주 요 내 용
	'97.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15587호	○ 수강장려금 지급대상을 50세 이상자외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예정자까지 확대
	'98. 2. 12 개정 대통령령 제15624호	○ '98. 7. 1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3사업 전면 확대
	'98. 10. 1 개정 대통령령 제15902호	○ 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99. 7. 1 개정 대통령령 제16464호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 사유확대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00.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7090호	○ 고용유지훈련 지원수준 상향조정 - 지급임금의 1/2～2/3 → 2/3～3/4 ○ 수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도산 · 폐업 등으로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근로자 → 비자발적이직예정자, 정보화기초과정수강 피보험자)
	'02.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7853호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액 상향조정(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 → 100분의 270)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 이상 → 14일 이상)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이직예정자 · 50세 이상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피보험자) ○ 능력개발비용 대부제도 신설
	'04. 2. 25 개정 대통령령 제18165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피보험자가 아닌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50인미만→300인미만, 50세이상→40세이상)
	'04. 10. 1 개정 대통령령 제18555호	○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150인미만→150인 미만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14일이상 60시간 이상→7일 이상 30시간 이상) ○ 교대제 적용받는자 지원 (기준외 훈련 80～100%→90～110%)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액 상향조정 (개산보험료의 270%→360%)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환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05. 6. 30 개정 대통령령 제18911호	○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한 지원 · 융자근거 마련 ○ 최소인정훈련시간을 3일 이상 20시간 이상에서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기업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 ○ 훈련시설 지정요건 훈련실적에서 인력 · 시설 · 장비 등 능력요건 중심으로 개편 ○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규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5. 10. 26 개정 대통령령 제19103호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요건에서 사업주 확인절차 폐지 ○ 사업주 및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과 학습조직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05.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19246호	○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추가 지원하고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책정 ○ 사업주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지원한도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06. 11. 23 개정 대통령령 제19738호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
	'08. 12. 3 개정 대통령령 제21152호	○ 훈련을 받는 자가 근로자능력개발계좌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 - 노동부장관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취업훈련을 받는 자의 훈련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자가 근로자능력개발계좌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09. 3. 12 개정 대통령령 제21348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대부 대상자 및 절차 등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의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이직한 실업자 중에서 소득수준,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도록 함
	'10.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22603호	○ 대기업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대체인력 고용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신설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일부 변경 - 이직예정자가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 이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40세 이상인 자 및 기간제 등 근로자를 삭제하며 임의가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명시
	'11. 9. 15 개정 대통령령 제23139호	○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영 제43조, 제44조, 제47조)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전직 지원 부분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흡수·통합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지원 부분을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흡수·통합
	'12. 1. 13 개정 대통령령 제23513호	○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규정 변경(제43조) - 개정법 시행 이후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6개월 이상 피보험기간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3. 4. 22 개정 대통령령 제24514호	○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13. 11. 20 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13. 12. 24 개정 대통령령 제25022호	○ 일정한 경우 임금·설치비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출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 ○ 고용촉진시설 지원 기준 구체화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을 통해 지원금 반환 명령 등의 실효성 확보
	'14.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25955호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15. 6. 30 개정 대통령령 제26368호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의 확대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전직 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을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돕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15. 8. 19 개정 대통령령 제26496호	○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5. 12. 4 개정 대통령령 제26690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훈련 지원수준 상향 근거 마련
	'16.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7738호	○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유급 휴가일수 및 훈련시간을 완화하여 유급휴가훈련 활용률을 제고 (7일 이상 유급휴가, 30시간 이상 훈련실시 → 5일 이상 유급휴가, 20시간 이상 훈련실시로 개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7. 6. 27 개정 대통령령 제28160호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하려는 경우 훈련비,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정함
	'18. 7. 3 개정 대통령령 제29026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제42조제4항제3호)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까지도 제외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9. 6. 25 개정 대통령령 제29913호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의 피보험자 등까지 확대
	'20. 6. 9 개정 대통령령 제30773호	○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5. 6. 12 제정 노동부령 제100호	○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95. 12. 30 개정 노동부령 제104호	○ 교육훈련계획서 제출기한을 훈련개시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96. 3. 9 개정 노동부령 제106호	○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교육훈련 등 계획의 신고시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일괄 제출하던 것을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제출 ○ 교육훈련기관 지정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됨에 따라 동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 당해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연도 1월까지, 나머지는 훈련 종료 후 1월 이내에 정산·제출
	'97. 6. 18 개정 노동부령 제117호	○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의 유경력 강사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지원기준을 정함 ○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통합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0. 4. 1 개정 노동부령 제161호	○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 구체화
	'01. 7. 23 개정 노동부령 제173호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훈련종류, 훈련대상자, 훈련방법,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노동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한도액을 상향 규정하고, 수강장려금의 지급제한 등을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강 신고서 폐지 ○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훈련실시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실시시 위탁계약 해지·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예규(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감액 및 미지급되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상향규정하고 훈련수당의 지급수준, 지급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유사행정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인력공단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대부대상자, 대부대상시설의 범위, 대부한도액, 대부결정의 취소 및 대부금의 반환 등 대부절차 및 비용대부요건을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함 ○ 정부위탁훈련의 대상자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탁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훈련실시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함
	'03. 1. 4 개정 노동부령 제188호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절차 등 신 ○ 능력개발 대부금 대부절차 등 신설
	'04. 10. 1 개정 노동부령 제212호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주말(토/일요일)에만 훈련과정 지원요건 완화 (2주이상 40시간이상 → 2주이상 20시간 이상)
	'05. 7. 1 개정 노동부령 제229호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신청절차 규정 ○ 인터넷원격훈련 요건을 2주 이상, 40시간 이상에서 8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06. 12. 1 개정 노동부령 제262호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훈련비 지원금액을 각각의 보험연도에 최대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훈련과정요건 규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0. 2. 9 개정 노동부령 제338호	○ 사업주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11. 1. 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7호	○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중 기간제 등 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에서 관련 조항 삭제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12. 1. 2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6호	○ 능력개발비용 대부대상자 선정 철회 근거 마련
	’13. 4. 24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81호	○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13. 12.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95호	○ 지원에 관한 적용례, 경과조치 보완을 통해 규칙개정을 통한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15. 12. 7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한 내용을 반영 - 시행규칙에 명시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규정 삭제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6. 7. 2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
	’18. 8. 3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에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19. 12. 3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규정 삭제 ○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정
	‘20. 4. 28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84호	○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요건 완화

법 령 별		주 요 내 용
국가기술자격법	'73. 12. 31 제정 법률 제2672호	○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도록 국가적인 정식제도로 제정
	'81. 12. 31 개정 법률 제3510호	○ 국가기술자격법 이관(과학기술처 → 노동부) ○ 기술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신설
	'83. 12. 20 개정 법률 제3664호	○ 서비스계 신설 ○ 보수교육제도 신설 ○ 갱신등록제도 신설
	'97. 3. 27 개정 법률 제5318호	○ 기술자격등급 단순화 ○ 국가와 민간기술자격의 연계체제 구축
	'99. 2. 8 개정 법률 제5890호	○ 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폐지 ○ 갱신등록규정 삭제
	'04. 2. 9 개정 법률 제7171호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계획 수립 ○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절차 개선 ○ 자격정지 처분기간의 상한선 명시 등
	'05. 12. 30 개정 법률 제7830호	○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07. 4. 27 개정 법률 제8406호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 ○ 검정업무 수탁기관 위탁 취소 절차 등 ○ 검정 인증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자격증 대여 알선자 처벌근거 마련
	'10. 5. 31 개정 법률 제10336호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산업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로 설정 ○ 주무부장관의 불법대여 조사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14. 5. 20 개정 법률 제12625호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근거마련
	'16. 1. 27 개정 법률 제13899호	○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시에도 자격취소가능 근거마련
	'16. 12. 27 개정 법률 제14497호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격인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일부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책심의회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 규정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규제 재검토기한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74. 10. 16 제정 대통령령 제7283호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76.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8357호	○ 검정시행을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일부 위탁
	'77.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8799호	○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위탁 자격종목 확대
	'79. 1. 6 개정 대통령령 제9283호	○ 의무검정의 권한 노동청장에 이관
	'79. 6. 22 개정 대통령령 제9509호	○ 기술자격 취소 · 정지시 한국기술검정공단에 통보

법 령 별		주 요 내 용
	'80.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10124호	○ 열관리기사 1급 등 일부종목 자격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함
	'82. 4. 29 개정 대통령령 제10802호	○ 사무관리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에 흡수하고 신설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위탁
	'83. 12. 20 개정 대통령령 제11281호	○ 검정응시자격에 학력과 경력의 조화 및 사무관리 분야 검정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
	'84. 11. 15 개정 대통령령 제11543호	○ 서비스계 신설 및 보수교육 실시시기, 방법 등 규정 ○ 사무관리분야의 기술자격취득시 등록에서 제외
	'87. 7. 1 개정 대통령령 제12195호	○ 금형, 교통기사 등 신설과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기능사 응시자격 부여
	'88. 12. 19 개정 대통령령 제12555호	○ 각종 서식란에 본적란 제외
	'89. 3. 27 개정 대통령령 제12668호	○ 화약류관리, 윤활관리 등 14종목 신설과 서비스계에 제과사 및 제빵사 종목 신설과 응시자격 부여
	'91. 10. 31 개정 대통령령 제13494호	○ 기술계의 분야를 21개분야에서 22개 분야로 확대하고 기능계의 분야를 15개 분야에서 19개 분야로 확대
	'93. 7. 8 개정 대통령령 제13925호	○ 교육기관에서 평가받은 성적을 실기시험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자격증 대여시 정지기간 등을 강화
	'94. 11. 10 개정 대통령령 제14413호	○ 1년간 산학협동훈련을 받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의 응시자가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서 평가한 성적을 자격검정 성적에 갈음토록 하고, 일부자격 종목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95. 10. 16 개정 대통령령 제14783호	○ 다기능기술자 응시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기술사등 응시자격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섬유기계기능장 등 24개 종목 신설과 서비스계의 타자종목을 폐지
	'97. 6. 2 개정 대통령령 제15384호	○ 해양생산관리사 1급, 실내건축기능사 등 4개종목 신설 및 전화교환종목 폐지
	'98. 5. 8 개정 대통령령 제15794호	○ 계열구분 폐지, 자격등급 5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개 분야 ○ 기능사보 폐지('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함)
	'99. 2. 5 개정 대통령령 제16106호	○ 민간이 시행할 수 없는 종목(329종목)을 정함 ○ 전기철도기사·기능사 종목 신설 ○ 모래채취기운전기능사를 준설선운전기능사에 통·폐합
	'99. 10. 11 개정 대통령령 제16572호	○ 보수교육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전문사무분야를 신설하고 동 분야에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자격 신설 ○ 기초사무분야에 전산회계사 신설
	'02. 4. 27 개정 대통령령 제17951호	○ 기상예보기술사 등 기술기능분야 21종목 신설 ○ 컨벤션기획사, 게임관련 자격 등 서비스분야 12종목 신설
	'03. 11. 4 개정 대통령령 제18116호	○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 기능사 등 15개 종목신설 ○ 검정시행계획 변경기간 설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4. 12. 28 개정 대통령령 제18608호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 운영, 구성 ○ 응시자격 개선 (관련학과, 비관련학과 차등 적용) ○ 자격종목 신설, 폐지 절차 등 명확화
	’06. 6. 22 개정 대통령령 제19544호	○ 자격 등급 법률로 상향 조정에 따른 규정 정비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신설
	’07. 4. 12 개정 대통령령 제20003호	○ 전문계고등학교 실기시험 장소 요청 근거
	’07. 6. 29 개정 대통령령 제20140호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실시기관 ○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일시대행기관
	’08. 12. 17 개정 대통령령 제21170호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 대행기관일원화 ○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자에 대한 면제 기준 조정
	’10. 11. 26 개정 대통령령 제22507호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 응시자격 규정 삭제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국가기술자격 시험면제 제도 정비(외국자격 면제자 등)
	’11. 10. 12 개정 대통령령 제23216호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검정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신설에 검정기준 정비
	’12. 1. 6 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
	’12. 1. 26 개정 대통령령 제23527호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검정시 학교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 실시 가능
	’12. 5. 1 개정 대통령령 제23759호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13. 3. 23. 개정 대통령령 제24478호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정비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검정, 자격 상호인정 등 미래부와 고용부 협업 규정
	’13.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14. 11. 19 개정 대통령령 제25741호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관련 세부 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 및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개정
	’17. 3. 27 개정 대통령령 제27967호	○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4497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던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정 삭제 ○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도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17. 12. 19 개정 대통령령 제28485호	○ 과정평가형 자격평가의 외부평가의 재응시 기회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외부평가에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9. 6. 11 개정 대통령령 제29844호	○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등의 업무를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만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0. 3. 3 개정 대통령령 제30509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74. 10. 10 제정 총리령 제142호	○ 신규제정
	'82. 5. 8 개정 노동부령 제11호	○ 사무관리분야 종목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흡수됨에 따라 시험과목 등을 정함
	'83. 12. 31 개정 노동부령 제23호	○ 사무관리분야의 검정기준 및 위탁범위를 정하고 국방부에 위탁할 대상종목을 정함
	'85. 1. 11 개정 노동부령 제29호	○ 보수교육기관의 종목기관을 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기준을 정함
	'87. 9. 1 개정 노동부령 제41호	○ 기술자격종목중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과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사무관리 자격증 서식을 변경함
	'89. 4. 4 개정 노동부령 제51호	○ 윤활관리기사 1,2급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사무관리검정의 합격 결정기준을 신설하며 검정수수료를 정함
	'91. 12. 13 개정 노동부령 제72호	○ 기능장 전종목에 실시 시험부과와 기능사 2급의 선 실기종목을 폐지하고, 보수교육기관을 추가함
	'93. 8. 19 개정 노동부령 제83호	○ 기술계학원 이수자, 기능사 2급 필기시험 면제기관지정과 응시자격 부여 및 사내기술 대학이수자 응시자격 부여
	'94. 7. 4 개정 노동부령 제92호	○ 직업훈련원의 수료자에게는 훈련과정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목에 바로 응시토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필기시험을 바로 면제토록 함
	'94. 11. 15 개정 노동부령 제96호	○ 기능사 2급 자격검정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평가한 시험성적으로 갈음함에 따라 필요한 문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토록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승강기 기사의 자격종목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을 정함
	'95. 10. 16 개정 노동부령 제101호	○ 다기능기술자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험과목을 정하고, 기능대학졸업자에게 10분의 5 이상만 이수하여도 시험에 응시토록 조정함
	'97. 7. 29 개정 노동부령 제118호	○ 해양생산관리기사 1급등 4개의 신설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함
	'99. 2. 23 개정 노동부령 제144호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험과목 정비, 합격인원예정제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00. 1. 15 개정 노동부령 제160호	○ 보수교육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상업계졸업자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전산회계사 3급 중 1개 종목 필기시험 면제, 직업상담사 등 4개 직종이 신설됨에 따른 시험과목 등 신설
	'02. 5. 31 개정 노동부령 제183호	○ 컨벤션기획사, 게임관련 자격 등 33종목(기술·기능분야 21종목, 서비스분야 12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등을 신설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3. 11. 25 개정 노동부령 제201호	○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신설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복기사, 산업기사 시험과목 변경
	'04. 12. 31 개정 노동부령 제217호	○ 자격종목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 조정 ○ 자격증 대여 처분기준 강화 ○ 출제기준 일몰제 도입 ○ 종목신설(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 폐지(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 통합(91→39종목)
	'05. 5. 7 개정 노동부령 제223호	○ 시험과목 변경
	'05. 11. 11 개정 노동부령 제239호	○ 자격신설(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종목) ○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06. 7. 19 개정 노동부령 제255호	○ 전자정부사업 관련 수탁기관 신청서류 일부 전산확인으로 대체
	'07. 7. 16 개정 노동부령 제279호	○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 검정시설 확보 대상기관 및 지원기준
	'08. 11. 26 개정 노동부령 제311호	○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삭제 ○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필기시험 면제를 교육훈련과정 동일 직무분야로 한정
	'10. 12. 1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1호	○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의 학력요건 완화 ○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KECO 기반으로 개편하고, 산업수요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반영 ○ 외국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
	'11. 11. 2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35호	○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12. 12. 2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1호	○ 환경분야 자격신설(그린전동자동차기사 등 5개 종목) ○ 종목 통합 및 변경(보일러기능장, 건설기계설비기사) ○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 취득자에 대한 과목면제
	'13. 3. 2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79호	○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건설기계설비 및 철도토목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규정 정비
	'14. 6. 12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 미용사(네일) 종목 신설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소관부처 조정 ○ 국가기술자격 시험합격확인서 수수료 폐지
	'14. 11. 2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관련 세부 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규정
	'15. 1. 2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 미용사(메이크업) 종목 신설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확대 ○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정비
	'16. 4. 28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55호	○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시에도 자격취소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6. 12. 3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 국가기술자격 54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개 자격종목에 대한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정 ○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의 규격 통일
	'17. 12. 15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종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 및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으로 통합 ○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의 유형에 상장형 자격증 추가 ○ 기능사 검정 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대공포야전정비 초급 과정 등 5개 과정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사의 종목에 전자기기기능사 등 4개의 종목을 추가
	'18. 6. 22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세탁기능사 등 22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 개선
	'19. 6. 11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조경산업기사 등 63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 개선
	'19. 12. 23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자 격 기 본 법	'97. 3. 27 제정 법률 제5314호	○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 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99. 1. 29 개정 법률 제5733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근거 변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
	'05. 5. 31 개정 법률 제7428호	○ 민간자격 국가공인 결격사유 신설
	'07. 4. 27 개정 법률 제8390호	○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계 도입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 자격정책심의회 신설 ○ 교육훈련 이수자 국가자격 인증 근거 마련
	'08. 2. 29 개정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등' 변경
	'08. 12. 26 개정 법률 제9190호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개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0. 3. 17 개정 법률 제10093호	○ 자격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10. 6. 4 개정 법률 제10339호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 변경
	'11. 7. 25 개정 법률 제10907호	○ 교육훈련과 자격연계 정비
	'13. 3. 23 개정 법률 제11690호	○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및 민간자격 신설 기준 마련 ○ 공인자격취득에 있어서 교육부와 협업체계 마련
	'13. 4. 5 개정 법률 제11722호	○ 민간자격 관리운영기준 마련 ○ 등록자격 및 자격검정의 운영·지도·감독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인자격의 운영 일반 정비
	'16. 12. 20 개정 법률 제14397호	○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 변경등록 제도 신설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범위 축소
	'19. 4. 23 개정 법률 제16335호	○ 교육부장관이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
자격기본법 시행령	'97. 8. 9 제정 대통령령 제15453호	○ 국가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선·폐지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제도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외에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민간자격의 시행기간이 1년이상이고, 검정실적이 3회 이상 있어야 하는 등 국가의 공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공인받은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중 국가의 변경공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당해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또는 검정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 정함 ○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에 민간자격검정실적서 및 검정시설·장비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인신청 및 공인증서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거나 기술변화가 급속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공인민간자격취득자는 등록·갱신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07. 10. 26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346호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 ○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 민간자격의 신설 등록 및 공인절차 마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9. 7. 30 개정 대통령령 제21647호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며,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 9. 3 개정 대통령령 제22369호	○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093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3. 10. 4 개정 대통령령 제24781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주체의 일원화 ○ 등록자격관리자 또는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등록 또는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마련 ○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제도 도입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격 광고 표시 내용 구체화
	’17. 6. 2 개정 대통령령 제28085호	○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근거와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였던 근거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8. 12. 4 개정 대통령령 제29320호	○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외에 그 세부내역별 비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자격의 경우에는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19. 10. 22 개정 대통령령 제30133호	○ 교육부장관은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335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에는 자격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교육훈련・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실태 및 장애 요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 령 별		주 요 내 용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07. 11. 7 제정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7호	○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8390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과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46호, 2007. 10. 26. 공포, 2007. 10. 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 1. 21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1호	○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서 경제교육 분야와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10. 9. 6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70호	○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13. 10. 4 개정 교육부령 제10호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 도입 및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2013. 4. 5. 공포, 10.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81호, 2013. 10. 4.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 서식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4. 7. 25 개정 교육부령 제41호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등은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변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7. 3. 8 개정 교육부령 제126호	○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등록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자격 등록 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7. 6. 21 개정 교육부령 제132호	○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자격의 종목・등급・직무내용, 자격의 검정기준 등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등록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함
	‘18. 12. 21 개정 교육부령 166호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가 민간자격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등록・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97. 3. 27 제정 법률 제5416호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직업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10. 3. 17 개정 법률 제10092호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
	’11. 6. 7 개정 법률 제10776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15. 1. 20 개정 법률 제13048호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현황,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6. 2. 3 개정 법률 제13942호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현장실습계약 체결 및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미성년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시간, 휴일 및 야간 근로를 구체적으로 제한함 ○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함 ○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함 ○ 현장실습시간을 위반하거나 야간 및 휴일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벌칙을 규정함 ○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18. 3. 27 개정 법률 제15525호	○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
	'18. 12. 18 개정 법률 제15960호	○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령	'97. 8. 9 제정 대통령령 제15452호	○ 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이수기간은 그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 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을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안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위원을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등으로 정함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주기는 5년의 범위내에서 산업교육기관 및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99. 2. 5 개정 대통령령 제16103호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종전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외에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현장실습을 앞으로는 교육과정중에 교과 또는 실습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4. 12. 30 개정 대통령령 제25901호	○ 직업교육훈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기준을 폐지함
	'16. 8. 2 개정 대통령령 제27419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942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의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실습계약서에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의 경우에는 50만원, 2차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3차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8. 9. 28 개정 대통령령 제29185호	○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9. 6. 18 개정 대통령령 제29862호	○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에는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현상실습 사전교육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 10. 8 개정 대통령령 제30106호	○ 과태료 금액 정비
기 능 장 려 법	’89. 4. 1 제정 법률 제4123호	○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91. 1. 14 개정 법률 제4329호	○ 장기근속기능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한 명장제도 신설 ○ 민간부문의 기능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제도 신설
	’01. 3. 28 개정 법률 제6453호	○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대상을 기능을 전수하는 자와 함께 기능을 전수받는 자까지 확대 ○ 기능장려금의 지급범위를 명장 및 우수지도자와 함께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까지 확대
	’05. 12. 30 개정 법률 제7826호	○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법 령 별		주 요 내 용
숙련기술장려법	'10. 5. 31 전부개정 법률 제10338호	○ 법률의 제명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 ○ 5년마다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규정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민간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15. 1. 20 개정 법률 제13046호	○ 부정행위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등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
	'16. 1. 27 개정 법률 제13907호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관을 쉽게 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장료 징수 제도를 폐지
	'20. 3. 31 개정 법률 제17188호	○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숙련기술 전수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 ○ 기능한국인 선정·포상 근거 마련 ○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의무 부여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 마련
기능장려법 시행령	'89. 10. 13 제정 대통령령 제12817호	○ 기능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91. 4. 13 개정 대통령령 제13349호	○ 명장의 선정절차와 우대사항,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절차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내기능경기대회를 시・도지사 중심으로 지방소재 관련 단체 등에서 개최・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부와 명장부의 구분을 폐지함
	'00. 5. 1 개정 대통령령 제16800호	○ 기능장려적립금의 재원 ・ 운용방법 ・ 용도, 기타 동 적립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01. 7. 30 개정 대통령령 제17328호	○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우수기능인과 기능 장학생으로 하고 선정대상 및 우대사항을 정함 ○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정함
	'06. 6. 12 개정 대통령령 제19511호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권한 등이 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공고 등 관련 권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함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10. 12. 31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604호	○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와 선정 취소의 세부 내용을 정함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내용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13. 8. 20 개정 대통령령 제24693호	○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예우 및 우대 조치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함(대한민국명장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 수여자를 대통령으로 격상)
	'16. 6. 28 개정 대통령령 제27279호	○ 이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중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거나 재참가 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대회의 참가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 령 별		주 요 내 용
	’18. 7. 3 개정 대통령령 제29027호	○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9.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30297호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89. 11. 2 제정 노동부령 제56호	○ 기능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91. 8. 6 개정 노동부령 제70호	○ 명장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추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01. 11. 30 개정 노동부령 제179호	○ 우수기능인 등의 추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06. 5. 30 개정 노동부령 제251호	○ 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 추천시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의무 폐지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대상 변경 (최고득점자→상위 1위에서 3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11. 1. 3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6호	○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신청 절차를 정함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을 정비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입장료 징수 규정
	’13. 8. 20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87호	○ 대한민국명장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자(授與者)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19. 4. 19 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의 사진 규격을 여권사진 규격(3.5㎝×4.5㎝)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81. 12. 31 제정 법률 제3506호	○ 직업훈련의 실시 및 연구개발과 기술자격검정을 분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설립
	’83. 12. 31 개정 법률 제3712호	○ 공단관리기금 출연근거 확대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출연금)
	’86. 5. 9 개정 법률 제3813호	○ 공단관리기금 출연근거 교부조항 삭제 (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출연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91. 1. 14 개정 법률 제4332호	○ 법률명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변경 ○ 공단명칭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 ○ 직업훈련자격검정 이외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97. 12. 24 개정 법률 제5476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변경
	’99. 2. 8 개정 법률 제5880호	○ 상근이사 4인을 3인으로 감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등 정비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범위를 “기술자격 검정”에서 “자격검정”으로 확대

법 령 별		주 요 내 용
	'03. 8. 16 개정 법률 제6967호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범위에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추가
	'04. 12. 31 개정 법률 제7298호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의 법명 변경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
	'05. 12. 30 개정 법률 제7824호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재편 ○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
	'08. 12. 31 개정 법률 제9320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 ○ 자격검정시험 관련 비밀엄수 의무자 추가
	'10. 5. 31 개정 법률 제10338호	○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1. 3. 9 개정 법률 제10461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사업을 법 목적에 추가 ○ 국외분사무소 설립근거 추가 ○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시기 변경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시행령	'82. 3. 8 제정 대통령령 제10750호	○ 공단의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 공단의 비상근이사는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 6인과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및 전문가대표 각각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공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단관리기금의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당해 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시행령	'91. 4. 11 개정 대통령령 제13347호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의 개정(1991·1·14, 법률 제4332호)으로 법률의 제명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변경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98. 2. 2 개정 대통령령 제15621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6호)되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이미 폐지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08. 1. 22 개정 대통령령 제20560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19명 이내로 되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의 정원 중에서 관련 부처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운영하고 있는 당연직이사의 수를 줄임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추어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함
	'11. 12. 14 개정 대통령령 제23377호	○ 고용노동부장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 외에 회계법인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20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한국노동교육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업무를 인계하고 해산함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폐지함

법 령 별		주 요 내 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 8. 27 제정 법률 제16559호	○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수급 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능대학법	'77. 7. 23 제정 법률 제3009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능장을 양성하여 근로자의 기술 · 기능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91. 1. 14 개정 법률 제4330호	○ 기능장 양성을 훈련직종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신축적 운영
	'93. 12. 27 개정 법률 제4638호	○ 기능대학의 기능을 기존의 기능장 양성외에 다기능기술자 양성 등으로 확대 ○ 일정범위 내에서는 교원이외의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직업훈련을 담당토록 규정
	'95. 12. 29 개정 법률 제5102호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인정
	'97. 12. 24 개정 법률 제5475호	○ 기능대학의 정의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 · 운영하는 대학으로 명시 ○ 기능대학의 설립 ·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 명시 ○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게 산업학사 학위 수여
	'01. 1. 29 개정 법률 제6400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
	'04. 12. 31 개정 법률 제7301호	○ 명장취득,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학점 인정범위 확대
	'05. 12. 30 개정 법률 제7823호	○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 등 수행 등 근거 마련 ○ 기능대학의 명칭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 사용 가능
	'08. 2. 29 개정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09. 10. 9 개정 법률 제9792호	○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일부 개정
	'10. 5. 31 폐지 법률 제10337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통합 - 기능대학법 폐지

4. 훈련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20.1.1.부터 적용)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5,579
		02. 해외관리	5,579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1. 경영기획	7,404
		02. 홍보·광고	7,080
		03. 마케팅	6,732
	02. 총무·인사	01. 총무	6,982
		02. 인사·조직	8,508
		03. 일반사무	5,995
	03. 재무·회계	01. 재무	6,956
		02. 회계	6,555
	04. 생산·품질관리	01. 생산관리	6,282
		02. 품질관리	7,161
		03. 무역 · 유통관리	6,484
03. 금융·보험	01. 금융	01. 금융영업	6,340
		02. 금융상품개발	6,039
		03. 신용분석	6,467
		04. 자산운용	6,043
		05. 금융영업지원	5,731
		06. 증권·외환	6,620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7,436
		02. 보험영업·계약	6,913
		03. 손해사정	6,291
04. 교육·자연·사회과학	01. 학교교육	01. 학교교육	6,158
	02. 평생교육	01. 평생교육	6,167
		02. 평생교육운영	6,427
	03. 직업교육	01. 직업교육	6,585
		02. 이러닝	6,506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1. 법률	01. 법무	6,688
		02. 지식재산관리	6,655
	02. 소방방재	01. 소방	6,209
		02. 방재	6,218
		03. 스마트재난관리	6,213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6. 보건·의료	01. 보건	01. 의료기술지원	4,514
		02. 보건지원	5,543
		03. 약무	4,514
	02. 의료	01. 임상의학	6,962
		02. 간호	5,775
		03. 기초의학	6,166
		04. 임상지원	5,953
07. 사회복지·종교	01. 사회복지	01. 사회복지정책	6,268
		02. 사회복지서비스	6,618
	02. 상담	01. 직업상담서비스	6,427
		02. 청소년지도	6,432
		03. 심리상담	6,428
	03. 보육	01. 보육	6,221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1. 문화·예술	01. 문화예술경영	6,440
		02. 실용예술	6,679
		03. 공연예술	6,454
		04. 문화재관리	6,237
	02. 디자인	01. 디자인	5,619
	03. 문화콘텐츠	01. 문화콘텐츠기획	6,997
		02. 문화콘텐츠제작	6,231
		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6,829
		04. 영상제작	5,724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8,144
	02. 철도운전·운송	01. 철도운전운영	6,650
		02. 철도시설유지보수	6,638
	03. 선박운전·운송	01. 선박운항	8,147
		02. 검수·검량	6,847
	04. 항공운전·운송	01. 항공기조종운송	7,126
		02. 항공운항	7,126
		03. 항행안전시설	7,126
10. 영업판매	01. 영업	01. 일반·해외영업	7,389
	02. 부동산	01. 부동산컨설팅	6,959
		02. 부동산관리	6,260
		03. 부동산중개	6,080
		04. 감정평가	6,524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판매	01. e-비지니스	6,904
		02. 일반판매	6,767
		03. 상품중개 · 경매	6,836
11. 경비·청소	01. 경비	01. 경비·경호	6,098
	02. 청소·세탁	01. 청소	6,494
		02. 세탁	6,390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1. 이·미용	01. 이·미용서비스	6,468
	02. 결혼·장례	01. 결혼서비스	6,593
		02. 장례서비스	6,235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6,501
		02. 숙박서비스	7,882
		03. 컨벤션	6,447
		04. 관광레저서비스	6,200
	04. 스포츠	01. 스포츠용품	6,595
		02. 스포츠시설	6,528
		03. 스포츠경기·지도	6,499
		04. 스포츠마케팅	6,538
		05. 레크리에이션	6,580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01. 음식조리	7,595
		02. 식음료서비스	7,696
		03. 외식경영	7,618
14. 건설	01. 건설공사관리	01. 건설시공전관리	7,210
		02. 건설시공관리	7,203
		03. 건설시공후관리	7,346
	02. 토목	01. 토목설계·감리	7,529
		02. 토목시공	7,587
		03. 측량·지리정보개발	6,798
	03. 건축	01. 건축설계·감리	6,545
		02. 건축시공	6,330
		03. 건축설비설계·시공	6,318
	04. 플랜트	01. 플랜트설계·감리	6,454
		02. 플랜트시공	6,128
		03. 플랜트사업관리	6,291
	05. 조경	01. 조경	6,787
	06. 도시·교통	01. 국토·도시계획	6,598
		02. 교통계획·설계	6,598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주거서비스	6,598
	07. 건설기계운전·정비	01. 토공기계운전	7,252
		02. 기초공건설기계운전	7,155
		03. 콘크리트공기계운전	7,155
		04. 적재기계운전	7,155
		05. 양중기계운전	7,325
		06. 건설기계정비	7,330
	08. 해양자원	01. 해양환경조사	6,675
		02. 해양환경관리	6,675
		03. 해양플랜트설치·운용	6,675
		04. 해양자원개발·관리	7,321
		05. 잠수	6,675
15. 기계	01. 기계설계	01. 설계기획	6,370
		02. 기계설계	5,980
	02. 기계가공	01. 절삭가공	6,097
		02. 특수가공	6,289
	03. 기계조립·관리	01. 기계조립	6,112
		02. 기계생산관리	6,081
	04. 기계품질관리	01. 기계품질관리	6,186
	05. 기계장치설치	01. 기계장비설치·정비	6,874
		02. 냉동공조설비	7,434
		03. 이륜차정비	7,154
	06. 자동차	01. 자동차설계	5,496
		02. 자동차제작	6,008
		03. 자동차정비	5,956
		04. 자동차정비관리	6,008
		05. 자동차관리	5,940
	07. 철도차량제작	01. 철도차량설계·제작	6,372
		02. 철도차량유지보수	6,129
	08. 조선	01. 선박설계	6,032
		02. 선체건조	6,219
		03. 선박의장생산	5,920
		04. 선박품질관리	5,603
		05. 선박생산관리	5,570
		06. 시운전	5,563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7. 선박정비	5,886
		08. 레저선박	5,828
	09. 항공기제작	01. 항공기설계	7,231
		02. 항공기제작	7,115
		03. 항공기정비	6,560
		04. 항공장비관리	7,400
	10. 금형	01. 사출금형	6,014
		02. 프레스금형	6,014
		03. 다이캐스팅금형	6,014
	11. 스마트팩토리	01. 스마트팩토리설계	6,175
16. 재료	01. 금속재료	01. 금속엔지니어링	6,519
		02. 금속재료제조	6,519
		03. 금속가공	6,737
		04. 표면처리	6,897
		05. 용접	7,250
		06. 비철금속재료제조	6,769
	02. 요업재료	01. 파인세라믹제조	6,682
		02. 전통세라믹제조	6,682
17. 화학	01.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01. 화학물질관리	6,265
		02. 화학공정관리	5,999
		03. 화학제품연구개발	6,233
	02. 석유·기초화학물제조	01. 석유·천연가스제조	7,000
		02. 기초유기화학물제조	6,200
		03. 기초무기화학물제조	6,400
	03. 정밀화학제품제조	01. 생리활성화제품제조	6,752
		02. 기능성정밀화학제품제조	7,000
		03. 바이오의약품제조	7,000
		04. 바이오화학제품제조	7,000
	04. 플라스틱 · 고무제품제조	01. 플라스틱제품제조	7,000
		02. 고무제품제조	7,000
18. 섬유·의복	01. 섬유제조	01. 섬유생산	6,215
		02. 섬유가공	6,221
		03. 섬유생산관리	6,215
	02. 패션	01. 패션제품기획	6,428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2. 패션제품생산	6,048
		03. 패션제품유통	6,533
		04. 신발개발·생산	7,812
19. 전기·전자	01. 전기	01. 발전설비설계	8,997
		02. 발전설비운영	6,270
		03. 송배전설비	8,966
		04. 지능형전력망설비	6,192
		05. 전기기기제작	6,141
		06. 전기설비설계·감리	6,205
		07. 전기공사	6,547
		08. 전기자동제어	6,351
		09. 전기철도	6,631
		10. 철도신호제어	6,389
		11. 초임계CO_2 발전	6,655
		12. 전기저장장치	6,655
		13. 미래형전기시스템	6,386
	02. 전자기기일반	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7,541
		02. 전자부품기획·생산	6,019
		03. 전자제품고객지원	7,298
	03. 전자기기개발	01. 가전기기개발	6,022
		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5,968
		03. 정보통신기기개발	5,949
		04. 전자응용기기개발	6,240
		05. 전자부품개발	6,659
		06. 반도체개발	6,089
		07. 디스플레이개발	6,306
		08. 로봇개발	6,294
		09. 의료장비제조	6,207
		10. 광기술개발	6,174
		11. 3D프린터개발	6,174
		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6,189
		13. 착용형스마트기기	6,189
		14. 플렉시블디스플레이개발	6,189
		15. 스마트팜개발	6,189
		16. OLED개발	6,189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7. 커넥티드카개발	6,189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01. 정보기술전략·계획	7,324
		02. 정보기술개발	6,588
		03. 정보기술운영	6,590
		04. 정보기술관리	6,590
		05. 정보기술영업	6,017
		06. 정보보호	6,574
		07. 인공지능	6,574
		08. 블록체인	6,574
	02. 통신기술	01. 유선통신구축	6,130
		02. 무선통신구축	5,932
		03. 통신서비스	6,202
		04. 실감형콘텐츠제작	6,088
	03. 방송기술	01. 방송제작기술	6,042
		02. 방송플랫폼기술	9,607
		03. 방송서비스	6,460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9,825
		02. 식품저장	6,129
		03. 식품유통	6,671
	02. 제과·제빵·떡제조	01. 제과·제빵·떡제조	6,797
22. 인쇄·목재·가구·공예	01. 인쇄·출판	01. 출판	6,288
		02. 인쇄	6,282
	02. 공예	01. 공예	7,971
		02. 귀금속·보석	7,813
23. 환경·에너지·안전	01. 산업환경	01. 수질관리	8,497
		02. 대기관리	8,758
		03. 폐기물관리	8,789
		04. 소음진동관리	8,960
		05. 토양 · 지하수관리	8,971
	02. 환경보건	01. 환경보건관리	9,123
	03. 자연환경	01. 생태복원·관리	7,538
	04. 환경서비스	01. 환경경영	8,437
		02. 환경평가	8,472
	05. 에너지·자원	01. 광산조사·탐사	9,912
		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9,266

NCS직종			훈련지원단가 (단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광산환경관리	6,732
		04. 광산보안	6,378
		05. 신재생에너지생산	7,170
		06. 에너지관리	7,349
	06. 산업안전	01. 산업안전관리	6,184
		02. 산업보건관리	7,889
		03. 비파괴검사	6,376
24. 농림어업	01. 농업	01. 작물재배	6,992
		02. 종자생산·유통	7,676
		03. 농촌개발	8,587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5,968
		02. 사육관리	6,252
	03. 임업	01. 산림자원조성	7,100
		02. 산림관리	8,715
		03. 임산물생산·가공	8,748
	04. 수산	01. 어업	6,473
		02. 양식	5,673
		03. 수산자원관리	5,673
		04. 어촌개발	8,255

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 직종 개수 : ('07) 91개 → ('08) 83개 → ('09) 78개 → ('10) 103개 → ('11) 102개 → ('12) 109개 → ('13) 109개 → ('14) 109개 → ('15) 114개 → ('17) 112개 → ('18) 122개 → ('19) 122개 → ('20) 122개

대분류	기간산업직종(46개)	전략산업직종(26개)	서비스산업직종(50개)
경영·회계·사무(5)			물류관리, 품질경영, 마케팅전략기획(마케팅PD), 핀테크, 기술문서작성가 (5)
교육·자연·사회과학(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8)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제작, 디지털디자인, 3D영상제작,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8)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3)			국제관광마케팅, 크루즈, 마리나 (3)
건설(17)	건축목공, 건축시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조경, 가스설비시공, 열냉동설비, 건축설비 설계・시공, 창호시공, 철도안전 (11)	그린홈시공,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4)	U-city(건설・토목・IT), BIM (2)
기계(33)	기계설계제작, 공유압, 생산기계, 치공구, 기계조립, 선체의장, 선체조립,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사출금형, 선반(CNC선반),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기계, 공조냉동기계, 열기계, 시스템제어, 측정 (18)	의료기기제작,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6)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생산정보시스템, 선박기관정비, 드론 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9)
재료(5)	레이저용접, 수중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4)	품질관리기술자 (1)	
섬유·의복(2)	염색가공 (1)		패션디자인 (1)
전기·전자(13)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 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자부품개발, 전기시스템제어 (7)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반도체생산, 태양광발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6)	
정보통신(18)	광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2)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3)	정보시스템구축(개발, 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RFID・USN응용,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홈IOT관리, 산업IOT 관리, 클라우드 운영 관리,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UI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13)
인쇄・목재・가구・공예(5)	특수인쇄, 평판인쇄 (2)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안전(6)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생산 (1)	생태복원·관리, 산업환경, 비파괴검사, 환경보건관리 (4)
농림, 수산(6)		종자생산·유통, 할랄/코셔, 스마트팜구축 (3)	말조련, 곤충사육, 동물매개치유 (3)

6. 직업능력개발관련 조사 현황

조사명	주요내용	조사대상 ('14기준)	수행기관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 지역별 인력수요 및 훈련수요, 훈련기관 훈련공급 능력	○ 사업체	○ '07~'08 : 한고원 ○ '09 : 노동연구원 ○ '10 : 한국기술교육대 ○ '11~'14 : 직능원 ○ '15~'19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능원 위탁)
직업훈련이수자 실태조사	○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참여 현황 및 훈련성과 체계적 분석, 훈련지원정책 방향 모색, 이수자 성과 평가방법론 정립 등	○ 훈련참여자	○ '08 : 직능원 ○ '09 : 노동연구원 ○ '10 : 성균관대 ○ '11 : 고려대 ○ '12~'13 : 직능원 ○ '14 : 한국노동경제학회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매년)	○ 숙련부족 및 훈련인프라, 근로자 직업훈련 실시 현황, 정부지원제도 및 향후 교육훈련 투자 전망, 중소기업 숙련 수요 등	○ 10인 이상 기업	○ '08~'15 : 고용노동부 ○ '16 : 고용노동부 (직능원 위탁) ○ '17~'19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 쇄 2020년 7월 31일
▮발 행 고용노동부
▮편 집 직업능력정책과
▮전 화 (044)202-7282
▮제 작 디자인 범신
(042)254-8737